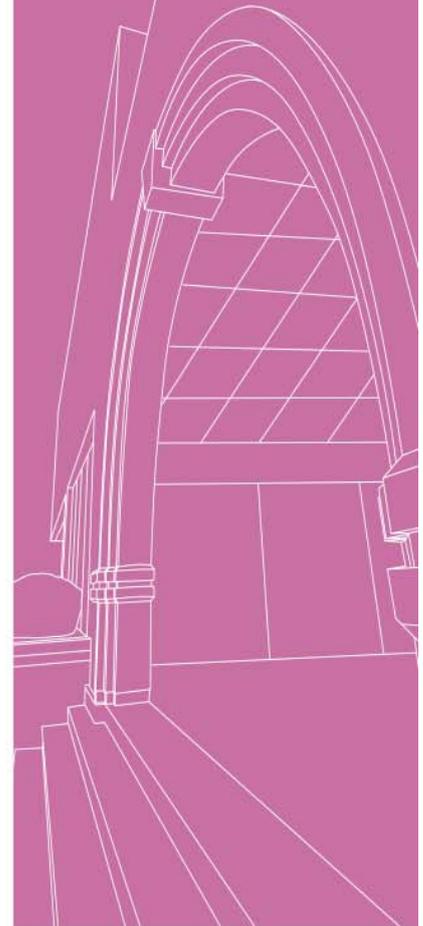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V)

조선주 · 김영숙 · 정가원 · 황정임 · 김동식
박수범 · 김효주 · 장윤선 · 권희정 · 손정민
김병권 · 김효진 · 김소정 · 김해람



2014

연구보고서-5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연구책임자 : 조 선 주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속 (본원 연구위원)

정 가 원 (본원 연구위원)

황 정 임 (본원 연구위원)

김 동 식 (본원 연구위원)

박 수 범 (본원 부연구위원)

김 호 주 (본원 부연구위원)

장 윤 선 (본원 전문연구위원)

권 희 정 , 손 정 민

김 병 권 , 김 호 진

김 소 정 , 김 해 람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조선주·김영숙·정가원·황정임·김동식·박수범·김효주·장윤선·권희정·손정민·김병권·김효진·김소정·김해람(2014).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V).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은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시각일 뿐, 실제 그 운영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여섯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섯 번의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본원은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성인지예산제도가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개념 정립부터 인프라 구축,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분석 등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이러한 정책 추진단계에 맞추어, 본 연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실천해야 할 과제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의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로드맵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심층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경험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항상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발전을 이루어 온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 및 집필에 참여해주신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관계자 및 한국재정학회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연구요약

I.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도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그동안 제도 운영의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상사업 선정, 집행, 점검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
- 제도 시행 5년을 평가한 결과, 매년 그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이슈의 일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은 제도의 발전단계와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별 과정 및 목표 등을 수립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해야 함.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은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좌표일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최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라 한다)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모듈화사업 및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과제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후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선택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음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성인지예산제도의 세부과제, 정책제언, 운영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분석·분류함

- 둘째, 자료 분석을 실시함. 법정 서류인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를 데이터 구조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 셋째,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함. 국가공무원 중 2011년~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대상자 및 2014년 조사 당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을 선정하여 패널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한 513명을 패널조사 대상으로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24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2014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과 작성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넷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함. 1부 국가재정 부분은 국가 재정 분야 및 성인지예산제도 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한국재정학회, 2부 지방재정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지수와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수행함(주요 연구진 본문의 <표 I-2> 참조)
 - 다섯째, 관련부처의 협조(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관련 연구자, 해외전문가(말레이시아, 필리핀, UN Women)등과 면담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방법론 및 연구내용, 정책제언 등을 발전시킴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총론 연구의 마지막인 4차 년도 연구임(본문의 <표 I-6>, <표 I-7>참조)
 - 1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함(II장). 1-3차연도의 공무원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성인지예산의 효과를 측정하고,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새롭게 조사 설계를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행동변화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함(III장)
 - 2부에서는 최초로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안을 진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함(IV장)
 - 3부에서는 아시아권 국가(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KSP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음(V장)

제1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2.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은 현재 제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함. 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창기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또는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제도의 운영과 성과가 각 단계별로 자기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성되거나 혹은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시도 자체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임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시기에 제시한 성인지예산제도 5개년 발전계획(안)(김영옥 외, 2010b;237)을 바탕으로 과거 중장기 계획의 이행상황, 현재 위치, 동시에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를 파악함
 - 5대 영역(1.교육·인적역량강화, 2.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3.대상사업의 전략적 선정, 4.정부의 책무성 제고, 5.예산시스템 변화) 특히 대상사업의 전략적 선정, 정부의 책무성 제고, 예산시스템의 변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들은 대부분 실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는 윤영진(2013;4-5), 임주영 외(2013b;11)를 인용하여 도입단계, 성숙단계, 고도화단계로 설정
-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도출
 -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숙단계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여 성숙단계(2014~2018)와 고도화 단계(2019~)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
 - 로드맵은 발전단계별로 목표 - 전략 - 세부과제 - 실행방안의 구조로 구성

- 본 로드맵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로드맵으로 한정. 따라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하지는 않음
- 다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가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실천방안**

- 중장기 로드맵의 비전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성평등 수준 제고임
- 목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
 - 성평등 인식제고, 정부 책임성 강화, 예산과 정책의 변화로 구성함
- 성숙단계의 4대 전략과 고도화단계의 2대 전략으로 구성
 - (성숙단계) I.제도적 기반 확충, II.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III.전담기구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IV.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
 - (고도화단계) V.인적 기반 확대, VI.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각각의 전략에 따라 13개의 세부과제를 제시(①~⑬)
 - 단계별 세부과제는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이며, 시간의 순서에 맞게 체계화 시킨 개념임
- 향후 이러한 세부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6대 전략-13개 세부과제-32개 실행방안

비 전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한 성평등 수준제고	
목 표		▪ 성평등 인식제고 ▪ 정부 책임성 강화 ▪ 예산과 정책의 변화	
성숙단계 (2014~2018) ⇨		고도화단계 (2019~) ⇨	
I. 제도적 기반확충		V. 인적 기반확대	
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양성평등 분야로 독립 ▪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로 첨부 ▪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 포함 		⑩ 성인지예산 담당 전문인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업무기간 지속 ▪ 국회의정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과정 편성 ▪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필요 	
②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조항 보완 ▪ 성인지예산제도 관리기구의 법제화 ▪ 성인지예·결산특별법(가칭)을 제정, 관련법을 통합 		⑪ 시민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활성화 ▪ 민관 협력 활성화 	
II.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VI.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③ 국가 성평등 목표와 계획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성평등)중기적 목표실정과 계획의 수립 ▪ 성인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목표 설정 		⑫ 성인지예산 회계정보의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시스템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회계정보 취합 기능 강화 	
④ 예산요구서 제출단계의 심의·조정 및 성인지결산서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절차 마련 		⑬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충실성 제고 ▪ 성인지결산의 환류 기능 강화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 성인지결산 검사 내실화 및 인센티브 지원 ▪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 가능 	
III.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⑤ 행정부 내 성인지예·결산 운영 전담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전문위원회 신설: 성인지예산결산심의 위원회(가칭) 			
⑥ 성인지예·결산제도 지원조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센터 확대개편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 확대 ▪ 공식화된 상설 자문회의체 구성 			
IV.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⑦ 예산 편성 지침의 실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 법적근거 마련: 부처별 GB담당자 사전협의체 설치 등 ▪ 부처별 중장기 성평등 목표 필요 ▪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의 부처별 이원화 			
⑧ 성평등 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발굴과 별도의 사업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성인지적 특성이 있는 사업의 구분 			
⑨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포괄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방안: 간소화(안), 전수조사(안) ▪ 전수조사(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3.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조사 개요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음
 - 성인지예·결산서 양식, 지침, 매뉴얼, 컨설팅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하고 개선
 -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
- 성인지예산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작성담당자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성담당자의 인식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영향은 곧 성인지예산제도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조사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 파악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진단하여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함
 - 기존의 조사는 개인단위의 조사가 아니라 예산사업 단위로 설계된 조사이므로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변화라기 보다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횟수에 따른 해당사업의 완성도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이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 개인을 조사단위로 하여, 향후 패널자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함

□ 표본의 특성

- 조사대상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지예·결산서를 적어도 한번 이상 작성해 본적이 있는 공무원 중 향후 패널자료 구축에 동의한 표본(2011년~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대상자 1,218명, 2014년 조사 당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435명 총 1,653명을 선정하고, 패널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한 513명)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 및 행동변화**

○ 인식의 변화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함
- 남성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횟수가 증가할수록 변화폭은 증가함

구분	작성 이전(A)	작성 이후(B)	B-A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함	41.3%	59.3%	18.0%p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변수라고 생각함	21.4%	58.7%	37.3%p
작성이후 혹은 작성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14.4%	67.6%	53.2%p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12.9%	51.9%	39.0%p

○ 행동의 변화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담당자는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임
- 남성의 경우, 여성정책 업무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 특히 2014년 이전 작성한 담당자와 비교하여 2014년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행동의 변화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경과 시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구분	2014년 이전 작성경험자			2014년 최초 작성자		
	작성 이전(A)	작성 이후(B)	B-A	작성 이전(A)	작성 이후(B)	B-A
(최근 1년간)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음	21.6%	40.4%	18.8%p	25.0%	58.3%	33.3%p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음	13.6%	38.4%	24.8%p	18.3%	63.3%	45.0%p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음	12.5%	34.7%	22.2%p	15.0%	50.0%	35.0%p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예·결산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

- 2014년도 처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보다,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까지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거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데 관심을 가짐. 양성평등 관점을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고려하게 되기까지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구분	내용	2014년 이전 작성경험자	2014년 최초 작성자
예산편성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43.4%	58.2%
	일반 사업의 경우도 예산편성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31.5%	22.7%
예산집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집행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40.0%	35.8%
	일반 사업의 경우도 예산집행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30.2%	19.0%
사업평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한 사업을 위주로 사업평가지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45.3%	35.6%
	일반 사업의 경우도 사업평가지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됨	30.4%	22.9%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비용**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들의 작성에 대한 화폐단위 비용 또는 지불의사 (WTP, Willingness To Pay) 추정
 - 전체 응답자의 77%의 추정치가 0보다 작음. 추정치가 0보다 작은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WTP로 해석할 수 있음. 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평균값은 비용인 경우 78만원, WTP인 경우 39만원으로 추정됨
 - WTP로 인식한 표본의 여성비율이 47%로 비용으로 인식한 표본의 여성비율(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이 비용

으로 인식한 표본의 경우 절반 이상(57%)으로 WTP로 인식한 표본의 경우 (44%)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일수록, 작성시간이 짧을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보다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비용 또는 WTP 추정치는 단년도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지만, 향후 패널자료가 구축된 이후 보다 정교하고 강건한 모형을 사용하여 연간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작성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인지예·결산제도 개선과제의 선호도

- 강제적인 성격의 개선(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추가(필요하다는 비율이 44.8%/38.2%))보다는 자발적 성격의 개선(교육강화/인센티브도입(필요하다는 비율이 62.8%/61.8%) 등)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현안에 따른 정책과제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및 점검 시스템 마련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
 - .. 세부과제 중 제도의 완성도가 낮은 과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협의(상설협의체)를 바탕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상설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함
 - 성숙단계에서는 국가단위의 성평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가적 성평등 목표, 그리고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성숙단계가 지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상황에 비해 많이 발전·정착될 것이므로 고도화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성숙단계 과제들의 시행정도를 평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고도화 단계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에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제도의 운용에 따른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함
- ‘공무원 패널 조사’의 구축력 강화
 -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 의견조사는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작성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와 비용(시간당 임금 단위로 추정한 작성 비용)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임
 - 해당 조사는 근거법령이나 정부지침도 없는 실정. 실제로 공무원 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이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의 구축력을 강화하고 성인지예산 상설협의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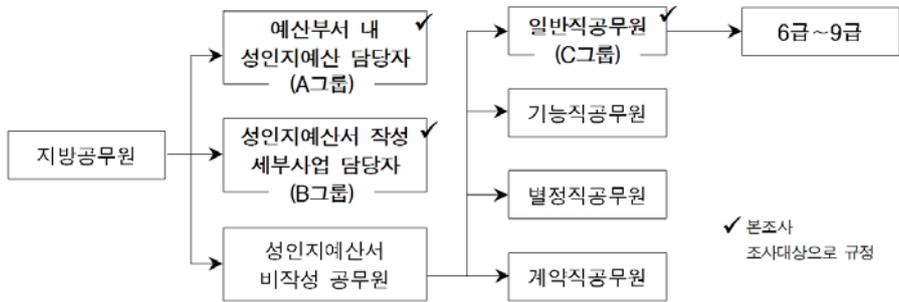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조사의 개요

-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11.3.8)에 근거하여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201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 되었고, 2014년 상반기에는 최초의 성인지결산서(지방자치단체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됨
-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조사대상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기준으로 1)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A그룹, B그룹)와 2)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C그룹)로 나누어 실시. 1)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는 (1)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한 예산담당 조사(A그룹)와 (2)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담당 조사(B그룹)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작성 공무원		비작성 공무원 (C그룹)	합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광역자치단체	16명	395명	277명	688명
기초자치단체	212명	2,709명	1,723명	4,644명
합계	228명	3,104명	2,000명	5,332명

□ 조사내용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A, B그룹만 해당)
 -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 성인지예산서 작성이후 경험한 변화
-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식
 -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 남녀를 고려한 예산편성
 -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 후 성평등정책 추진

- 성인지결산제도 관련 인식
 -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인지

□ 분석 결과

- 작성 및 비작성 공무원 비교
 -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해 작성 공무원 보다 비작성 공무원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소속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 성별수요를 고려한 예산집행의 중요도, 지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의 중요도 또한 비작성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 가능
 -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해 작성 공무원보다 비작성 공무원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인지도는 작성 공무원이 비작성 공무원에 비해 높았음
 - * 예산담당(A그룹) 228명(광역16명/기초212명)이며, 사업담당(B그룹)은 3,104명(광역395명/기초2,709명), 비작성(C그룹)은 2,000명(광역277명/기초1,723명)임
 - *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 5. 매우 그렇다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2.7	3.2	3.5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2.6	3.1	3.4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2.4	3.0	3.2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2.8	3.2	3.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2.7	3.1	3.2

[성별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3.3	3.5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3.3	3.6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7	3.1	3.4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2.8	3.2	3.5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2.7	3.1	3.4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교

-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비교한 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예산담당자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
 -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 기초자치단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도하는 실질적 예산재배분의 권한이 없음.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가 작성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해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작성지침과 교육의 정도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큰 차이가 없음. 하지만 컨설팅은 광역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게 집중됨
 - * 예산담당(A그룹) 228명(광역16명/기초212명)이며, 사업담당(B그룹)은 3,104명(광역395명/기초2,709명), 비작성(C그룹)은 2,000명(광역277명/기초1,723명)임
 - *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 5. 매우 그렇다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및 절차]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4	395	2.8
	기초자치단체	212	3.0	2,709	2.9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4	395	3.0
	기초자치단체	212	3.1	2,709	3.1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 일정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5	395	3.1
	기초자치단체	212	3.1	2,709	3.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광역자치단체	16	75.0	25.0	395	57.0	43.0
	기초자치단체	212	73.1	26.9	2,709	57.0	43.0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컨설팅	광역자치단체	16	81.3	18.8	395	58.5	41.5
	기초자치단체	212	41.0	59.0	2,709	38.8	61.2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사례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광역자치단체	16	87.5	12.5	0.0	395	59.0	24.3	16.7
	기초자치단체	212	91.5	5.7	2.8	2,709	51.6	25.9	22.6

-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이후 인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3	395	3.2
	기초자치단체	212	3.0	2,709	3.3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0	395	3.1
	기초자치단체	212	2.5	2,709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5	395	3.2
	기초자치단체	212	2.9	2,709	3.2

-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가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담당자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성인지예산서를 비작성한 공무원들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
- 소속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 성별수요를 고려한 예산 집행의 중요도, 지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의 중요도 또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광역	16	2.2	395	3.2	277	3.4
	기초	212	2.7	2,709	3.2	1,723	3.5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광역	16	2.2	395	3.1	277	3.4
	기초	212	2.6	2,709	3.1	1,723	3.4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광역	16	1.9	395	3.0	277	3.1
	기초	212	2.5	2,709	3.0	1,723	3.2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광역	16	2.4	395	3.2	277	3.4
	기초	212	2.9	2,709	3.2	1,723	3.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광역	16	2.6	395	3.1	277	3.3
	기초	212	2.8	2,709	3.1	1,723	3.2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	16	2.8	395	3.3	277	3.5
	기초	212	3.1	2,709	3.3	1,723	3.5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	16	2.9	395	3.3	277	3.6
	기초	212	3.1	2,709	3.4	1,723	3.6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	16	2.1	395	3.1	277	3.4
	기초	212	2.7	2,709	3.1	1,723	3.4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광역	16	2.6	395	3.1	277	3.5
	기초	212	2.8	2,709	3.2	1,723	3.5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광역	16	2.3	395	3.1	277	3.4
	기초	212	2.7	2,709	3.1	1,723	3.4

○ 지역별 비교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의 적절성,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예산담당은 부산, 광주지역이, 사업담당은 부산, 세종지역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 부산지역은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타 지역보다 많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서울	25	3.1	358	2.8
	부산	16	3.4	167	3.2
	대구	9	2.3	74	2.9
	인천	11	3.2	155	3.0
	광주	5	3.4	85	2.9
	대전	6	2.8	61	2.5
	울산	6	2.8	84	2.6
	세종	1	2.0	15	3.2
	경기	29	2.9	531	2.8
	강원	19	2.8	161	2.8
	충북	12	3.0	199	2.9
	충남	15	2.9	162	3.1
	전북	13	2.8	184	3.0
	전남	20	3.1	261	3.0
	경북	22	3.2	298	3.0
	경남	18	2.7	236	3.0
	제주	1	2.0	73	2.9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서울	25	2.9	358
부산		16	3.4	167	3.3
대구		9	2.7	74	3.1
인천		11	2.9	155	3.1
광주		5	3.0	85	2.9
대전		6	2.7	61	3.0
울산		6	3.0	84	2.8
세종		1	2.0	15	3.2
경기		29	2.9	531	3.0
강원		19	2.9	161	3.0
충북		12	3.1	199	3.0
충남		15	3.1	162	3.2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전북	13	3.3	184	3.2
	전남	20	3.3	261	3.1
	경북	22	3.2	298	3.1
	경남	18	2.8	236	3.1
	제주	1	2.0	73	3.2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	서울	25	3.3	358	3.2
	부산	16	3.4	167	3.4
	대구	9	2.8	74	3.2
	인천	11	2.8	155	3.2
	광주	5	3.4	85	3.1
	대전	6	3.0	61	3.0
	울산	6	3.0	84	3.1
	세종	1	3.0	15	3.3
	경기	29	2.9	531	3.2
	강원	19	2.9	161	3.1
	충북	12	3.1	199	3.1
	충남	15	3.0	162	3.3
	전북	13	3.3	184	3.3
	전남	20	2.8	261	3.2
	경북	22	2.9	298	3.2
	경남	18	2.9	236	3.3
	제주	1	2.0	73	3.2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①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②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③성인지예산서 작성컨설팅)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경우 부산, 광주, 세종, 충남, 제주지역의 예산담당자는 100% 읽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담당자 또한 세종지역 담당자의 93%가 읽었다고 응답함
 .. 부산지역은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으로 지침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종지역은 행정구역 신설로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참여율은 전북, 강원지역의 예산담당자와 대전, 경북지역의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비율이 높으며, 컨설팅은 대전지역의 예산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모두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음
- .. 대전지역은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으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됨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서울	25	92.0	72.0	56.0	358	50.8	51.4	34.1
부산	16	100.0	81.3	75.0	167	54.5	59.9	51.5
대구	9	88.9	66.7	44.4	74	44.6	51.4	37.8
인천	11	90.9	54.5	18.2	155	47.7	58.1	45.8
광주	5	100.0	60.0	0.0	85	47.1	57.6	38.8
대전	6	83.3	83.3	100.0	61	57.4	80.3	78.7
울산	6	83.3	50.0	50.0	84	39.3	61.9	36.9
세종	1	100.0	100.0	0.0	15	93.3	33.3	26.7
경기	29	79.3	72.4	17.2	531	46.0	58.0	38.2
강원	19	94.7	84.2	73.7	161	50.9	36.6	36.0
충북	12	91.7	83.3	50.0	199	52.3	48.7	50.3
충남	15	100.0	80.0	60.0	162	54.3	56.2	38.9
전북	13	92.3	84.6	76.9	184	56.0	56.5	38.6
전남	20	90.0	60.0	15.0	261	56.3	52.9	29.1
경북	22	90.9	72.7	13.6	298	59.7	77.5	46.6
경남	18	94.4	72.2	44.4	236	56.8	54.2	41.9
제주	1	100.0	100.0	100.0	73	65.8	63.0	68.5

주요 현안에 따른 정책과제

- 제도운영의 구체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의 콘텐츠 개발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
-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
 - 시·도, 시·군·구별 교육자료 및 매뉴얼 발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담당자의 1차적 컨설팅 역량 강화
-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체계 활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강화

제3부. 해외 성인지예산제도 분석과 시사점

5.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과 성인지예산제도

-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경과와 현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심층연구는 미비하였음. 또한 기존 경제개발경험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발전공유사업이 다른 영역과 주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아시아권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가 KSP로 시행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점검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험이 있으며 KSP 파트너국인 필리핀과 파트너국이 아닌 말레이시아를 비교
 - KSP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으로, 경제·사회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공유에 중점을 둠
 - KSP 중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재정이나 조세 등 거시경제정책에 추점이 두고 있으며 특정국에 대해 맞춤형 자문, 컨설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듈화사업은 해당 사업이나 정책을 정리하여 파트너국에 소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

○ 개요

-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정부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후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국가수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음. 오히려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을 지닌 성인지예산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성인지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제도 운영형태

- 예산편성 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차이와 차별 등도 포함함
- 중앙부처의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방식은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산접근법이고 두 번째 방식은 5단계 접근법임
 -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산접근법(The three categories of expenditure approach)
 - 예산을 1) 여성을 위한 예산, 2) 정부고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3) 나머지 일반예산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성주류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기에 적합함
 - 5단계 접근법
 - 1) 수요조사, 2) 정책, 프로그램, 3) 투입, 4) 결과, 5) 영향/성과의 단계를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 수혜자의 젠더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함
- 기존의 성과주의 일반예산서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형식임

○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 말레이시아 페낭지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더 잘 이해하고 정부와 주민들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함
- 페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1)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 FGI 실시, 3) 지역주민 투표, 4) 사업/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

□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 개요
 - 필리핀은 1995년 GAD(Gender and Development) 예산을 도입하면서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적근거는 여성권리장전, 일반세출예산법,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음
- 제도 운영형태
 - 필리핀에서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GAD 계획과 예산편성은 매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함(전체예산의 5% 이상을 GAD로 분류하여 편성)
 - 정부의 공식문서로 GAD 지침을 개발, GAD 계획과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 필리핀의 GAD는 지방정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주도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필리핀 Malaybalay시에서는 지역사회대상 수요조사 시스템(MISS)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정책 시사점

- 파트너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모듈 개발
 - KSP 측면
 - 2014년도 KSP 중 모듈화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모듈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듈화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적 소개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각 국가별 맞춤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KSP를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인과 추진체계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사료됨

- .. 필리핀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체예산의 5%를 GAD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와 KSP 파트너국이므로 기본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협력구축이 되어 있으므로 성인지예산제도를 KSP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용이할 것임. 이에 필리핀은 여성정책예산을 GAD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이상으로 성중립적인 95%예산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사료됨
- .. 거시경제정책, 조세정책처럼 성인지예산제도 또한 국가정책자문사업을 통해 1:1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
- .. 성인지예산이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파트너국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성인지예산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cross-cutting issue) 성평등 제고의 수단이자 재정제도이기도 한 양면적 성격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성평등지수 측면

- .. 국제 성평등지수(GGI, GII, GDI, SIGI 등)는 성인지예산관련 국가정책자문사업 등을 실시할 때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즉 성인지예산제도가 모듈로 파트너국에 소개될 때, 해당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 성평등지수를 활용하여 해당국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계 : KSP 모듈화사업은 일반적인 사례로 사업 특정국가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에 초기에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한 나라를 중심(특히 아시아권 국가)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예: 중동국가 및 이슬람 국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6
가. 연구방법	6
나. 주요 연구내용	8

제1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23
1.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25
가. 성인지예산제도 5개년 발전계획(안)의 이행 점검	25
나.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타당성	33
2.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천방안	34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34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40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전략-세부과제-구체적인 실행방안	45
3. 소결	74
I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75
1. 조사의 개요	77
가.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77
나. 2014년 조사 설계	79

2.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분석	84
가. 응답자 특성	84
나.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	87
다.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비용	112
라.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	116
3. 소결	117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21
1. 조사의 개요	123
가.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123
나. 조사대상	124
다. 조사방법	127
라. 조사내용	129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2
3.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134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135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148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 변화	157
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166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166
나.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176
다. 지자체 예산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182
라. 지역 성평등목표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185

5.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188
가.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188
나.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인지	197
6. 소결	200

제3부. 해외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V.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213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과 성인지예산제도	215
가. 개요	215
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중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의 채택가능성	217
2.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220
가.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	220
나.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232
다. 소결	247
3. 정책 시사점	255
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측면	255
나. 성평등지수 측면	258
VI.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261
1. 종합논의	263
2. 정책과제	268

■ 참고문헌	273
■ 관련 자료 목록	277
■ 부 록	281
[부록 1] 2015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83
[부록 2]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89
[부록 3] 2011~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296
[부록 4]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299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그룹, B그룹) 설문지	314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그룹) 설문지	330
■ Abstract	337

표 목 차

<표 -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연구에 기반한 제도시행의 주요 성과	5
<표 -2> 주요 연구진	8
<표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 작성주기에 따른 제도 연구 및 지원	9
<표 -4>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안)의 일부	11
<표 -5>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안)의 일부	13
<표 -6> ~ 차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관성	18
<표 -7> 차 연구의 주요 내용	19
<표 -1> 세부사업의 시행평가의 구분	26
<표 -2>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5개년 계획 실천여부 확인	28
<표 -3>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36
<표 -4> 전략 -세부과제 ~ -6개 세부과제	46
<표 -5> 전략 -세부과제 ~ -4개 세부과제	51
<표 -6> 전략 -세부과제 ~ -3개 세부과제	57
<표 -7> 전략 -세부과제 ~ -8개 세부과제	61
<표 -8> 전략 -세부과제 ~ -5개 실행과제	68
<표 -9> 전략 -세부과제 ~ -6개 실행과제	71
<표 -1>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 개요	78
<표 -2>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추정을 위한 항목	80
<표 -3> 성인지예산제도의 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81
<표 -4>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83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	85
<표 -6>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현황	86
<표 -7>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88

<표 -8>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90
<표 -9>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92
<표 -10>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94
<표 -11>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97
<표 -12>	성인지예산제도를 주제로 대화: 2014년 처음 작성자	99
<표 -13>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 파악: 2014년 처음 작성자 ..	101
<표 -14>	양성평등을 주제로 대화: 2014년 이전 작성자	103
<표 -15>	성인지예산제도를 주제로 대화: 2014년 이전 작성자	105
<표 -16>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 파악: 2014년 이전 작성자 ..	107
<표 -17>	예·결산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여부	111
<표 -18>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113
<표 -19>	프로빗(Probit) 추정결과	114
<표 -20>	주요 변수별 비용/WTP	115
<표 -2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116
<표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내용	129
<표 -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내용	131
<표 -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33
<표 -4>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136
<표 -5>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138
<표 -6>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	141
<표 -7>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절차: 예산담당	143
<표 -8>	본인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사업담당	146
<표 -9>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49
<표 -10>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152
<표 -11>	성인지예산서 작성컨설팅	155
<표 -12>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58
<표 -13>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161

<표	-1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164
<표	-15>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168
<표	-16>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171
<표	-17>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174
<표	-18>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177
<표	-19>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180
<표	-20>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83
<표	-21>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86
<표	-22>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89
<표	-23>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192
<표	-24>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195
<표	-25>	2013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98
<표	-26>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200
<표	-27>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201
<표	-28>	성별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201
<표	-29>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	201
<표	-30>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	201
<표	-31>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및 절차	202

<표	-3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203
<표	-33>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 변화	203
<표	-34>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204
<표	-35>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205
<표	-36>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207
<표	-1> 부처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실시한 프로그램 (MWFCF, 2005 ¹)	222
<표	-2>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5단계 접근법(MWFCF, 2005 ²)	225
<표	-3>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MWFCF, 2005 ²) ..	225
<표	-4> 운영예산서 ABM-2 양식(MWFCF, 2005 ²)	227
<표	-5> 개발예산서 양식(MWFCF, 2005 ²)	228
<표	-6> 폐낭 예산안 편성주기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KANITA, 2011)	229
<표	-7>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249
<표	-8>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252

그 립 목 차

[그림	-1] 성인지예산제도 홍보자료	14
[그림	-2] 한눈에 보는 성인지예산서(예시)	15
[그림	-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	38
[그림	-2]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와 운영성과	39
[그림	-3]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구조	40
[그림	-4]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6대 전략(~) -13개 세부과제(~)-32개 실행방안	42
[그림	-5]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한 성평등 수준의 증가	45
[그림	-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인식의 변화	95
[그림	-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행동의 변화 (2014년 처음 작성자)	109
[그림	-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행동의 변화 (2014년 이전 작성자)	109
[그림	-4] 예·결산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112
[그림	-5]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117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 모집단	125
[그림	-2] 성인지예산서 총괄 담당자용 조사 안내문	126
[그림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방법	128

I

연구개요

- | | |
|-------------------|---|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6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9년 최초의 성인지예산서(『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가 작성된 이래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착되어 왔으며, 대상사업의 수와 예산규모 면에서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그동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결산서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된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과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김영옥 외, 2008; 김영옥 외, 2009; 김영옥 외, 2010a)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된 인프라, 지원 등의 연구인 반면,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조선주 외, 2011a; 조선주 외, 2012a; 조선주 외, 2013a)은 제도의 시행 이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해당 연구들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년도 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그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구내용 간에 차별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제도의 정착방안을 고민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도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주 외(2012a;28-52)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현재의 지형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운용측면에서 제도의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제도의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상사업 선정, 집행, 점검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조선주 외, 2012a;64-71).

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은 제도의 발전단계와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별 과정 및 목표 등을 수립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은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좌표일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¹⁾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11.3.8)에 근거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2013년,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2014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성인지예·결산서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도, 이해도 등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간 몇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왔던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차이를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선정방식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초기에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기의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최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라 한다)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모듈화사업 및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과제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후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1) 2015년 연구부터는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매년 가장 현안이 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표 I-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II, III)연구에 기반한 제도시행의 주요 성과

구분	제도 시행 이전	제도 시행 이후	비고
주요 시행 성과	법적, 정책적 기반 미비	법적 기반의 안정성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수와 예산규모 증가	'11년 2,636,650백만원 '12년 2,785,379백만원 '13년 3,429,713백만원 '14년 10,323,902백만원 '15년 18,628,237백만원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자 고려하지 않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정책수요자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	성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강화	
	예산사업의 성별 통계 부재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통계 정보 축적	디브레인 시스템 활용 이호조의 시스템 활용
	성평등 효과분석 부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범위 및 확대	'10년 195개/'11년 245개 '12년 254개/'13년 275개 '14년 339개/'15년 343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미비	사업담당자의 성평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11 75.2%/'12 75.8%/'13 80.3%
	예산과정 및 정책집행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부재	사업별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관리 시행	성과목표 산출근거/ 성인지결산서 상 성평등효과분석/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체평가(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제도 도입 이후 여성수혜자 비율의 개선	계속작성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 증가 * 50.2%('11)→ 50.4%('14)
	-	정부주도 성인지예산시행국 및 주요 성평등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한국 성인지예산제도의 국제사회내 입지 구축	

자료: 조선주 외(2011a), 조선주 외(2012a), 조선주 외(2013a)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문헌, 관련 보고서 등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중장기 로드맵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책제언, 운영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분류하여 재배열하였다. 2010년에 수행된 김영옥 외(2010a;237-287)의 연구에서 제시한 성인지예산제도의 5개년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로드맵 수립의 기초로 삼았는데 해당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5개 영역의 18개의 세부과제를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개 세부과제의 내용을 연구진이 직접 검토 및 평가하여 그 실행여부를 판단하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세부과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임주영 외(2013a;153-158, 2013b;111-130)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제시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정 서류인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국가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대상자 1,218명, 2014년 조사 당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435명, 총 1,653명을 선정하고, 패널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한 513명을 패널조사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이루어졌다.

넷째,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지방공무원 중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과 작성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총 244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17개(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기초자치단체 총 227개(시 74, 군 84, 자치구 69)에 근무하는 5,332명

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세 달 동안 이루어졌다.

다섯째,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관련 연구자, 해외 전문가 등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후에는 연구진에서 수립한 중장기 로드맵의 세부과제와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1부의 국가재정부분 중 중장기 로드맵 부분은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부의 지방재정부분은 행정자치부 및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 재정 분야 및 성인지예산제도 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한국재정학회,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지수와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및 관련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센터의 연구진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8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표 I-2〉 주요 연구진

연구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협력기관	주요 연구자	비고
2014-5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조선주 외 14명	
2014-5-1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한국재정학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박수범 김동식 김효주 장윤선 김소정	
-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영숙 손정민 김병권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협조기관: 기획재정부 외 41개 중앙행정기관
2014-5-2	·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방안 :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황정임 정가원 권희정 김효진 김해람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협조기관: 행정자치부 외 244개 지자체
-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 기반 조성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가원 조선주 김해람	

주: 연구번호의 '-'표시는 보고서를 별권으로 발간하지 않으며, 본문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 방법론 및 관련 정책제언을 위해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제언 등을 발전시켰다.

나.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안착 및 지속적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실무지원 정례적 연구사업」과 「중장기적 종합연구과제

(중점연구) 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 동안의 성인지예산 연구는 성인지예산의 개념 정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1년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 연구의 로드맵을 가지고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년도와 연속성 및 차별성을 갖고 실시되는 4차 연도 연구이면서 종합연구의 마지막 연구이다(<표 -6>, <표 -7> 참조). 2015년부터는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각론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1-3차 연도(<표 -6> 참조)와 마찬가지로 실무지원 단기성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점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실무지원 단기성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였다.

<표 I-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 작성주기에 따른 제도 연구 및 지원

구분	내용
예·결산서 작성주기에 따른 제도 연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개발 연구 ○ 대상사업 선정 표준기준 개발 연구 ○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관련 인력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연구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 전년도 제도 운영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기초로 정책현장에서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도록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국가)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변경된 부분은 작성 내용상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의 달리 성평등 목표 기준이 변경된 점이다. 기관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성평등 목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성인지결

10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산서에서도 성인지예산서와 동일한 성평등 목표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형식상 성인지결산서 양식이 보완되어 성인지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추이 분석 등을 위해 예산집행결과 표에 전년도 지출액, 전년대비 증감액·증감을 등을 추가하였으며, 관리대상사업유형도 전년도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목표달성여부 및 목표달성률을 추가하여 내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참조).

또한 (국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은 전년도 제도 운영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기초로 정책현장에서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작성지침, 작성양식, 표준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배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대상사업 선정,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결과를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양식 변경,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에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4〉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안)의 일부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① 단계 : 사업에 ‘여성’을 나타내는 명칭 포함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성인지예산서 작성
② 단계 :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성인지예산서 작성
③ 단계 : 여성, 가족과 밀접한 분야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성인지예산서 작성
④ 단계 : 여성·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성인지예산서 작성
⑤ 단계 : 상기 이외에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위탁 사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성인지예산서 작성

- 유형별 예시

①② ‘여성’이라는 명칭이 있거나,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세부사업에 여성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과학자, 여성사업가, 산모지원

사업명(예시)	선정 필요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R&D)	전문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제고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경제인 및 여성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1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③ 여성·가족과 밀접한 분야 사업

- 보육, 신생아 지원, 자녀 교육,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

사업명(예시)	선정 필요성
직장어린이집지원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요보호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부담 강화 및 중·고령층 여성인력 활용

④ 여성·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국제적 성평등 지수의 성 격차 순위가 낮은 분야(교육, 노동, 보건 등)의 사업
 - * GI(UNDP가 2010년부터 발표하는 지수, 2012년) 148개국 중 27위
 - * GGI(WEF가 2006년부터 발표하는 지수, 2013년) 136개국 중 111위
 - * GEI(Social Watch의 Gender Equity Index, 성형평지수, 2012년) 154개국 중 99위

사업명(예시)	선정 필요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통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⑤ 상기 이외에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예산 편성 시 사업수혜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사업
- 예산 편성 시 사업수혜자의 성별을 알 수 없어도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 성별 수혜를 알 수 있는 사업
 -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탁한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성별 수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예: 위탁 교육·훈련)

사업명(예시)	선정 필요성
인적자원육성관리	여성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여성인력 양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대학IT연구센터지원	IT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별영향 분석을 통하여 성평등한 참여기회 제공 및 IT분야 진출 보장

자료: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p.70

〈표 I-5〉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안)의 일부

'15년 성과목표·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 설정

성과목표(지표)	'13년 실적	'14년 추정치	'15년 목표치

○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 상기 성별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산출근거를 제시, 또한 '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평가 결과를 활용

('13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 *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사항 등 '13년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를 활용

(기타)

- * 상기 이외의 성과목표(지표) 산출근거를 제시

자료: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p.6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성인지결산서인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 양식, 매뉴얼 초안 마련, e-호조 입력 방법 등을 배포하였다. 아울러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해 전년도 제도 운영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기초로 정책현장에서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도록 지침, 양식,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분석연구로서 당해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국가 공무원 대상 조사 및 전국 지방공무원 조사를 시행하였다(1부 장 및 2부 참조).

또한 주요국의 재정부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 관리하였다.

주요국의 재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전문가세미나²⁾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 예

1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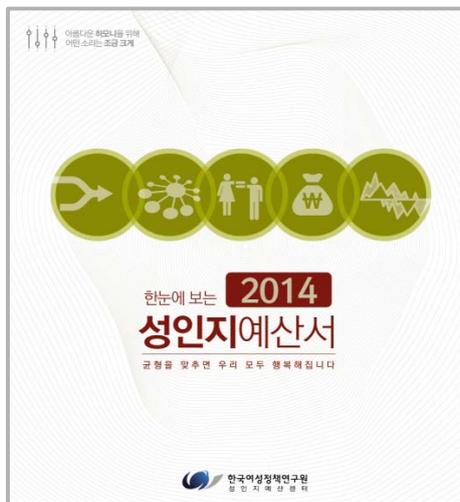
산결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국민체감도 제고하였으며,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슈 페이퍼 및 홍보자료 업데이트 및 영문 자료를 출간하였다.³⁾



[그림 I -1] 성인지예산제도 홍보자료

- 2) 본 세미나는 ‘아시아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 선도적 성평등정책의 발전경험공유(KSP)를 위한 가능성 탐색(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Gender Budgeting in Asia)’을 주제로 2014년 6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됨
- 3) 홈페이지 개편 <http://gb.kwdi.re.kr/>

아울러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DB화 및 팩트를 분석하였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layout 구성 및 검토와 부처별, 사업별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의 DB 작업을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통계 패키지(SPSS, SAS 등)를 활용하였다.



[그림 I-2] 한눈에 보는 성인지예산서(예시)

셋째, 본 보고서의 1, 2, 3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점연구과제이다. 1부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2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된 부분이다. 3부는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처럼 해당 내용을 3부로 구성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은 2010회계연도부터 시작되어 시행 6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은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결산을 하였기 때문에 일괄된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부의 지방재정부문도 그 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해외에 우리제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점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점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부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제 4)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6년차에 접어들어 따라 로드맵의 필요성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단계별 진행과정 및 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 각 단계별 목표 및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1-3차 연도의 공무원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성인지예산의 효과를 특정하고, 성평등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새롭게 조사 설계를 실시하였다.

제2부5)의 제 6)장에서는 최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안을 진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선택과 집중)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제3부의 제 7)장에서는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특성과

4) 자세한 내용은 단위보고서 2014-5-1를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단위보고서 2014-5-2를 참조

성과를 분석하고, KSP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2월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아시아 권역 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과의 네트워킹 실시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컨퍼런스 참석 결과, 상기 4개국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각국이 구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gender architecture의 양상, 제도의 환류 기능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선도적 성평등정책의 KSP기반을 마련하고, UN WOMEN Gender Responsive Budgeting Specialist 등 현지의 성인지예산 전문가를 통해 해당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의 활용 및 환류방안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체계적 연구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역량 형성의 기반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성평등정책(성평등 제도 발전경험: (예)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 구축 등)의 KSP 기반마련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표 I-6〉 I ~ Ⅲ차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관성

구분	2011(1차년도 연구)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2012(2차년도 연구)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	2013(3차년도 연구)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I)
중장기적 제도추진 및 개선방안 (각 년도 중점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개념 및 방법론 정립 - 성인지예·결산서를 통한 재정운용의 성별효과 실증 분석 -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와 시범작성 매뉴얼 개발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 국가 성인지예산 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방안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행정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견 조사 패널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실무지원 정례적, 단기성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매뉴얼(안)개발 - GB포럼 운영 -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발간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1 발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GB포럼 운영 - 한눈에 보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발간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2 발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2012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안)개발 - GB포럼 운영 - 한눈에 보는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발간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3 발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주: 실무지원 정례적 연구사업은 매년 일정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주기에 따라 수행하며 1-4차 연도 사업 주제(표 I-6, I-7)가 동일함
 자료: 조선주 외(2013a;13),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표 I-7〉 IV차 연구의 주요 내용

연도	계속사업 : 2014년(4년차)	
과제명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V)	
주요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도구 개발 ○ 제도운영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 주요 선진국 재정부 및 국내외 기관간 협력 연구, 선도적 성평등 정책의 KSP 기반마련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을 위한 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 국내외 재정환경 및 성 평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 대응방안 제시 연구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중점 연구 내용</p> <p>[국가(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산학연 공동)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분석 <p>[지방자치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 의견 조사 분석(산학연 공동) <p>[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재정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KSP 가능성 탐색

제 1 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Ⅱ.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23
-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75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1.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25
2.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천방안 34
3. 소결 74

1.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가. 성인지예산제도 5개년 발전계획(안)의 이행 점검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출발은 현재 제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⁶⁾ 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창기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또는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시점인 김영옥 외(2010b;222-287)의 SWOT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계획 18개 세부과제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임주영 외(2012;60-64)에서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검토하여 각 세부사업들에 대한 시행평가를 하였다.

세부사업의 시행평가 검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이미 시행되어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를 구분1()로 표시하였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구분2()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는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서 구분3(x)으로 표시하였다.

세부과제의 실천여부 검토는 연구진들이 직접 18개 세부과제에 맞게 세부 실천과제를 뽑아 정리한 후 해당 실천과제의 시행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때 평가방법은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아직까지 성인지예산제도의 세부과제에 대한 계량적 평가지표가 제시되거나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통해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지예산제도의 향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세부과제의 시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

6) 2006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 내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위보고서 2014-5-1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 성과지표(안)⁷⁾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1〉 세부사업의 시행평가의 구분

구분	구성내용
(구분 1, ○)	이미 반영된 과제들로서 정착단계에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집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들
(구분 2, △)	정착단계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안착이 되지 않아 성숙단계에서도 여전히 추진되어야할 세부과제들
(구분 3, ×)	제기만 되었을 뿐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할 세부과제들

아래의 표는 김영옥 외(2010a;240-287)에서 제시한 18개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선행들에서 제시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천과제들을 엮어 실천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교육·인적역량 강화’ 영역에서의 실천과제들은 대부분 구분2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과 함께 실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착이 되지 못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영역에서는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도 제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과제는 현재 모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합적 컨설팅제도 정착’과 ‘예산사업 특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는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의 전략적 선정’에 해당되는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실천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지속적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책무성 제고’ 영역에서는 모든 세부과제가 구분2()와 구분3(×)

7) 세부과제 시행여부에 대한 성과지표(안)은 단위보고서 2014-5-1에 자세히 수록하였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실천과제를 시행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시스템 변화’ 영역에서도 많은 과제들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거나(구분2),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구분3, x). 특히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예산시스템의 변화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구분된 구분2()와 구분3(x) 과제들을 향후 발전단계별 목표와 전략에 맞게 재배치하여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영옥 외(2010a;240-278)에서 제시한 영역과 세부과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처음 시작한 2010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부과제와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미 5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그 당시에 비해 많이 발전·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김영옥 외(2010a;240-28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들을 수정·보완하여 장기적 로드맵을 재설정하였음을 밝힌다.

〈표 Ⅱ -2〉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5개년 계획 실천여부 확인

전략목표	5대영역	18개 세부과제	세부 실천과제	설명	구분 (O, △, X)		
【전략목표 1】 성인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1. 교육·인적역량 강화	성인지정책 민간·예비 전문가 양성·교육 시스템 구축	성인지예산 교육기관 확충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싱크탱크 등에 대한 제도적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성인지 예산제도 민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경우 한국어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을 통한 확충 방안 여전히 필요	△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	교육대상자 풀의 확대	임주영 외(2012:68,82-83)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의 인원, 인력 수준, 관련예산의 정도와 관련하여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상별 맞춤형 교육안 개발	교육참가 의무규정 및 인센티브 마련	일반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예산전담 공무원 각각에 맞는 맞춤형 교육안 개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	임주영 외(2013a:24-25)에서 2012~2013년 성인지예·결산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성인지예산교육, 성인지결산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제시되고 이수되고 있음	△
					예비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개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전문인력양성교육 9개 과정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됨	O
			관학연 공동주관 '성인지정책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학연 공동주관 '성인지정책분석' 경진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성인지 관련 경진대회가 드물게 관측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성인지 정책분석의 경진대회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29

전략목표	5대영역	18개 세부과제	세부 실천과제	설명	구분 (○, △, X)	
【전략목표 1】 성인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2. 성별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도 제고	예비 성인지 전문가 현장 실무 및 취업기회 확대	전문가 배출정도와 관련 깊은 것으로 위의 실천과제의 현실적 정착여부와 관련 되어 있음. 현황파악과 관련 통계자료 미비로 평가 어려움	X	
			NGO 성인지 예산운동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단체 성인지예산 활동' 지원강화(여성발전기금 등)	문영진(2013:3-23)에 의하면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및 NGO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간협력 활성화	각종 위원회에 민간 성인지 예산 활동가 우선 위촉	위원회 구성 안됨	X
			성별분리통계 생산 매뉴얼 개발	'열린 사회를 위한 성인지 정책 미래포럼' 구성·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성인지예산포럼 개최, 운영 중임	△
			성별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가칭) '성인지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에서 유사 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이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성별분리통계 생산 매뉴얼 개발	성별분리통계 생산 지침 마련	2009년 제도시행 이후 성인지 예산사업들의 성별통계 구축 되어 있음	○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도 제고	성별분리통계 활용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있음	○
			성별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성별분리통계 생산·점검 사이클 마련	있음	○
			성별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및 인센티브 개발	부처별 분석대상 사업수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기초자료로 활용됨 지속적으로 구축된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 여성수혜비용 및 수혜액 추이분석	○
			성별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성별분리통계 생산·점검 사이클 마련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및 인센티브 개발	△

30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전략목표	5대영역	18개 세부과제	세부 실천과제	설명	구분 (○, △, X)	
【전략목표 2】 제도 추진 성과의 가시화	3. 대상 사업의 전략적 선정	통합적 건설성 제도정착	가칭 '성인지정책 컨설팅단' 위상 정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원단'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통합 컨설팅	통합 컨설팅 운영 인팀	X	
		예산사업 특화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실화	우수 컨설턴트 확보·양성 및 컨설팅 지원	정책컨설팅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매우 열악한 실정	△	
			예산사업 특화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성인지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으로 한정	△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성별영향 분석평가 내실화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원 예산분석 참고 자료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및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진행 중임	△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화	대상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산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 정보시스템 사업단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화	성평등 부문별 성평등 의제 구체화	대상사업의 포괄성이 떨어지고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현실임	X
		범부처 사업 분석의 제도화	범부처 사업 분석	대상사업의 우선 순위화	대상사업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X
			범부처 사업 분석 제도화	양성평등 사업 예산 분석	성별수혜통계는 작성될 수 있지만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님	X
		공공부문지출의 주기적 분석	향후 가능한 분석임	X		
		과학기술 R&D 지출 분석	부처별 성별수혜 정도는 분석가능함	△		

Ⅱ.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31

전략목표	5대영역	18개 세부과제	세부 실천과제	설명	구분 (○, △, X)			
【전략목표 2】 제도 추진 성과의 가시화	5. 예산 시스템 변화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으로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을 「성인지적 예산 작성 요구 양식」으로 개선	△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으로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을 「성인지적 예산 작성 요구 양식」으로 개선	○			
		성인지적 예산심의 절차 마련	성인지적 예산심의 절차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성인지예산 심의는 정부의 일반 예산안 심의 절차와 거의 동일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성인지예산 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안됨	X		
			성인지적 예산심의 절차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성인지예산 심의는 정부의 일반 예산안 심의 절차와 거의 동일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성인지예산 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안됨	X		
		4. 정부의 책무성 제고	고위 공무원의 인식제고	고위 공무원의 인식제고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성 주류화 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목 개설 공무원 위크숍 등에서의 토론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인센티브 부족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고위 공무원의 인식제고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성 주류화 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목 개설 공무원 위크숍 등에서의 토론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인센티브 부족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X	
			성인지정책 협의 시스템 구축·운영	성인지정책 협의 시스템 구축·운영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 및 실무위원회 구성 성인지정책 담당관 지정 및 협의체 구성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안 심의 시스템 및 지원 인프라 미비 성인지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체계 부재	△	
				성인지정책 협의 시스템 구축·운영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 및 실무위원회 구성 성인지정책 담당관 지정 및 협의체 구성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안 심의 시스템 및 지원 인프라 미비 성인지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체계 부재	△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 전문가 기초 연구를 통한 사업별 설명등 현황 조사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전문가 심층 분석의 활성화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기타 대부분 사업 의제 발굴	매년 신규 사업 발굴됨 성인지예산분석센터, 한국재정학회 등의 전문가 심층분석 활동도 높음 연차별 성별분리통계와 인식도조사 등을 통한 패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3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전략목표	5대영역	18개 세부과제	세부 실천과제	설명	구분 (○, △, X)
			부처 내 성인지예산 심의의 일상화 기획재정부 활적심의의 제도화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와의 협의체계 비공식 운영 중임/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중임	X △
		대상사업 및 담당공무원 인센티브제 실시	대상사업 선정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되지 않고 있음 도입되지 않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됨	X X ○
		법적기반 정비	국가재정법 개정(안)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음	△

자료: 김영욱 외(2010a;240-287)에서 제시한 18개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본 연구진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평가(설명, 구분) 하였음

나.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타당성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는 2007년 이래로 매년 계속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일반 재정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접목,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한 관련제도 도입,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연계 등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개선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가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 더 나아가 일반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성인지예산제도 5년 성과와 과제」 포럼, 여성가족부, 2013).

제도개선을 위해 매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주최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회 및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여 ‘성인지예산포럼’을 운영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지지와 이해도의 문제로만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주 외(2012a;49-84)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현재의 좌표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운용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지 6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0여년의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으로 전면 개편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성 주류화 조치의 강력한 수단으로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고 동시에 국가재정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은 목표-전략-세부과제-실천과제 등의

구성요소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사회의 도래라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설계도면이 될 것이다. 즉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성인지예산제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실무적인 차원의 단기적 접근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향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제도의 운영과 성과가 각 단계별로 자기 완결적(self-contained)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성이 되거나 혹은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시도 자체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 단계상 정착단계에서 어떤 세부과제나 제도들은 단계별 특성에 맞게 운용되어 예산운용과정에 정착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업들은 아예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구분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면 특정단계에서 이루어지 못해 미완성/미완결 상태로 남게 되는 제도와 사업들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여 적용하는 등의 연동기준(rolling basis)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과제, 실천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성인지예산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정착되어 국가재정의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천방안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2006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작성되어 현재까지 매년 성인지예산제도는 확대되어 왔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인지예산제도는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명문화되면서 성인지예산제도는 더욱 확대되었다.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편성된 예산액의 규모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편성된 총 성인지예산규모는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에서 7조 3,144억원(전체예산의 3.6%)⁸⁾이었으나,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42개 기관 339개 세부사업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해 22조 4,349억원(전체예산 대비 6.3%)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다.⁹⁾

법적으로 제도가 명문화되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완전히 정착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의 도입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시행되는 다양한 세부사업들은 제도의 도입과 함께 매년 같이 시행되기 때문이며, 제도의 도입초기에만 언급되는 세부사업들뿐만 아니라 제도가 정착된 이후 필요한 세부사업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변화까지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더욱 제도의 단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대한 단계구분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

윤영진(2013;4-5)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5단계는 도입준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 고도화단계로 구분된다.

8) 국회 확정안 기준

9) 정부안 기준

〈표 Ⅱ-3〉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

단계	시기	활동내역
도입준비단계	2007~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발효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 반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심의 연구: 개념, 분석방법 및 이론정립, 외국사례조사 등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도입단계	2009~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국회제출: 각 부처 작성 성인지예산서를 단순 취합한 형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에 기금포함, 성과지표 추가
정착단계	2011~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2013년도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예산 거버넌스 구축
성숙단계	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고도화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 반영 성인지통계 등의 DB 확대 및 심화 성인지예산 관련제도간의 연계
고도화단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예산사업과 예산과정의 전 단계에서의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관리제도, 성인지통계 DB구축 등의 제도간 유기적 연계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예산 및 정책에의 실질적 반영

자료: 윤영진(2013;4-5)

5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도입준비단계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명문화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도도입에 관한 기초연구가 시행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도입단계는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기금사업까지 포함되는 시기이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서 양식에 성과지표가 추가된 시기이다. 정착단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도달하게 되는 성숙단계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성인지적 분석이 예산 및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제도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마지막 고

도화단계는 모든 예산사업과 예산과정의 전 단계에서 성인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예산 및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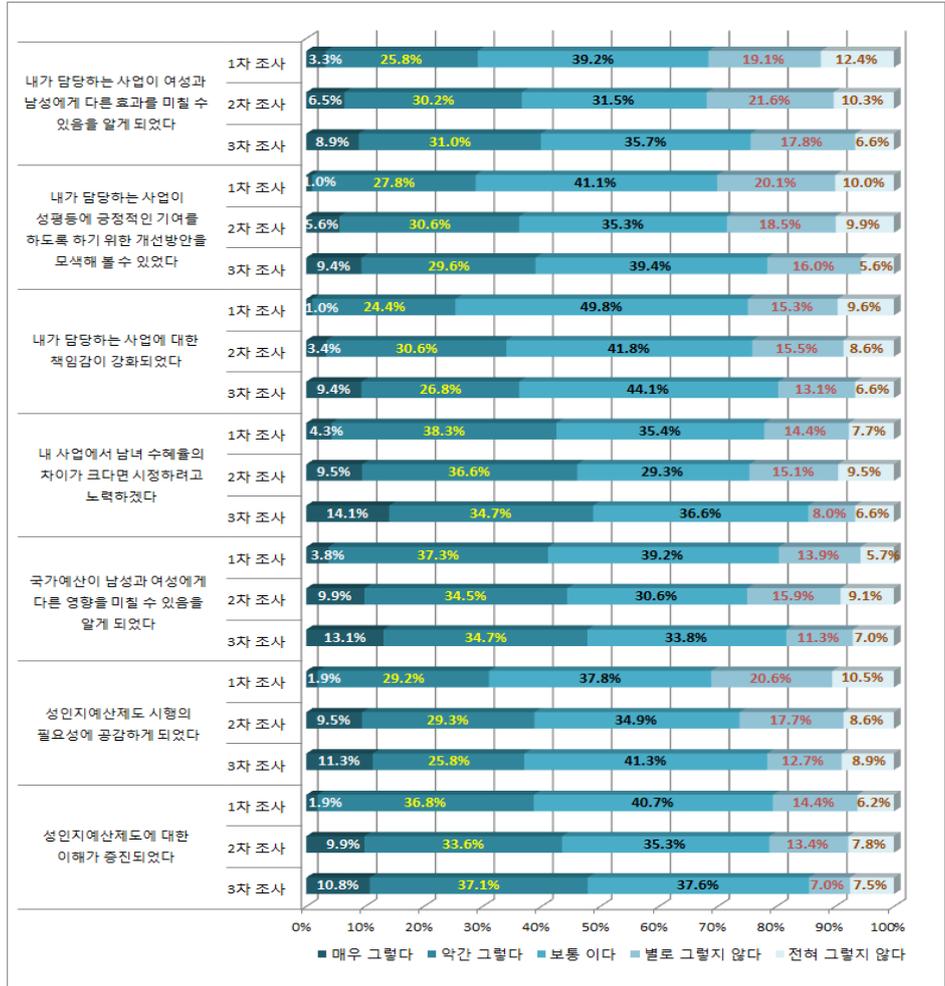
윤영진(2013;4)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 단계는 성숙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였다.¹⁰⁾

임주영 외(2013b;11-12)의 연구에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 성숙, 고도화의 단계를 거침에 따라 각 단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제도의 목적이 변화된다고 하였다. 즉 제도의 도입 및 정착단계에서는 성평등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 반면, 성숙단계에서는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목표가 추가되고, 제도의 고도화단계에서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가된다. 따라서 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운영성과 역시 변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도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역시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Sharp and Broomhil(2002;32-42)와 Sharp(2003;9-10)의 연구에서도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으로 첫째, 국가정책과 재정운용 시 성평등 인식제고, 둘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셋째, 성평등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평등 혹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식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의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고도화하고 분석결과를 실질적으로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성인지 통계 등의 DB를 확대하고 성인지예산 관련제도간의 연계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성숙단계를 5년 정도 거치고 나면 모든 예산사업과 모든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고도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윤영진, 20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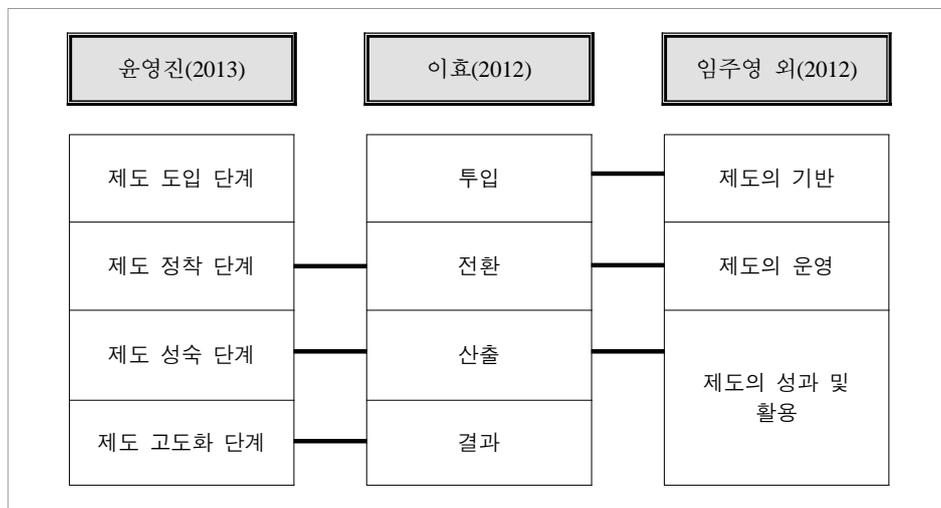
자료: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패널 분석』, p.78

[그림 II-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

그러나 성평등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예산 및 정책을 변경하는데 있다.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목적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수혜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및 정책에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성인지예산제도가

명실공히 정착될 것이다(윤영진, 2013;6).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인 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발전단계는 앞에서 제시한 윤영진(2013;4-5)의 발전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제도도입단계를 제외한 총 4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료: 임주영 외(2013b;14)

[그림 Ⅱ-2]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와 운영성과

임주영 외(2013b;14)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와 제도의 운영성과를 [그림 Ⅱ-2]와 같이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도 도입단계는 제도의 기반구축과 연결되고, 제도정책단계는 제도의 운영, 성숙 및 고도화 단계는 제도의 성과 및 활용과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가 반드시 단계 별로 정확하게 매칭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간 적 순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연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우선 제도의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목표가 제시된다. 제도의 발전단계와 목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진(2013;4-5), 임주영 외(2013b;15)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4단계로 구성되며, 도입단계(2009~2010)와 정착단계(2011~2013)의 목표는 성평등 인식제고가 된다. 성숙단계(2014~2018)는 성평등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추가된다.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단계(2019~)는 성평등 인식제고, 정부책임성 강화에 더해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추가된다. 즉,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그림 II-3]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구조

[그림 II-3]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식화한 것이다. 각 단계별 목표와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가 제시된다. 단계별 세부과제가 반드시 해당 단계에 달성되어야만 그 단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과제는 해

당 단계에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세부과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와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분류하였다고 해서 세부과제가 단계별로 완벽히 매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세부과제를 시간적으로 배열했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전략 및 세부과제는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의 리뷰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이다. 연구진에서는 이전에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제, 제언, 시행전략 등을 종합하여 제도의 발전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전략 및 세부과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은 [그림 4]와 같이 2단계-6대 전략-13개 세부과제-32개 실행방안으로 구성된다. 매년 동일하게 지속되는 세부과제는 처음 도입되는 단계의 세부과제로 분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은 세부과제가 아닌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입단계와 정착단계는 현재 상황에서 이미 시기적으로 과거의 단계에 해당된다. 앞 절 및 그 동안의 연구에서 도입단계와 정착단계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살펴본 만큼 본 절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인 성숙단계와 고도화단계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¹¹⁾

11) 본 장에서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 실천방안의 상당 부분은 임주영 외(2013a;74-86, 2013b;111-130)의 두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거나 개선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은 임주영 외(2013a, 2013b)의 주요 제언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정책화하고 재구성한 후속연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임주영 외(2013a)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제도운영의 체계화 및 예산편성방식 개선과 관련한 세부과제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성인지 예산위원회, 중기재정운용계획 내 양성평등 부문 포함과 같은 세부과제는 임주영 외(2013b)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4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비 전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한 성평등 수준제고	
목 표	▪ 성평등 인식제고 ▪ 정부 책임성 강화 ▪ 예산과 정책의 변화	
	성숙단계 (2014~2018) ⇨	고도화단계 (2019~) ⇨
	I. 제도적 기반확충	V. 인적 기반확대
	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 포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양성평등 분야로 독립 ▪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로 첨부 ▪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 포함 ②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조항 보완 ▪ 성인지예산제도 관리기구의 법제화 ▪ 성인지예·결산특별법(가칭)을 제정, 관련법을 통합	⑩ 성인지예산 담당 전문인력의 확대 ▪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업무기간 지속 ▪ 국회의정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과정 편성 ▪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필요 ⑪ 시민참여 제고 ▪ 시민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활성화 ▪ 민관 협력 활성화
	II.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VI.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③ 국가 성평등 목표와 계획의 구체화 ▪ (국가 성평등)중기적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립 ▪ 성인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목표 설정 ④ 예산요구서 제출단계의 심의·조정 및 성인지결산서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절차 마련	⑫ 성인지예산 회계정보의 DB화 ▪ 예산회계시스템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회계정보 취합 기능 강화 ⑬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충실성 제고 ▪ 성인지결산의 환류 기능 강화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 성인지결산 검사 내실화 및 인센티브 지원 ▪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 가능
	III.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⑤ 행정부 내 성인지예·결산 운영 전담 기구 설치 ▪ 성인지예산전문위원회 신설: 성인지예산결산심의 위원회(가칭) ⑥ 성인지예·결산제도 지원조직 확충 ▪ 성인지예산센터 확대개편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 확대 ▪ 공식화된 상설 자문회의체 구성	
	IV.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⑦ 예산 편성 지침의 실용성 제고 ▪ 성인지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 법적근거 마련: 부처별 GB담당자 사전협의체 설치 등 ▪ 부처별 중장기 성평등 목표 필요 ▪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의 부처별 이원화 ⑧ 성평등 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발굴과 별도의 사업예산 배정 ▪ 성평등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성인지적 특성이 있는 사업의 구분 ⑨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포괄적 선정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방안: 간소화(안), 전수조사(안) ▪ 전수조사(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그림 II-4] 성인지예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6대 전략(I~VI)-13개 세부과제(①~⑬)-32개 실행방안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43

각 단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숙화 되는 단계(2014~2018)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을 체계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략화하고 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 (중기전략) 제도적 기반의 확충: 양성평등 부문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
- (중기전략)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국가 성평등 목표와 계획의 구체화, 사전 예산심사 및 사후 평가
- (중기전략) 전담기구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성인지예·결산 운영 전담 기구 설치, 지원조직 확충
- (중기전략)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예산 편성 지침의 실용성 제고, 성평등화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의 발굴과 독립적인 예산 배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포괄적 선정

성인지예산제도의 고도화 단계(2019~)에서 요구되는 중요 목표는 성인지예산이 국가재정제도라는 큰 틀 내에서 원활히 기능하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에 있기에, 이를 뒷받침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전략과 실천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장기전략) 인적 기반 확대: 성인지예산 담당 전문 인력의 확대, 시민 참여 제고
- (장기전략)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인지예산 회계 정보의 DB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본 중장기 로드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성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있다. 그러나 성평등한 사회의 건설은 성인지예산제도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외에도 다양한 성평등·성인지적 제도가 필

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 역시 바뀌어야 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의 목적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완전한 정착에 있다. 또한 평가지표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얼마나 정착되어가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은 제도의 수준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궁극적 성과인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준이 올라올 경우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시기와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정착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아직까지 제도적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인지예산의 범위와 규모는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까지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¹²⁾

‘성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이 아닌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인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행이 성평등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평등한 사회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성평등한 사회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연구주제에 해당된다.¹³⁾

12) WEF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써 136개국 중에서 111위에 위치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을 앞당기는 제도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물론 성격차지수 산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수준과 성평등 수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대한 내용의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림 Ⅱ-5]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한 성평등 수준의 증가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전략-세부과제-구체적인 실행방안

1) 성숙단계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시된 이후 편성되는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성인지예산은 정부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성평등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질적인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가적 성평등 목표, 그리고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략은 제도적 기반 확충,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이다. 구체적인 세부전략과 실행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13) 본 연구는 [그림 Ⅱ-5]의 [그림 A]에 중점을 둔 것이다.

〈표 Ⅱ-4〉 전략 I-세부과제 ①~②-6개 세부과제

전략 I	성숙단계: 성평등 인식제고, 정부 책임성 강화
<p>I. 제도적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양성평등 분야로 독립 ▪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로 첨부 ▪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 포함 ②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조항 보완 ▪ 성인지예산제도 관리기구의 법제화 ▪ 성인지예결산특별법(가칭)을 제정, 관련법을 통합 	
	
<p>세부과제 1.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부문의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전략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립 양성평등 중기계획에 자원배분 전략을 추가하는 것에서 출발 양성평등 부문에 대한 별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전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부문의 중기재정운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성평등화 부문에 대해서도 중기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국가재정법) ➢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단년도 예산주기 하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중장기적 국가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함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중기적으로 수립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자원배분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없는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단년도 사업예산 위주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양성평등 분야 독립: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첫 번째 방안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2개 분야에 흩어져 있는 양성평등 관련 주요 사업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13번째의 새로운 분야(양성평등 분야)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양성평등 관련사업들을 정부 재정의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에 재정운영 상의 확고한 지위를 주고 제도발전을 위한 강한 추진력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임주영 외, 2013a:79). 그러나 이는 사업들을 재배열(rearrange)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분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임주영 외, 2013a:79)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②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로 첨부: 두 번째 방안은 성평등 관련 주요 사업들을 하나로 모은 후 이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자원배분 계획을 명시하지만, 이를 새로운 분야로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임주영 외, 2013a:79) 첨부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과 달리 기존 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주영 외, 2013a:79).

③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 세 번째 방안은 기존의 각 분야를 그대로 운영하되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을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의 체계 안에서 재정운용정책의 기본방향이나 투자방향이 성인지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 혹은 강제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4.08.12.)에 포함되어 있어, 법률이 통과될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성인지예산 결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 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명확한 기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의 제도 순응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또는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훈령에 조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변경 (①안)

구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97.4	105.9	113.5	120.3	127.5	7.0
2. 교육	49.8	50.8	53.2	58.1	62.1	5.7
3. 문화·체육·관광	5.0	5.3	5.7	6.5	7.8	11.7
4. 환경	6.3	6.4	6.3	6.3	6.3	0.1
5. R&D	16.9	17.5	18.3	19.1	19.9	4.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5	15.3	14.6	13.8	13.2	3.9
7. SOC	24.3	23.3	22.0	20.5	19.2	5.7
8. 농림·수산·식품	18.4	18.6	18.6	18.6	18.6	0.3
9. 국방(일반회계)	34.3	35.8	36.9	38.5	40.1	3.9
10. 외교·통일	4.1	4.2	4.2	4.3	4.3	1.2
11. 공공질서·안전	15.0	15.7	16.3	16.9	17.5	3.9
12. 일반·지방행정	55.8	58.7	60.5	64.6	68.1	5.1
13. 여성·성평등	-	-	-	-	-	-

자료: 기획재정부(2013a:49)의 내용을 변경, 수정함

세부과제 2. 성인지예산 관련제도의 법제화 추진

➤ 목표와 추진방향

-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

➤ 구체적인 실천방안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 강화를 위한 조항을 보완
 - 양성평등 중기계획의 수립을 명시
 - 성인지예산서 사전 심의 법제화
 - 성인지결산서 사후 평가 법제화
- 성인지예산제도 관리 기구의 법제화
 - 성인지예·결산심의위원회: 행정부
 - 성인지예산제도 지원기관에 대한 법적 위상 부여
 - 성인지예·결산 자문기구 상설화
- 궁극적으로 성인지예결산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관련법률 일체를 통합
 - 양성평등 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평가
 - 성인지예·결산제도 교육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목표가 수립 외에도 법적인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항에 성인지적 재정운용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접근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4.8.12.)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성인지예·결산제도는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인지적 재정운용에 대한 근거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 ② 성인지예·결산서의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예산 평가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 ③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수행기관의 지정 및 위탁
 -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한 평가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④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신설
 -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49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p> <p>2. ~ 8. (생략)</p> <p>③ ~ ⑩ (생략)</p> <p>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①~⑤(생략)</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p> <p>⑦ ~ ⑨ (생략)</p> <p>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p> <p>2.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목표[성인지(性認知)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한다]</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①~⑤(현행과 같음)</p> <p>⑥----- -----재정사업 및 제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p> <p>1. -----재정사업 및 제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성인지 예산결산심의회) ①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결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p> <p>2.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3. 성인지 결산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5.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p> <p>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①----- -----(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표 II-5〉 전략 II-세부과제 ③~④-4개 세부과제

전략 II	성숙단계: 성평등 인식제고, 정부 책임성 강화
--------------	---------------------------

II. 성인지에·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 ③ 국가 성평등 목표와 계획의 구체화
 - (국가 성평등)중기적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 성인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목표 설정
- ④ 예산요구서 제출단계의 심의·조정 및 성인지결산서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에·결산서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인지에·결산서 평가절차 마련



세부과제 3. 국가 성평등 목표와 계획의 구체화

- 목표와 추진방향
 - 예산수립의 체계화를 통한 부처별 성인지예산의 통합성 제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성인지예산 수립 과정을 통합 중기의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통해 성평등화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추진방향
 - 중기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 전체 부처의 성인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당해 연도 목표의 설정
 - 개별부처 단위의 성평등 목표 간 조화 추구
- 배경
 - (한계와 문제점) 중장기적 시계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추구하는 종합적인 목표와 계획이 부재
현재 부처별로 제시되는 성평등 목표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기적인 목표에 불과하며, 전체 부처의 성인지 예산사업을 총괄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명시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결여된 채, 개별 부처가 단년도 세출사업에 대해서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중장기적 시계 하에서 수립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성평등 목표나 중장기적 계획이 없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움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중기적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립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의 중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인지예산제도 내의 중장기적 목표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부처별 중장기적 성평등 목표 수립에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현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모두 7개의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7개 대과제와 주요 부처들이 중점적으로 달성하고자 계획하는 목표들을 통합하여 전체 성인지예산의 중장기적인 성평등 목표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의 기간과 동조화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성인지예산의 중기 목표를 2017년까지로 한정하여 수립(차기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하여 개별 부처의 대상사업은 사업별로 당해 연도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정·유지해야 한다.

▪ 제4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의 대과제(7개)와 중과제(21개)

대 과 제	중 과 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 돌봄 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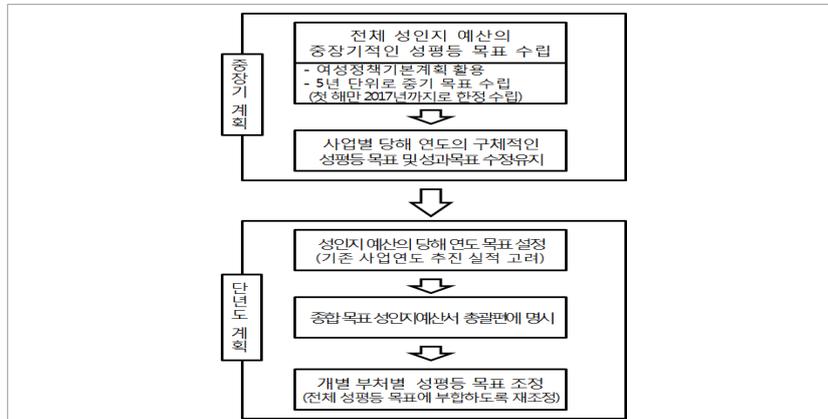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2:32)

▪ 성인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목표 설정

매년 기존 사업들의 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전체 부처의 성인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당해 연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단년도 예산의 목표는 중기 목표의 일부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설정하고, 당해 연도 성인지 예산의 종합적인 목표를 각 연도 성인지예산서의 총괄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별부처 단위의 성평등 목표는 이러한 전체 성평등 목표를 조화롭게 구현하도록 재조정한다.

이때 각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반드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목표일 필요는 없다. 해당 부처의 특색에 맞는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부처 성평등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국가 성평등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있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 중장기 및 단년도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과정



▪ 부처의 성평등 목표(안)

부처	성평등 목표(안)
법무부	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의 편익증진
기획재정부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보호 및 편익 증진
외교통상부	1) 외교·통일분야 다자 협력 우수 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통일부	1) 통일관련 여성 교육 인원 비율 확대 2)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과 이주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국방부	1) 국방분야 여성인력활용 및 활용기반 내실화 2) 군인사 및 교육훈련 정책강화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성인지 교육체계 강화를 통한 군내 양성평등 제고 4) 일가족 조화를 위한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기반 구축
행정자치부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공분야 여성취업 및 승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성평등한 인사정책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 여성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부처	성평등 목표(안)
문화체육 관광부	1) 여성인력활용을 통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콘텐츠산업 육성 2) 문화정책 분야의 성인지적 정책수립·평가 기반 조성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및 동등한 참여
농림수산 식품부	1) 농업분야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대표성 제고 2) 성장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1)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기반 내실화
보건복지부	1) 사회복지영역의 여성전문 인력 육성 2)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자활지원 강화를 통한 여성의 편익 증진 3)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통한 여성의 편익증진
환경부	1) 환경분야의 여성 참여와 역할확대 2) 환경보전 기반육성을 위한 여성환경인의 교육확대, 강화
고용노동부	1) 여성인력 양성 및 경제적 활동지원,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의 성별격차 해소 2) 평등의식과 문화확산 등을 통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생성 및 확대 3) 다양한 직업훈련·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내실화
여성가족부	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2) 각종 폭력예방과 피해자 근절을 통한 여성, 가족의 편익 증진 3)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기반 구축 4)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국토해양부	1) 비전통 직종 관련, 여성의 진출 확대 지원 및 여성 전문인력 육성 2) 교통 인프라 등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의 편익 증진

자료: 조선주 외(2013c:296)

세부과제 4. 예산요구서 제출단계의 심의·조정 및 성인지결산서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목표와 추진방향

- 개별 부처가 제출하는 성인지예산서 제출단계의 심의·조정 및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현재 각 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편성·제출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단계에 심의·조정을 도입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적격성과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통일성을 제고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 성평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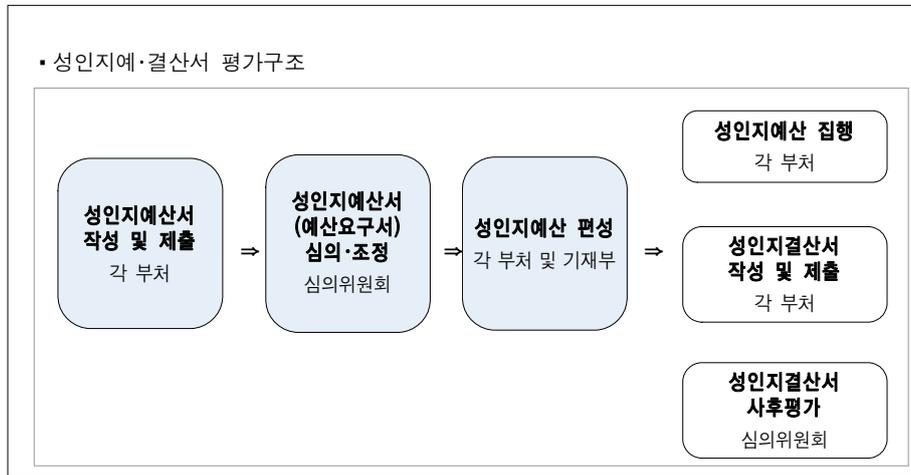
- 현재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스템이나 이를 지원하는 기반이 갖추어 지지 않아 부처별로 제출된 성인지예산 요구서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부처가 제출한 성인지예산 요구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예산 조정을 거친 경우가 전혀 없었음
 이는 성인지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성평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을 부처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발할 유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됨

- 또한 성인지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국회심사의 경우에도 성인지결산서가 의무적인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심사가 소수 의원의 개인적 역량이나 관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집행결과의 점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적극적인 환류시스템 부재
 현재 성인지결산서에서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인지예산서에서 특별히 이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조치나 환류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현재는 성인지예·결산서 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상 성인지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14.8.12)에는 성인지예·결산서의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포함되어 있다(안제8조 제6항).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산출지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인지예·결산서 평가의 경우 등급을 기본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에 추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매우 미흡'을 포함한 4단계로 등급화 할 수 있다. 부처 및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적 책임성 제고 및 예·결산서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목적을 감안하면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국회·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통한 부처 및 사업담당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주영 외, 2013b:125). 또한 우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부처에 경상비 지원 및 사업담당자들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외에 미흡 부처(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예산 편성에 환류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성인지예·결산서 평가절차 마련
 각 부처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위원회(가칭)에서 작성된 예산요구서의 수준 및 질에 대해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전심의를 거쳐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후에는 각 부처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성인지결산서에 대해 성인지예·결산 심의위원회(가칭)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따른다.



〈표 II-6〉 전략 III-세부과제 ⑤~⑥-3개 세부과제

전략 III	성숙단계: 성평등 인식제고, 정부 책임성 강화
<p>III. 전담기구설치와 지원조직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행정부 내 성인지예·결산 운영 전담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전문위원회 신설: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 ⑥ 성인지예·결산제도 지원조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센터 확대 개편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 확대 ▪ 공식화된 상설 자문회의체 구성 	
	
<p>세부과제 5. 행정부 내 성인지예·결산 운영 전담기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내에 성인지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결산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성인지예·결산 심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 ➢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인지예·결산서를 취합하고, 회계적인 부분만을 점검하는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요구서가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의 문화예산과 성인지예산 담당 실무자가 검토 후 사회예산심의관에게 검토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러나 대상사업 확정 및 소관 예산심의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심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실정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가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긴밀하게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상설협의체 구성 성인지 대상사업 확대 등 규모 위주의 평가보다는 제도개선, 운영내실화에 중점 ➢ 구체적인 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크기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는 정부주도형에 해당되며, 작게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체계 중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원 전문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추가되나 그 주체들 간의 역할과 업무가 연계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등의 업무 역할, 권한, 협조 내용, 절차 등을 분명히 하고, 좀 더 면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신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상설협의체는 성인지 대상사업 확대 등 규모 위주의 평가보다는 제도개선,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상설협의체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긴밀하게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되며,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다.

상설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 지침 개정 협의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등 검토
- 성인지예산서 정부안 최종 점검
- 기타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협의 등

▪ 상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안

상설협의체의 참여대상은 기획재정부의 사회예산심의관이 의장을 담당하고, 재정관리국장(결산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국장이 의장직을 수행),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통계청 통계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상설협의체의 개최는 매년 최소 3회 정기 개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3월에는 성인지예·결산 지침 개정협의를 위해 개최되며, 5월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9월에는 성인지예산서 정부안 최종점검을 위해 상설협의체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다.

▪ 운영실적 보고체계의 필요성

다만, 현재의 상설협의체는 운영실적 및 논의내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설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협의체의 운영실적 혹은 논의 내용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칭)로의 확대개편 필요

상설협의체의 신설은 성인지예산제도의 관련기관이 모여 제도 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현재의 상설협의체의 성격은 업무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협의체가 실제로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를 시행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성인지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칭)로 개편하고 예산의 심의와 평가 체계 내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부과제 6. 성인지예·결산제도 지원조직 확충

➤ 목표와 추진방향

-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확충

➤ 배경

-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주관 부처의 인적·물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임
 -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예·결산과 관련이 있는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총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담당자는 1명
 - 기획재정부에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과는 예산실의 문화예산과로 1명이 여성가족부와 성인지예산을 담당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연구원 내에 설치됐으며, 크게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팀, 대내·외 협력팀, 분석·평가 및 중장기연구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며, 대내·외 협력팀에서 성인지예산(GB) 포럼 운영
 - 2007년 제1차 성인지예산(GB) 포럼을 시작으로 2007년 5차례, 2008년 6차례, 2009년 6차례, 2010년 5차례, 2011년 4차례, 2012년 5차례, 2013년 2차례 실시
 - 이 외에 성인지예산 국제 심포지움, 공개토론회, 연구성과 발표회 등을 실시함
- 국회 내 성인지예산안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은 저조하며, 일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논의가 잇기는 하나(임주영 외, 2013b:125) 제도 전반 및 주요 주관 부처의 역할에 관한 언급이 대부분
 - 본 회의의 경우 전체 204개의 회의록 중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개로 2.0%에 불과함
 -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 2,213개 중 3.2%에 해당하는 70개의 회의에서만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언급이 이루어짐
- 국회에서 성인지예산서 심의주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분석지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처에서 담당하고 있음¹⁴⁾
 -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그렇지 못함
 - 현재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처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에 대한 지원 인력 및 조직 등 구성 인프라가 미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정기적인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성인지예산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석지원 기관에 대한 숙련된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인지예산센터의 개편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를 개편하여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센터의 인력 및 예산구조는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수준과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연구파트(연구, 설문, 협의 담당), 지원파트(컨설팅, 교육, 홍보)로 구분하여 기획과 실무적 지원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처럼 법률에서 지원기관,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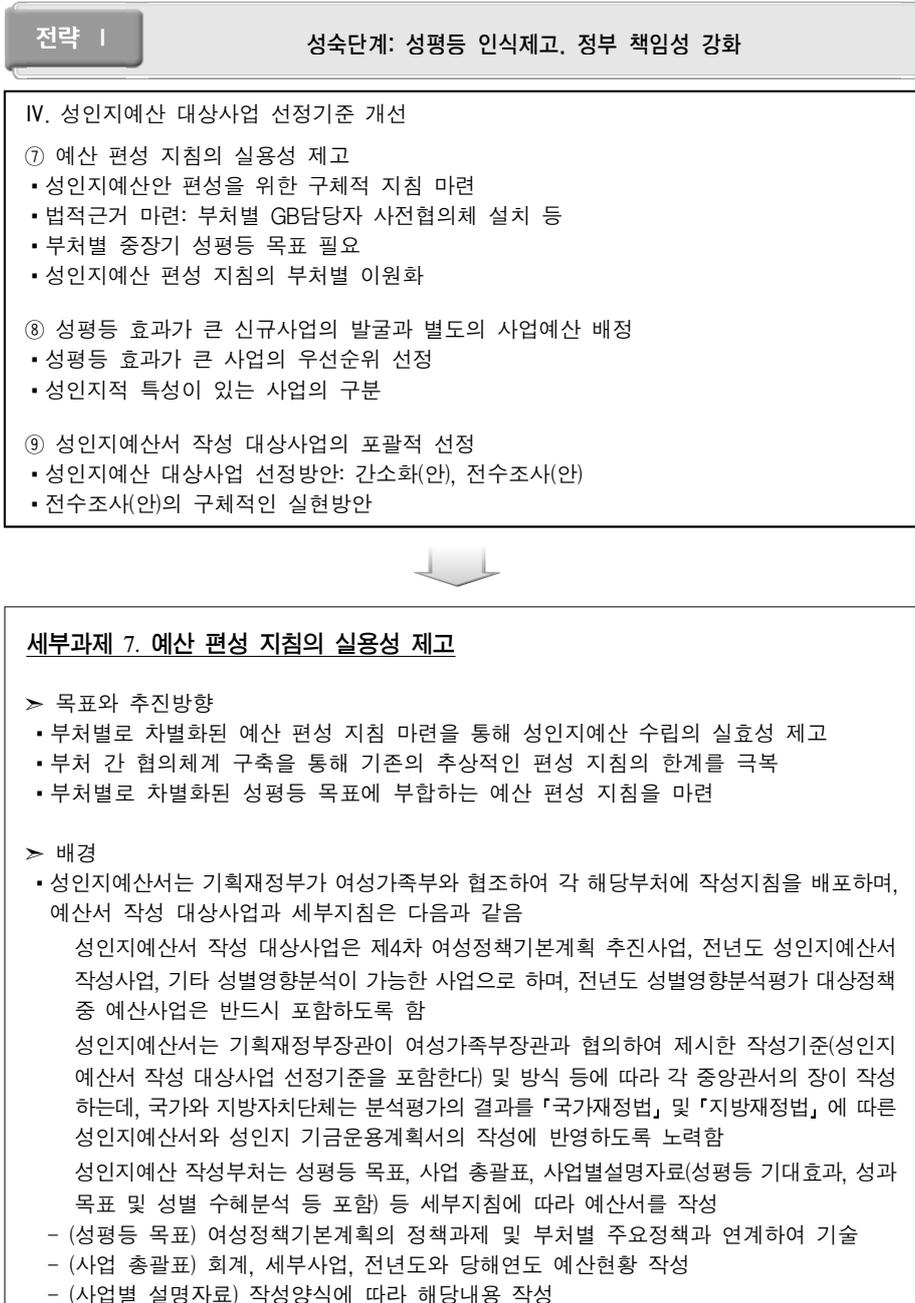
참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¹⁵⁾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의 분석평가 책임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또한 각 기관은 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등을 위해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 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처에 성인지예·결산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정책처의 인력으로는 모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원기관에 성인지예·결산 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식화된 상설 자문회의체 구성
성인지예·결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화된 상설 자문회의체의 구성도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공식 기구는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성인지예산포럼(Gender Budgeting Foru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가 중심의 상설 자문기구로 발전시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국민 소통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4)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한 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이지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은 모두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15)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115-116

〈표 II-7〉 전략 IV-세부과제 ⑦~⑨-8개 세부과제



6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 예산과정과 성인지예산제도

예산과정	담당기관	예산 업무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 편성 (n-1년)	기획재정부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기본지침 작성·통보	거시적/중기적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성인지 예산작성지침
		·정책·사업분석 및 세입예측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성인지예산서 작성
예산심의 (n-1년)	국회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예산 심의
예산집행 (n년)	각 부처	·예산 배정·자금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회계처리	성별영향 모니터링 성별분리통계 생산
결산 및 회계검사 (n+1년)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회	·회계(결산)검사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산 심의	성인지적 감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성과평가 성인지결산서 심의

자료: 임주영 외(2013a:37) 재구성

▪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과 한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 작업은 일반 예산제도 과정의 예산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과정의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현재(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기준)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은 대상사업으로 1)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2)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서 작성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추상적인 성격으로 인해 대상사업의 포괄범위가 회계연도별로, 그리고 부처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인지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예산 편성 지침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성인지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임주영(2013a:27-29) 참조)를 살펴보면, 면접자들은 대상사업의 적절, 부적절의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을 초래하여 사업 선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각 부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편성지침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적근거 마련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성인지예산안 편성지침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여, 예산 편성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협의체계를 통해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부처별 성평등 목표의 차이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원화된 선정기준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처별 중장기 성평등 목표 필요
 성평등의 개념은 가치적인 개념으로 논쟁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대상사업이더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여성인력문제, 권익문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관해 사업담당자, 전문가 등에 따라 그 의견이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임주영 외, 2013a:75-76). 따라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성평등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면, 부처 간 사전 협의기구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선정기준은 이후 부처 단위 개별 사업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과평가 단계에서도 효과적인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의 부처별 이원화
 성인지예산이 일부 부처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부처를 크게 성인지예산 관련 핵심 부처군(여가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과 나머지 일반 부처군으로 구분하고, 핵심 부처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에서 포괄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타 부처에 비해 상세한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침의 성격에 따라 성인지 작성 교육과정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과제 8. 성평등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의 발굴과 별도의 사업예산 배정

- 목표와 추진방향
 - 성평등화 효과가 높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부처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유인을 극대화
- 배경
 - 현행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대부분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 중인 사업 중 성평등 효과가 있거나 성인지적 기능이 있는 사업을 회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의 성격이 강함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독립적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부처가 정한 사업목표에 따라 선정된 재정사업 예산 편성의 부수적인 요소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인식이나 관행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효과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평등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성평등화 효과가 큰 '별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여기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화 효과가 큰 신규 사업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일정 규모의 예산을 이들 사업들 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독립적인 성인지 대상사업의 발굴을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로 수립된 성평등 목표와 편성지침에 충실한 독립적인 신규 사업에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의 평가는 기존 예산의 반복이 아닌 새롭게 편성된 성인지예산 사업의 여부를 중시하고, 성인지예산서 양식에 신규 사업 여부와 더불어 성평등 발전 중기계획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시하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 성인지적 특성이 있는 사업의 구분
기 편성된 부처별 예산 중 성인지적 특성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과 독립적인 성평등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차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대상사업과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추진된 사업에 의해 신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항목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개선 사업,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중소기업청(창업기업자금(옹자) 등)
 - 보건복지부(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등)
 - 고용노동부(내일희망일터 혁신지원사업 등)
 - 여성가족부(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등)
- ▶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추진된 사업
 - 안전행정부(‘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운영 및 홍보’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육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 전통발효 식품육성)
 - 해양수산부(마리나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산림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
 - 중소기업청(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R&D))
 - 보건복지부(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 등)
 - 고용노동부(장년취업인턴제 등)
 - 국토교통부(화도-양평 고속도로건설 등)
 - 여성가족부(청소년시설안전지원사업 등)

세부과제 9.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포괄적 선정

- > 목표와 추진방향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포괄적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사업의 규모의 실질적인 증감 추이를 평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포괄적인 사업 선정 리스트를 작성
성인지예산 사업의 전체 규모와 부처별 분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
- > 배경
 - 성인지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대상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발생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성과목표가 지수화되기 쉬운 사업들이 양성평등의
 제고와 무관함에도 대상사업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
 성인직적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대상사업 선정이
 아직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개별부처의 협조 하에 포괄적인 대상사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구체적인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상사업의 선정은 부처의 개별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여성가족부와 전문 협조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인력의 제한, 기간의 촉박함으로 일선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사업선정 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대상사업 선정 기관인 여성가족부나 이를 지원하는 여성정책연구원의 인력 보충이 필요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대상사업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기관 사업에 93% 이상 편중되어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의 성인지예산 규모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방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소화(안)과 전수조사
 사(안)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① 간소화(안)

간소화(안)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정책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정책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대상사업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며, 단기간에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과제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이처럼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사업이 의도
 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성별 수혜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임주영 외, 2013a:80).

② 전수조사(안)

전수조사(안)은 정부의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
 안이다. 이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성인지예산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살펴보아
 야 할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단년도에 끝내기 어려우므로 3년에 걸쳐 1/3씩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신규 사업만을 대상으로 개별 사
 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 전수조사(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안의 고려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전수조사 안이 제도도입의 목적과 더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에 대해 개별 사업이 지닌 성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임주영 외, 2013b:115). 임주영 외(2013b:116)의 연구에서도 간소화 안보다 전수조사 안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전수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분야)로 구분하였다.

- ① 편성 지침에서 지정하는 사업
- ② ‘여성’이라는 명칭이 있거나, 여성 명칭이 없어도 사실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③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이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과 밀접한 분야
- ④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전수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선 정 기 준
내용	① 편성 지침에서 지정하는 사업 ▪ 편성 지침의 사업 참조
	② ‘여성’이라는 명칭이 있거나, 여성 명칭이 없어도 사실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세부사업에 여성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 →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과학자, 여성사업가, 산모지원 등 ▪ 세부사업이 사실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등과 관련된 지출
	③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이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과 밀접한 분야 → 보육, 신생아 지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업
	④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예산 편성 시 수혜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사업 ▪ 예산 편성 시 수혜자의 성별을 알 수 없어도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 성별 수혜를 알 수 있는 사업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탁한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성별 수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예: 위탁 교육·훈련) ▪ 예시 → 취업지원, 일자리 사업 → 교육: 교육(전문인력양성) 및 장학사업(초중고대) → 생활비 보조: 생계 보조 성격 → 의료·건강 → 금융지원

자료: 임주영 외(2013b:116)

2) 고도화단계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분석을 넘어서 예산과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를 성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제이다. 현재까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보다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에 제한되어 있었다.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마지막 단계인 고도화 단계에서는 성숙단계에서 구축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용되면서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의 변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도화단계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제도의 운용에 따른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전략은 인적기반 확대,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인 세부전략과 실행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8〉 전략 V-세부과제 ⑩~⑪-5개 실행과제

전략 V 고도화단계: 예산과 정책의 변화, 정부의 책임성 강화, 성평등 인식제고

- V. 인적 기반 확대
- ⑩ 성인지예산 담당 전문인력의 확대
 -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업무기간 지속
 - 국회의정연수원 정규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과정 편성
 -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필요
 - ⑪ 시민참여 제고
 - 시민들의 성인지예산 교육 활성화
 - 민관 협력 활성화



세부과제 10. 성인지예산 담당 전문 인력의 확대

> 목표와 추진방향

- 성인지예산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
 - 전담 인력의 조직화
 - 책임성 강화
-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담당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의 다각화
 - 고위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 현황과 문제

- 성인지예·결산제도 관련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로 매년 1월에는 성인지결산교육, 5월에는 성인지예산교육을 운영¹⁶⁾
 -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방향’,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실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는 성인지결산 교육은 115명, 성인지예산 교육은 122명 참가¹⁷⁾
 - 2013년도에도 교육 과정 등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성인지결산교육 131명, 성인지예산 교육은 98명이 참가
- 성인지예산제도의 교육 대상이 예산담당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고위직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직급별 분포를 보면, 6~7급이 2,606명(74.0%), 8~9급이 561명(15.9%), 4~5급이 319명(9.1%) 순으로 나타남
 -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조직 내 여건 형성 및 담당자 업무 추진이 어려움

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69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 공무원단 교육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교육시기 및 인원

구분	시기	이수인원	
		2012년	2013년
성인지결산교육	1월	115명	131명
성인지예산교육	5월	122명	98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리자 교육	11월	18명	(미정)
합계		255명	229명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3)

> 구체적인 실천방안

현재 성인지예·결산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및 부처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다양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인지예·결산을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 성인지예산 담당자의 업무기간 지속

공무원의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사정책으로, 여성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국회의정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에 성인지정책 과정 편성

국회내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심의가 미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자신의 관심 부족과 국회의 체계적인 지원 미비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의가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예산분배라는 일차원적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보좌관과 사무처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제도 연구회'라는 모임을 창립·운영하였으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에 성인지정책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필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성인지 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라는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전면 실시된다. 이러한 교육은 고위공직자들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교과목이 차지하는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전체 교육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정규교과목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세부과제 11. 시민참여 제고

➤ 목표와 추진방향

- 국민적 인식제고와 지지 확대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성인지예산제도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배경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미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만연
 - 성인지예산서는 단지 일부 주관부처 및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및 홍보
 -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소개 정도를 일반인 대상으로 전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일반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교육을 하거나 국방부와 협의하여 예비군 훈련시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소개 책자, 애니메이션 등 특별활동이나 기타 비교과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교육 및 홍보는 시민들의 제도참여를 위한 사전 단계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반영하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도에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인식하는 것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 시민들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활성화 되면 민간의 제도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고, 이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다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시민참여를 위한 방안
 - 시민들이 성인지예산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루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성인지예산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하나의 세션으로 마련하여, 공청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또한 시민단체와 NGO 등이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의 집행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6) 임주영 외(2013a),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p.50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진흥원의 내부자료(작성일자: 2013년 7월 8일~11일) 참고

〈표 II-9〉 전략 VI-세부과제 ⑫~⑬-6개 실행과제

전략 VI	고도화단계: 예산과 정책의 변화, 정부의 책임성 강화, 성평등 인식제고
<p>VI.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p> <p>⑫ 성인지예산 회계정보의 DB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시스템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회계정보 취합 기능 강화 <p>⑬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충실성 제고 ▪ 성인지결산의 환류 기능 강화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 성인지결산 검사 내실화 및 인센티브 지원 ▪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성인지예산제도에 활용 가능 	



<p>세부과제 12. 성인지예산 회계정보의 DB화</p> <p>➢ 목표와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성별분리통계 생산(성인지통계구축)과 더불어 성인지 예산사업의 회계정보 구축 예산집행 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 성인지예산 회계정보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 <p>➢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과정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지출 내역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축적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일반 예산의 경우 각 부처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 집행 내역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들에 의해서 상시로 점검 <p>➢ 구체적인 실천방안</p> <p>성인지예산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DB로 구축·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회계시스템 내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들에 일정한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상황과 내역에 관한 회계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 한다.</p> <p>현재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내에서 성인지 대상사업들에 사전에 정해진 코드를 부여하여 지출정보를 신속히 재분류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임주영 외, 2013a:82). 이때 단순한 지출내역만이 아니라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별수혜정보를 예산집행 시점에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 점검·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임주영 외, 2013a:82). 예를 들어 국가장학사업 지원의 경우 전체 장학금지원액 집행 내역만이 아니라 이 중 여학생이 실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산의 집행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임주영 외, 2013a:82) 대상사업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할 것이다.</p>
--

세부과제 13.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목표와 추진방향

- 성인지예산 사업의 결산심의의 충실화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전문가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고도화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인지결산서 환류시스템 정착

➤ 배경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사업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일반적인 재정사업의 경우 부처의 자율평가제도에 의해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러한 자율평가 결과가 확인·점검되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됨
 -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초로 성인지대상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하고 있으나 평가대상과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구체적인 실천방안

-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충실성 제고
 - 성인지결산서 작성 내용의 충실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성인지결산서에 포함된 정확한 성별 구분통계가 내실있는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사업의 지속적인 성별 구분통계 구축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의 산출을 측정하는 일차적인 성과목표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그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임주영 외, 2013b:96).
- 성인지결산의 환류기능 강화
 - 성인지결산 및 환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산서를 통해 작성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의 격차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차기년도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종전의 성별 격차가 완화 되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전반과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평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성인지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방식 개선을 가능하게 해준다(하연섭, 2010:277). 성인지예산 역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이와 함께 성인지결산심사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성인지결산 검사 내실화 및 인센티브 지원
 - 성인지예·결산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검사를 내실화하고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임

주영 외, 2013a:84). OECD(2007:47-48; 하연섭, 2010:281-284)에 따르면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예산운용의 신속성 부여', '평가결과의 공개'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은 긍정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결과의 공개라고 할 수 있다(임주영 외, 2013a:84).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임주영 외, 2013a:84).

-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성인지예산제도에 활용 가능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제도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것도 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예산증액보다는 부처에 대한 경상비 지원 및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 사업 또는 부처에게 차년도 평가면제, 평가결과 '보통'이상의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 현재의 성과관리체계에 '양성평등' 항목(성인지예·결산서 평가 항목)을 넣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임주영 외, 2013a:85).

3. 소결

본 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 로드맵 수립의 타당성을 도출하고 단계별 목표와 전략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중장기 계획의 연계가능성, 발전단계구분과 과거 발전계획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은 발전단계별 목표-전략-세부과제-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전체 계획기간을 중기와 장기로 나누어, 해당기간에 필요한 발전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숙단계(2014~2018)로 정의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정부책임성 강화의 목표를 위해 4개의 전략과 9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성숙단계의 4대 전략은 제도적 기반확충, 성인지예·결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으로 설정하였다. 장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고도화단계(2019~)로 정의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정부책임성 강화 및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목표를 위해 2개의 전략과 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고도화단계의 2대 전략은 인적 기반 확대,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 로드맵에서 제시한 13개의 세부과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로드맵은 이러한 정책과제를 제도의 시행순서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조립한 것에 해당된다.

현재 제시된 발전단계별 실천 세부과제들은 과거 초기의 여러 미완의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제기된 과제들도 있어 제도를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77
2.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분석	84
3. 소결	117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이하 공무원 의견조사로 표기함)를 2011년부터 시행해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구조와 내용의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며, 성인지예산제도 또한 4년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컨설팅(심의지원) 강화 및 매뉴얼 제작에 풍부한 자원 배치, 작성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로 구성된 주요지표 추이 분석 결과, 작성사업 통보절차, 컨설팅, 양식, 작성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으며,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예산 편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는 제도 시행 2~4년차에 해당되는 시기에 실시된 조사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구체적인 성인지예·결산서 양식과 지침, 매뉴얼, 컨설팅 등에 대한 작성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둘째,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 작성담당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18) [부록 3] 2011~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참조

〈표 Ⅲ-1〉 2011-2013 공무원 의견조사 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모집단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	·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
표본크기	371개 사업	393개 사업	381개 사업
표본추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리스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리스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리스트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11년8월4일~9월2일	2012년7월12일~8월10일	2013년6월24일~7월26일

자료: 이명재 외(2013: 9)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첫 번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사에서는 각 조사 시점에서 지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결과를 사업단위의 패널로 정리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는 개인을 단위로 한 조사가 아니라 사업을 단위로 설계된 조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표의 변화는 성인지예산제도 작성담당자의 인식의 변화라기보다는 각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횟수 증가에 따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완성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기존 조사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작성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성방식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충분히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인지예산서를 다섯 차례나 제출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의 목적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성담당자의 인지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5항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감안하면, 성인지예산제도

의 보다 직접적인 성과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담당자인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작성담당자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물론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으로,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지표를 비롯한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지표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지표로 보기에 아직 제도 시행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2014년에 실시될 공무원 조사는 기존의 공무원 조사와는 달리,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진단하여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으로 인해 작성 담당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기회비용 등 비용의 측정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작성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와 비용(시간당 임금 단위로 추정한 작성 비용)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 2014년 조사 설계

2014년 공무원 의견조사는 기존조사와는 달리 작성담당자 개인을 단위로 하여 실시된다. 조사의 대상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적어도 한번 이상 작성해 본적이 있는 공무원이 된다. 2014년에 선정된 표본은 향후 패널자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선정될 예정이다.¹⁹⁾ 따라서 2015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조사대상에게 동일한 구조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패널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대

19) 패널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2011년~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대상자 1,218명, 2014년 조사 당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435명, 총 1,653명을 선정, 패널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한 513명이 패널조사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상자 유지관리도 올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이 추가되므로, 추가 사업의 작성담당 공무원도 조사대상으로 추가된다.

2014년 공무원 의견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²⁰⁾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비용, 개선과제 그리고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다.

1)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비용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작성담당자들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8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추정을 위한 항목

문항분류	문항번호	하위 문항
인식의 변화	문1.1/문2.1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문1.2/문2.2	주요변수로써 성별 고려
	문1.3/문2.3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
	문1.4/문2.4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 인식
행동의 변화	문4.1/문5.1 문12.1/문13.1	양성평등을 주제로 대화
	문4.2/문5.2 문12.2/문13.2	성인지예·결산제도를 주제로 대화
	문4.3/문5.3 문12.3/문13.3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 파악
예·결산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문6/문14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 고려
	문7/문15	일반사업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 고려
	문8/문16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 고려
	문9/문17	일반사업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 고려
	문10/문18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평가 시 양성평등 고려
	문11/문19	일반사업 사업평가 시 양성평등 고려

20) [부록 4] 설문지 참조

2014년 조사에서는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 추정을 위한 정보도 함께 조사될 예정이다. 추정을 위한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추정을 위한 방법론은 Haab and McConnell(2002, p.36~49, p.97)을 참고하였다.

〈표 Ⅲ-3〉 성인지예산제도의 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문항분류	문항번호	하위 문항
제도의 필요성 y_i	문20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0 혹은 1)
작성담당자의 작성 비용 t_i ¹⁾	배문6	1일 평균 근로시간
	배문12	월평균 근로소득(세후 소득) m_i
	문24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할애 할 용의가 있는 업무시간
작성담당자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x_i	배문1~8	작성담당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상태
	배문9/배문10/배문11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상태
	배문13/배문14	가구의 월평균 수입 및 지출
	배문15/배문16/배문17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주: 1) 작성담당자의 작성 비용 t_i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할애할 용의가 있는 업무시간 × 시간당 임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경우와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작성할 경우 : $x_i' \beta_1 + \delta_1 \ln(m_i - t_i) + u_{1i}$
- 작성하지 않을 경우 : $x_i' \beta_0 + \delta_0 \ln m_i + u_{0i}$

성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표본의 두 간접효용함수의 차이는 0보다 클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 = 1 \text{ if } x_i' \beta + \delta_1 \ln(m_i - t_i) - \delta_0 \ln m_i + u_i > 0$$

where $\beta \equiv \beta_1 - \beta_0$, $u_i \equiv u_{1i} - u_{0i}$, $u \sim N(0, \sigma^2)$

위의 식을 프로빗(Probit)으로 추정한 후($\frac{\beta}{\sigma}, \frac{\delta_1}{\sigma}, \frac{\delta_0}{\sigma}$), 두 간접효용함수의 차이를 0으로 하는 t_i 를 구하면 이 값이 작성담당자들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화폐단위 비용 혹은 WTP(willingness to pay) : C_i 가 된다. C_i 가 0보다 작을 경우 C_i 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되며, 0보다 클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WTP로 해석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i' \beta + \delta_1 \ln(m_i - C_i) - \delta_0 \ln m_i + u_i &= 0 \\ \Rightarrow C_i &= m_i - \exp\left(\frac{\delta_0/\sigma}{\delta_1/\sigma} \ln m_i - x_i' \frac{\beta/\sigma}{\delta_1/\sigma} - \frac{u_i/\sigma}{\delta_1/\sigma}\right) \end{aligned}$$

이 식에서 잔차항(u_i)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E(w|x, m)$, 즉 작성담당자의 특성과 월평균 근로소득 별 C_i 를 구하면 된다.

$$\begin{aligned} E(C|x, m) &= m - \exp\left(\frac{\delta_0/\sigma}{\delta_1/\sigma} \ln m - x' \frac{\beta/\sigma}{\delta_1/\sigma}\right) \cdot E\left\{\exp\left(-\frac{u/\sigma}{\delta_1/\sigma}\right)\right\} \\ &= m - \exp\left(\frac{\delta_0/\sigma}{\delta_1/\sigma} \ln m - x' \frac{\beta/\sigma}{\delta_1/\sigma} + \frac{1}{2} \left(\frac{\sigma}{\delta_1}\right)^2\right) \\ &\quad - \frac{u/\sigma}{\delta_1/\sigma} \sim N\left\{0, \left(\frac{\sigma}{\delta_1}\right)^2\right\} \end{aligned}$$

2) 성인지에·결산제도의 개선과제

2014년 조사는 이제까지 제안되어 온 성인지에·결산제도의 개선과제를 8점 척도로 질문함으로써, 작성담당자가 생각하는 각 개선과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선과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4〉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문항번호	문항
문22-1	1) 작성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문22-2	2) 소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예: 우수 작성기관에 대한 포상)
문22-3	3) 작성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예: 인사고과에 반영, 작성수당 지급 등)
문22-4	4) 작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예: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문22-5	5) 작성결과를 익년 예산편성에 반영(예: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의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문22-6	6) 보다 광범위한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문22-7	7)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의지
문22-8	8) 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
문22-9	9) 예산편성과정에 여성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문22-10	10)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항목으로 추가

2.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분석

가.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513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지예·결산서를 1회 이상 작성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현황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 513명 중 남성이 336명(65.5%), 여성은 177명(34.5%)이고, 20대 34명(6.6%), 30대 217명(42.3%), 40대 208명(40.5%), 50대 54명(10.5%)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이하 졸업한 경우가 4명(0.8%) 대학교 졸업 375명(73.1%), 대학원이상 졸업 134명(26.1%)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대부분(9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구성 형태로 유배우자는 368명(71.7%), 무배우자는 145명(28.3%)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189명(36.8%)으로 유배우자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44명(8.6%)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324명(63.2%)으로 자녀 1명인 경우가 84명(16.4%), 자녀 2명인 경우 224명(43.7%),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경우는 16명(3.1%)로 나타났다.

직무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는 130명(25.3%)이고, 없는 경우는 383명(74.7%)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는 153명(29.8%), 없는 경우는 360명(70.2%)로 나타났다.

현재 실무자에 해당하는 6급 이하는 336명(65.5%)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5급 이상 177명(3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 실무자 중심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합 계	513	100.0
▪ 성별		
남자	336	65.5
여자	177	34.5
▪ 연령		
19세-29세	34	6.6
30세-39세	217	42.3
40세-49세	208	40.5
50세-59세	54	10.5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0.8
대학교 졸업	375	73.1
대학원 졸업 이상	134	26.1
▪ 혼인상태		
유배우	368	71.7
무배우 (미혼/별거/이혼/사별)	145	28.3
▪ 자녀수		
없음	189	36.8
1명	84	16.4
2명	224	43.7
3명 이상	16	3.1
▪ 여성정책 관련업무경험		
있음	130	25.3
없음	383	74.7
▪ 성별영향평가수행경험		
있음	153	29.8
없음	360	70.2
▪ 현재직급		
관리자급<5급이상>	177	34.5
실무자급<6급이하>	336	65.5

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현황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 전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횟수를 살펴보면, 성인지예산서를 1회 작성한 담당자가 216명(4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작성 113명(22.0%), 3회 이상 94명(18.3%),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은 없고 성인지결산서만 작성한 담당자는 90명(1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지결산서 작성 횟수를 살펴보면, 성인지결산서를 1회 작성한 담당자는 202명(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2회 작성 96명(18.7%), 3회 작성 88명(17.2%),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고 성인지예산서만 작성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는 127명(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합 계	513	100.0
▪ 성인지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90	17.5
1회	216	42.1
2회	113	22.0
3회 이상	94	18.3
▪ 성인지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127	24.8
1회	202	39.4
2회	96	18.7
3회 이상	88	17.2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하	309	60.2
3~4회	119	23.2
5~6회	52	10.1
7회 이상	33	6.4

나.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²¹⁾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는 8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여기서는 결과분석을 위하여 , , 을 ‘그렇지 않다’, , 를 ‘보통이다’, , 을 ‘그렇다’로 재분류하였다.

1) 인식의 변화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는가” 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41.3%, 작성 이후 59.3%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경우가 1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38.7%, 작성 이후 61.0% 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함으로써 22.3%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46.3%, 작성 이후 55.9%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평소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여성보다 적은 남성의 경우에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작성담당자(이전: 44.4%, 이후: 54.5%) 보다 자녀가 있는 작성 담당자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 1명인 경우(이전: 44.0%, 이후: 60.7%) 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이전: 37.9%, 이후: 62.5%)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 긍정적 응답이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응답결과를 조정하였다.

〈표 Ⅲ-7〉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양성 평등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 있는가?	합계		이전	513	34.7	24.0	41.3	4.67
			이후	513	16.4	24.4	59.3	5.52
	성별	남자	이전	336	35.7	25.6	38.7	4.56
			이후	336	15.5	23.5	61.0	5.58
		여자	이전	177	32.8	20.9	46.3	4.89
			이후	177	18.1	26.0	55.9	5.40
	자녀수	없음	이전	189	33.3	22.2	44.4	4.79
			이후	189	19.0	26.5	54.5	5.25
		1명	이전	84	38.1	17.9	44.0	4.71
			이후	84	16.7	22.6	60.7	5.62
		2명 이상	이전	240	34.6	27.5	37.9	4.57
			이후	240	14.2	23.3	62.5	5.70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30	23.1	15.4	61.5	5.55
			이후	130	14.6	23.8	61.5	5.72
		없음	이전	383	38.6	26.9	34.5	4.38
			이후	383	17.0	24.5	58.5	5.45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0	28.9	28.9	42.2	4.80
			이후	90	21.1	21.1	57.8	5.41
		1회	이전	216	32.4	27.3	40.3	4.74
			이후	216	14.8	24.5	60.6	5.52
		2회	이전	113	36.3	15.9	47.8	4.77
			이후	113	16.8	27.4	55.8	5.46
		3회 이상	이전	94	43.6	21.3	35.1	4.30
			이후	94	14.9	23.4	61.7	5.69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127	37.0	22.0	40.9	4.64
			이후	127	19.7	21.3	59.1	5.39
		1회	이전	202	31.2	25.2	43.6	4.85
			이후	202	15.3	23.8	60.9	5.54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89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전	96	33.3	22.9	43.8	4.67	
		이후	96	16.7	29.2	54.2	5.40	
	3회 이상	이전	88	40.9	25.0	34.1	4.33	
		이후	88	13.6	25.0	61.4	5.78	
	2회 이하	이전	309	31.7	25.9	42.4	4.79	
		이후	309	18.1	21.4	60.5	5.47	
	3~4회	이전	119	35.3	21.8	42.9	4.62	
		이후	119	12.6	33.6	53.8	5.52	
	5회 이상	이전	85	44.7	20.0	35.3	4.34	
		이후	85	15.3	22.4	62.4	5.71	

다음으로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변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작성 이후 전체 응답자의 58.7%는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작성 이전 21.4%보다 3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남성은 작성 이전 19.0%, 작성 이후 60.4%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함으로써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41.4%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26.0%, 작성 이후 55.4%로 29.4%p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38.5%, 작성 이후 65.4%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함으로써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26.9%p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후 56.4%로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낮았지만, 작성 이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40.7%p로 더 높았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경험이 1회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2.2%, 작성 이후 58.3%로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36.1%였으며, 작성경험이 2회인 작성 담당자의 경우 39.8%(이전:22.1%, 이후:61.9%), 3회 이상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44.7%(이전:19.1%, 이후: 63.8%)로

나타났다.

성인지결산서 작성 경험이 1회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이전 23.3%, 작성이후 56.9%로 성별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33.6%였으며, 작성경험이 2회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41.7%(이전:15.6%, 이후:57.3%), 3회 이상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42.1%(이전:19.3%, 이후: 61.4%)로 나타났다.

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가 증가할수록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예산 제도에 성별이 주요 변수 라고 생각 하는가?	합계		이전	513	55.2	23.4	21.4	3.71
			이후	513	16.0	25.3	58.7	5.49
	성별	남자	이전	336	55.4	25.6	19.0	3.64
			이후	336	14.9	24.7	60.4	5.57
		여자	이전	177	54.8	19.2	26.0	3.84
			이후	177	18.1	26.6	55.4	5.36
	자녀수	없음	이전	189	52.9	21.2	25.9	3.90
			이후	189	15.9	30.2	54.0	5.32
		1명	이전	84	52.4	25.0	22.6	3.63
			이후	84	16.7	20.2	63.1	5.61
		2명 이상	이전	240	57.9	24.6	17.5	3.58
			이후	240	15.8	23.3	60.8	5.59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30	41.5	20.0	38.5	4.52
			이후	130	9.2	25.4	65.4	5.93
		없음	이전	383	59.8	24.5	15.7	3.44
			이후	383	18.3	25.3	56.4	5.34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0	53.3	25.6	21.1	3.87
			이후	90	15.6	34.4	50.0	5.33
		1회	이전	216	51.9	25.9	22.2	3.79
			이후	216	17.6	24.1	58.3	5.41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91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2회	이전	113	58.4	19.5	22.1	3.59
			이후	113	15.9	22.1	61.9	5.58
		3회 이상	이전	94	60.6	20.2	19.1	3.51
			이후	94	12.8	23.4	63.8	5.73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127	55.1	20.5	24.4	3.70
			이후	127	19.7	19.7	60.6	5.40
		1회	이전	202	53.0	23.8	23.3	3.87
			이후	202	16.8	26.2	56.9	5.45
		2회	이전	96	56.3	28.1	15.6	3.51
			이후	96	13.5	29.2	57.3	5.46
		3회 이상	이전	88	59.1	21.6	19.3	3.57
			이후	88	11.4	27.3	61.4	5.77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하	이전	309	52.1	24.3	23.6	3.83
			이후	309	18.4	25.2	56.3	5.37
3~4회		이전	119	59.7	24.4	16.0	3.47	
		이후	119	12.6	26.1	61.3	5.62	
5회 이상		이전	85	60.0	18.8	21.2	3.62	
		이후	85	11.8	24.7	63.5	5.76	

“작성이후 혹은 작성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응답자의 67.6%는 작성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작성 이전 14.4%보다 5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7.7%, 작성 이후 71.5%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우가 43.8%p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후 66.3%로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낮았지만, 작성 이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56.4%p로 더 높았다.

〈표 Ⅲ-9〉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작성 이후 혹은 작성 과정 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게 되었 는가?	합계		이전	513	68.6	17.0	14.4	3.10
			이후	513	9.9	22.4	67.6	5.85
	성별	남자	이전	336	67.9	18.8	13.4	3.15
			이후	336	8.9	21.7	69.3	5.91
		여자	이전	177	70.1	13.6	16.4	3.02
			이후	177	11.9	23.7	64.4	5.75
	자녀수	없음	이전	189	72.0	14.3	13.8	3.01
			이후	189	11.1	25.4	63.5	5.67
		1명	이전	84	65.5	15.5	19.0	3.21
			이후	84	10.7	21.4	67.9	5.90
		2명 이상	이전	240	67.1	19.6	13.3	3.13
			이후	240	8.8	20.4	70.8	5.98
	여성정책관련 업무 경험	있음	이전	130	59.2	13.1	27.7	3.75
			이후	130	8.5	20.0	71.5	6.07
		없음	이전	383	71.8	18.3	9.9	2.88
			이후	383	10.4	23.2	66.3	5.78
	작성경험없음	작성경험없음	이전	90	73.3	16.7	10.0	2.96
			이후	90	10.0	28.9	61.1	5.74
		1회	이전	216	65.3	17.6	17.1	3.22
			이후	216	9.7	20.8	69.4	5.87
		2회	이전	113	69.9	15.0	15.0	3.06
			이후	113	12.4	20.4	67.3	5.77
		3회 이상	이전	94	70.2	18.1	11.7	3.02
			이후	94	7.4	22.3	70.2	6.03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127	67.7	17.3	15.0	3.15
			이후	127	14.2	18.9	66.9	5.65
	1회	이전	202	69.3	15.8	14.9	3.10	
		이후	202	8.4	24.3	67.3	5.88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93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전	96	67.7	19.8	12.5	2.96
		이후	96	10.4	20.8	68.8	5.89
	3회 이상	이전	88	69.3	15.9	14.8	3.18
		이후	88	6.8	25.0	68.2	6.06
	2회 이하	이전	309	68.0	16.5	15.5	3.14
		이후	309	11.0	22.7	66.3	5.76
	3~4회	이전	119	70.6	18.5	10.9	2.91
		이후	119	8.4	21.0	70.6	6.00
5회 이상	이전	85	68.2	16.5	15.3	3.22	
	이후	85	8.2	23.5	68.2	5.98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작성 이전 12.9%, 작성 이후 51.9%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12.8%, 작성 이후 56.0%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함으로써 43.2%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13.0%, 작성 이후 44.1%가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나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전·후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작성담당자(이전: 11.1%, 이후: 40.2%) 보다 자녀가 있는 작성 담당자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 1명인 경우 (41.6%p 증가[이전: 15.5%, 이후: 57.1%]) 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45.9%p 증가[이전: 13.3%, 이후: 59.2%])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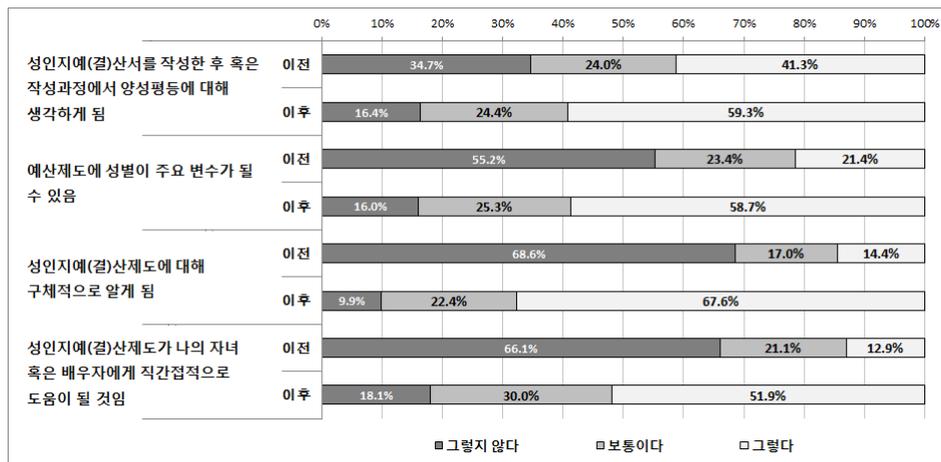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 에게 직접 적으로 도움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하는가	합계	이전	513	66.1	21.1	12.9	3.18	
		이후	513	18.1	30.0	51.9	5.33	
	성별	남자	이전	336	66.1	21.1	12.8	3.19
			이후	336	14.9	29.2	56.0	5.52
		여자	이전	177	66.1	20.9	13.0	3.17
			이후	177	24.3	31.6	44.1	4.99
	자녀수	없음	이전	189	68.3	20.6	11.1	3.09
			이후	189	20.1	39.7	40.2	4.96
		1명	이전	84	63.1	21.4	15.5	3.29
			이후	84	20.2	22.6	57.1	5.48
		2명 이상	이전	240	65.4	21.3	13.3	3.22
			이후	240	15.8	25.0	59.2	5.58
	여성정 책관련 업무 경험	있음	이전	130	50.8	22.3	26.9	3.95
			이후	130	14.6	27.7	57.7	5.72
		없음	이전	383	71.3	20.6	8.1	2.92
			이후	383	19.3	30.8	49.9	5.20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0	71.1	23.3	5.6	3.00
			이후	90	17.8	35.6	46.7	5.29
		1회	이전	216	62.5	23.6	13.9	3.28
			이후	216	20.4	28.2	51.4	5.23
		2회	이전	113	65.5	17.7	16.8	3.30
			이후	113	17.7	29.2	53.1	5.38
		3회 이상	이전	94	70.2	17.0	12.8	2.99
			이후	94	13.8	29.8	56.4	5.57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127	60.6	24.4	15.0	3.38	
		이후	127	22.8	23.6	53.5	5.26	
	1회	이전	202	67.8	19.8	12.4	3.13	
		이후	202	16.8	33.7	49.5	5.27	
	2회	이전	96	65.6	22.9	11.5	3.21	
		이후	96	18.8	33.3	47.9	5.25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95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3회 이상	이전	88	70.5	17.0	12.5	3.00
		이후	88	13.6	27.3	59.1	5.69
	2회 이하	이전	309	63.8	23.0	13.3	3.26
		이후	309	21.0	28.8	50.2	5.21
	3~4회	이전	119	68.9	20.2	10.9	3.07
		이후	119	12.6	34.5	52.9	5.52
	5회 이상	이전	85	70.6	15.3	14.1	3.07
		이후	85	15.3	28.2	56.5	5.54

이상에서 기술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의 인식변화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인식의 변화

2) 행동의 변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담당자들의 행동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동 변화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경과된 시간 및 작성 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가장 최근 작성한 2014년 처음 작성한 담당자와 2014년 이전 작성한 담당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2014년 처음 작성 또는 작성 예정인 경우

2014년 성인지예·결산서를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 행동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25.0%, 작성 이후 58.3%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 하게 된 경우가 3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야기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21.2%, 작성이후 63.6%로 작성 이후 42.4%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29.6%, 작성 이후 51.9%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40.0%, 작성 이후 80.0%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해 얘기한 경우는 40.0%p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후 51.1%로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낮았지만, 작성 이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31.1%p 증가하였다.

성인지예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5.8%, 작성 이후 51.6%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25.8%p 증가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0.0%, 작성 이후 80.0%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70.0%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의 증가폭이 26.3%p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서만 작성한 경우의 인식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97

〈표 Ⅲ-11〉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양성 평등에 대해서 동료 들과 얘기 한적 있는가?	합계		이전	60	41.7	33.3	25.0	4.00
			이후	60	15.0	26.7	58.3	5.61
	성별	남자	이전	33	42.4	36.4	21.2	3.82
			이후	33	3.0	33.3	63.6	5.97
		여자	이전	27	40.7	29.6	29.6	4.22
			이후	27	29.6	18.5	51.9	5.19
	자녀수	없음	이전	23	39.1	43.5	17.4	3.87
			이후	23	13.0	34.8	52.2	5.65
		1명	이전	11	45.5	9.1	45.5	4.73
			이후	11	18.2	9.1	72.7	5.64
		2명 이상	이전	26	42.3	34.6	23.1	3.81
			이후	26	15.4	26.9	57.7	5.58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5	33.3	26.7	40.0	4.80
			이후	15	13.3	6.7	80.0	6.13
		없음	이전	45	44.4	35.6	20.0	3.73
			이후	45	15.6	33.3	51.1	5.44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횟수	성인지예산서만 작성	이전	31	41.9	32.3	25.8	4.00
			이후	31	16.1	32.3	51.6	5.58
		성인지결산서만 작성	이전	10	40.0	50.0	10.0	3.60
			이후	10	0.0	20.0	80.0	6.40
성인지예·결산서 모두 작성		이전	19	42.1	26.3	31.6	4.21	
		이후	19	21.1	21.1	57.9	5.26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하여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18.3%, 작성 이후 63.3%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 하게 된 경우가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야기한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15.2%, 작성 이후 75.8%로 작성 이후 60.6%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22.2%, 작성 이후 48.1%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33.3%, 작성 이후 60.0%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동료들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26.7%p 증가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3.3%, 작성 이후 64.4%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동료들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가 51.1%p 증가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던 담당자들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하게 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하여 동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2.9%, 작성 이후 58.1%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45.2%p 증가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0.0%, 작성 이후 90.0%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8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의 증가폭이 26.3%p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서만 작성한 경우의 인식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99

〈표 Ⅲ-12〉 성인지예산제도를 주제로 대화: 2014년 처음 작성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 예산 제도를 주제로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	합계		이전	60	51.7	30.0	18.3	3.52
			이후	60	11.7	25.0	63.3	5.75
	성별	남자	이전	33	54.5	30.3	15.2	3.24
			이후	33	3.0	21.2	75.8	6.12
		여자	이전	27	48.1	29.6	22.2	3.85
			이후	27	22.2	29.6	48.1	5.30
	자녀수	없음	이전	23	43.5	39.1	17.4	3.61
			이후	23	13.0	34.8	52.2	5.65
		1명	이전	11	45.5	9.1	45.5	4.55
			이후	11	0.0	18.2	81.8	6.36
		2명 이상	이전	26	61.5	30.8	7.7	3.00
			이후	26	15.4	19.2	65.4	5.58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5	46.7	20.0	33.3	4.60
			이후	15	13.3	26.7	60.0	5.80
		없음	이전	45	53.3	33.3	13.3	3.16
			이후	45	11.1	24.4	64.4	5.7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성인지예산서만 작성	이전	31	54.8	32.3	12.9	3.29
			이후	31	16.1	25.8	58.1	5.68
		성인지결산서만 작성	이전	10	50.0	40.0	10.0	3.40
			이후	10	0.0	10.0	90.0	6.50
성인지예·결산서 모두 작성		이전	19	47.4	21.1	31.6	3.95	
		이후	19	10.5	31.6	57.9	5.47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15.0%, 작성 이후 50.0%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게 된 경우가 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파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12.1%, 작성 이후 60.6%로 작성 이후 48.5%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18.5%, 작성 이후 37.0%가 양성평등 관점으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6.7%, 작성 이후 46.7%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양성평등 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경우가 20.0%p 증가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1.1%, 작성 이후 51.1%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경우가 40%p 증가하였다.

성인지예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2.9%, 작성 이후 51.6%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38.7%p 증가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후 70.0%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70.0%p 증가(이전: 0%)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의 증가폭이 10.5%p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지결산서만 작성한 경우의 인식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01

〈표 Ⅲ-13〉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 파악: 2014년 처음 작성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양성 평등 관점 에서 소속 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합계		이전	60	66.7	18.3	15.0	3.08
			이후	60	23.3	26.7	50.0	5.11
	성별	남자	이전	33	66.7	21.2	12.1	3.09
			이후	33	18.2	21.2	60.6	5.39
		여자	이전	27	66.7	14.8	18.5	3.07
			이후	27	29.6	33.3	37.0	4.78
	자녀수	없음	이전	23	65.2	21.7	13.0	2.91
			이후	23	30.4	34.8	34.8	4.70
		1명	이전	11	63.6	0.0	36.4	3.82
			이후	11	18.2	18.2	63.6	5.64
		2명 이상	이전	26	69.2	23.1	7.7	2.92
			이후	26	19.2	23.1	57.7	5.27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5	53.3	20.0	26.7	4.07
			이후	15	26.7	26.7	46.7	5.13
		없음	이전	45	71.1	17.8	11.1	2.76
			이후	45	22.2	26.7	51.1	5.11
	성인지 예·결산 서 작성 횟수	성인지예산서만 작성	이전	31	61.3	25.8	12.9	3.10
			이후	31	22.6	25.8	51.6	5.13
		성인지결산서만 작성	이전	10	90.0	10.0	0.0	2.30
			이후	10	20.0	10.0	70.0	5.50
성인지예·결산서 모두 작성		이전	19	63.2	10.5	26.3	3.47	
		이후	19	26.3	36.8	36.8	4.89	

나) 2014년 이전에 작성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지예·결산서를 2014년 이전 작성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 행동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1년간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21.6%, 작성 이후 40.4%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하게 된 경우가 1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야기한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20.1%, 작성 이후 44.2%로 작성 이후 24.1%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33.3%, 작성 이후 48.7%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42.6%, 작성 이후 56.5%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해 얘기한 경우가 13.9%p 증가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8.3%, 작성 이후 42.0%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가 23.7%p 증가하였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경험이 1회인 작성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5.9%, 작성 이후 47.0%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21.1%p 증가하였으며, 2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21.2%p(이전: 23.9, 이후: 45.1), 3회 이상 작성담당자 28.7%p(이전: 20.2%, 이후: 4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결산서 작성 경험이 1회인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8.9%, 작성 이후 47.4%로 동료들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1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20.8%p(이전: 24.0, 이후: 44.8), 3회 이상 작성담당자 26.2%p(이전: 22.7%, 이후: 4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03

〈표 Ⅲ-14〉 양성평등을 주제로 대화: 2014년 이전 작성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최근 1년간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	합계		이전	453	50.1	16.6	21.6	3.54	
			이후	453	27.3	20.7	40.4	4.82	
	성별	남자	이전	303	60.1	19.8	20.1	3.32	
			이후	303	31.4	24.4	44.2	4.82	
		여자	이전	150	50.0	16.7	33.3	3.97	
			이후	150	30.0	21.3	48.7	4.83	
	자녀수	없음	이전	166	55.4	12.0	32.5	3.80	
			이후	166	30.7	24.1	45.2	4.76	
		1명	이전	73	54.8	23.3	21.9	3.42	
			이후	73	26.0	28.8	45.2	5.04	
		2명 이상	이전	214	58.4	22.4	19.2	3.37	
			이후	214	32.7	21.0	46.3	4.80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15	39.1	18.3	42.6	4.53	
			이후	115	24.3	19.1	56.5	5.36	
		없음	이전	338	62.7	18.9	18.3	3.20	
			이후	338	33.1	24.9	42.0	4.64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80	56.3	16.3	27.5	3.68	
			이후	80	26.3	33.8	40.0	4.83	
		1회	이전	166	54.2	19.9	25.9	3.63	
			이후	166	30.7	22.3	47.0	4.81	
		2회	이전	113	61.1	15.0	23.9	3.42	
			이후	113	33.6	21.2	45.1	4.83	
		3회 이상	이전	94	56.4	23.4	20.2	3.39	
			이후	94	31.9	19.1	48.9	4.84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6	59.4	21.9	18.8	3.33
				이후	96	33.3	26.0	40.6	4.65
	1회		이전	173	52.0	19.1	28.9	3.79	
			이후	173	31.2	21.4	47.4	4.86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전	96	60.4	15.6	24.0	3.33
		이후	96	29.2	26.0	44.8	4.83
	3회 이상	이전	88	59.1	18.2	22.7	3.49
		이후	88	29.5	21.6	48.9	4.94
	2회 이하	이전	249	53.8	18.5	27.7	3.70
		이후	249	30.5	24.9	44.6	4.78
	3~4회	이전	119	61.3	18.5	20.2	3.26
		이후	119	32.8	21.0	46.2	4.87
	5회 이상	이전	85	58.8	20.0	21.2	3.44
		이후	85	29.4	22.4	48.2	4.88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하여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13.6%, 작성 이후 38.4%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 하게 된 경우가 2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13.5%, 작성 이후 45.2%로 작성 이후 31.7%p 증가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19.3%, 작성 이후 40.0%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7.8%, 작성 이후 53.0%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동료들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하여 얘기한 경우가 25.2%p 증가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11.2%, 작성 이후 40.2%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동료들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가 29.0%p 증가하였다.

Ⅲ.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05

〈표 Ⅲ-15〉 성인지예산제도를 주제로 대화: 2014년 이전 작성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가?	합계		이전	453	61.0	13.6	13.6	2.95	
			이후	453	31.2	18.7	38.4	4.65	
	성별	남자	이전	303	69.6	16.8	13.5	2.90	
			이후	303	31.4	23.4	45.2	4.82	
		여자	이전	150	68.0	12.7	19.3	3.03	
			이후	150	43.3	16.7	40.0	4.30	
	자녀수	없음	이전	166	72.3	9.0	18.7	2.90	
			이후	166	41.0	19.9	39.2	4.39	
		1명	이전	73	72.6	20.5	6.8	2.60	
			이후	73	27.4	21.9	50.7	5.04	
		2명 이상	이전	214	65.4	18.7	15.9	3.10	
			이후	214	33.6	22.0	44.4	4.71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15	53.0	19.1	27.8	3.71	
			이후	115	29.6	17.4	53.0	5.10	
		없음	이전	338	74.6	14.2	11.2	2.69	
			이후	338	37.3	22.5	40.2	4.49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80	65.0	17.5	17.5	3.18	
			이후	80	32.5	32.5	35.0	4.49	
		1회	이전	166	66.9	17.5	15.7	2.98	
			이후	166	38.0	19.3	42.8	4.57	
		2회	이전	113	77.0	8.8	14.2	2.74	
			이후	113	34.5	16.8	48.7	4.79	
		3회 이상	이전	94	67.0	18.1	14.9	2.95	
			이후	94	34.0	20.2	45.7	4.77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6	69.8	17.7	12.5	2.86
				이후	96	39.6	22.9	37.5	4.42
	1회		이전	173	68.8	16.2	15.0	2.91	
			이후	173	34.7	17.9	47.4	4.73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2회	이전	96	70.8	12.5	16.7	2.90	
		이후	96	33.3	25.0	41.7	4.59	
		3회 이상	이전	88	67.0	14.8	18.2	3.16
			이후	88	34.1	21.6	44.3	4.8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하	이전	249	67.5	16.9	15.7	2.99
			이후	249	36.5	21.7	41.8	4.57
		3~4회	이전	119	74.8	11.8	13.4	2.71
			이후	119	33.6	20.2	46.2	4.70
5회 이상		이전	85	65.9	16.5	17.6	3.15	
		이후	85	34.1	21.2	44.7	4.80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작성 이전 12.5%, 작성 이후 34.7%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게 된 경우가 2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파악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작성 이전 13.2%, 작성 이후 41.6% 로 작성 이후 28.4%p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작성 이전 16.0%, 작성 이후 34.7%가 양성평등 관점으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작성 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29.6%, 작성 이후 48.7%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경우가 19.1%p 증가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작성 이전 8.9%, 작성 이후 36.1%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경우가 27.2%p 증가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 파악: 2014년 이전 작성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양성 평등 관점 에서 소속 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합계		이전	453	62.0	13.8	12.5	2.91
			이후	453	33.3	20.3	34.7	4.41
	성별	남자	이전	303	71.9	14.9	13.2	2.82
			이후	303	36.3	22.1	41.6	4.54
		여자	이전	150	66.7	17.3	16.0	3.11
			이후	150	40.7	24.7	34.7	4.14
	자녀수	없음	이전	166	71.1	13.3	15.7	2.95
			이후	166	37.3	24.1	38.6	4.30
		1명	이전	73	75.3	16.4	8.2	2.60
			이후	73	31.5	31.5	37.0	4.59
		2명 이상	이전	214	67.8	17.3	15.0	2.99
			이후	214	40.2	19.2	40.7	4.43
	여성정책 관련업무 경험	있음	이전	115	47.0	23.5	29.6	3.97
			이후	115	32.2	19.1	48.7	4.77
		없음	이전	338	78.1	13.0	8.9	2.55
			이후	338	39.6	24.3	36.1	4.28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80	66.3	18.8	15.0	3.09
			이후	80	33.8	33.8	32.5	4.39
		1회	이전	166	69.9	15.1	15.1	2.93
			이후	166	43.4	19.9	36.7	4.17
		2회	이전	113	74.3	11.5	14.2	2.81
			이후	113	35.4	20.4	44.2	4.67
		3회 이상	이전	94	69.1	19.1	11.7	2.85
			이후	94	34.0	22.3	43.6	4.52
	성인지 결산서 작성 횟수	작성경험없음	이전	96	74.0	16.7	9.4	2.67
			이후	96	39.6	24.0	36.5	4.31
		1회	이전	173	67.6	16.2	16.2	3.02
			이후	173	36.4	21.4	42.2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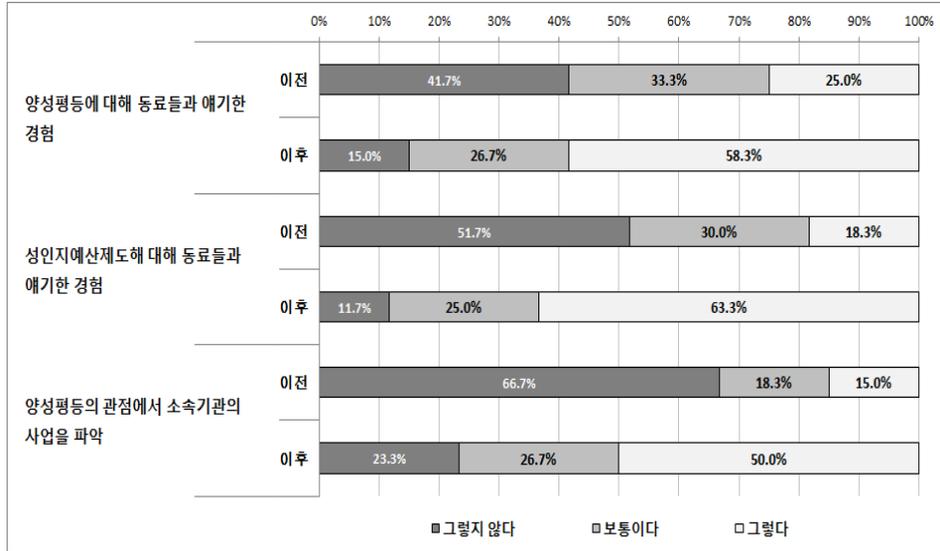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횟수	2회	이전	96	70.8	15.6	13.5	2.84
		이후	96	39.6	27.1	33.3	4.30
	3회 이상	이전	88	70.5	13.6	15.9	3.03
		이후	88	36.4	20.5	43.2	4.56
	2회 이하	이전	249	68.7	16.9	14.5	2.96
		이후	249	38.6	24.1	37.3	4.34
	3~4회	이전	119	74.8	11.8	13.4	2.72
		이후	119	37.8	21.8	40.3	4.46
	5회 이상	이전	85	68.2	17.6	14.1	3.04
		이후	85	35.3	21.2	43.5	4.54

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전후의 행동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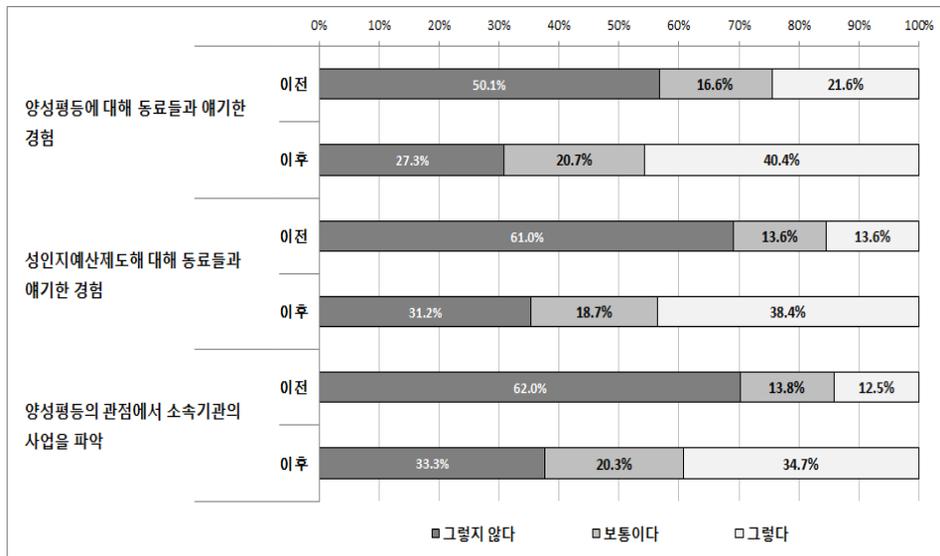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2014년 처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행동변화는 [그림 -2],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행동변화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담당자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경우에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정책 업무경험이 없는 작성자의 경우에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2014년 처음 작성한 담당자와 2014년 이전 작성한 담당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14년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증가 폭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경과시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Ⅲ-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행동의 변화(2014년 처음 작성자)



[그림 Ⅲ-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전·이후 행동의 변화(2014년 이전 작성자)

3) 예·결산 과정에서 행동변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담당자들의 예산편성, 집행, 사업평가 등 일련의 예·결산 과정에서 행동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예산편성, 집행, 사업평가 등 일련의 예·결산 과정에서 행동변화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경험 및 작성 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가장 최근 작성한 2014년 처음 작성한 담당자와 2014년 이전 작성한 담당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성인지예·결산서를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상당수(2014년 처음: 58.2%, 2014년 이전: 43.4%)는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일반 사업의 경우도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고자 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처음: 22.7%, 2014년 이전: 31.5%). 2014년 처음 작성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일반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35.5%p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2014년 이전 작성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일반사업의 예산 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11.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도 처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조사 당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만 국한되어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데 많은 관심이 가고 있고 이를 일반사업에는 적용하는 것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까지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식변화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에 서서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2014년 성인지예·결산서를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2014년 처음: 35.8%, 2014년 이전: 40.0%)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보다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일반사업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전 작성담당자의 경우 2014년 처음 작성자 보다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작성사업: 40.0%, 일반사업: 30.2%).

사업평가 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2014년 성인지예·결산서를 처음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2014년 처음: 35.6%, 2014년 이전: 45.3%)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보다 사업평가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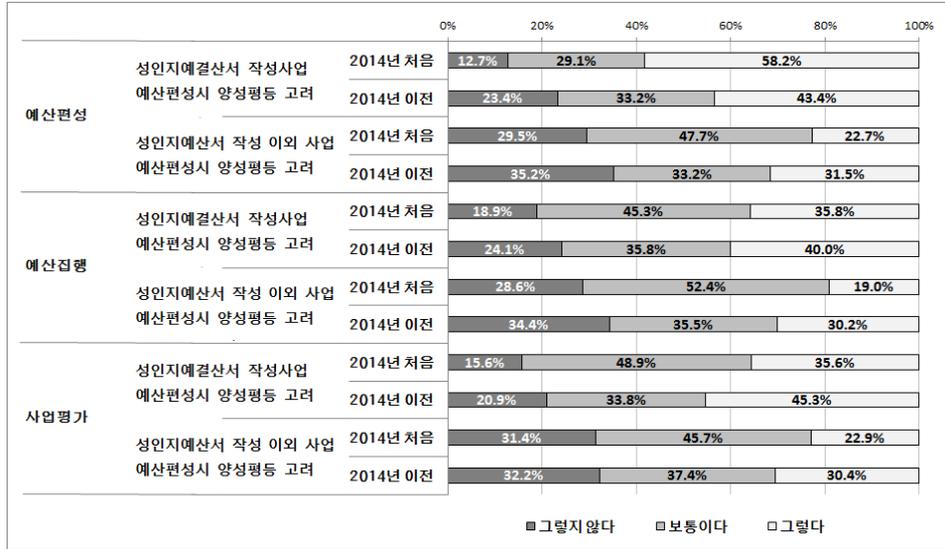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2014년도 처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 보다, 2014년 이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까지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거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 관점을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고려하게 되기 까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예·결산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예산 편성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2014년 처음	55	12.7	29.1	58.2
		2014년 이전	401	23.4	33.2	43.4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외 사업	2014년 처음	44	29.5	47.7	22.7
		2014년 이전	355	35.2	33.2	31.5
예산 집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2014년 처음	53	18.9	45.3	35.8
		2014년 이전	402	24.1	35.8	40.0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외 사업	2014년 처음	42	28.6	52.4	19.0
		2014년 이전	358	34.4	35.5	30.2
사업 평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2014년 처음	45	15.6	48.9	35.6
		2014년 이전	393	20.9	33.8	45.3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외 사업	2014년 처음	35	31.4	45.7	22.9
		2014년 이전	342	32.2	37.4	30.4

주: “⑨ 예산편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은 분석 시 제외함



[그림 Ⅲ-4] 예·결산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

다.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비용

1) 비용 추정을 위한 변수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들의 작성에 대한 비용 혹은 WTP(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담당자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작성 비용, 그리고 그 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Probit 방정식 추정에 활용된 변수의 기술통계²²⁾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Probit 방정식 추정 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67%의 작성담당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작성비용과 관련된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45시간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327.52만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할애할 용의가 있는 업무시간은 약 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로 추정한 평균 시간당 임금은 1.53만

22) 추정 결과 90% 수준에서 유의하거나 신뢰구간이 서로 다른 부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변수이다.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비용은 평균 12.3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성담당자의 특성변수를 살펴보면, 25%의 담당자가 여성정책 업무경험이 있고, 44%의 경우 배우자가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점 척도로 측정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인식은 평균 5.34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8〉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필요성	0.67	0.47	0.00	1.00	
설명변수	작성비용 관련	1일 평균 근로시간: a	10.45	1.16	8.00	14.17
		월평균 근로소득(m_i): b	327.52	124.30	100.00	900.00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할애할 용의가 있는 업무시간: c	7.87	13.26	1.00	100.00
		시간당 임금(t_i) ¹⁾ $d = \frac{b}{(a \times 20.7)}$	1.53	0.60	0.54	4.23
		작성비용: c×d	12.33	22.76	0.81	263.50
	사회경제적 특성	여성정책 업무경험 더미	0.25	0.43	0.00	1.00
		배우자 전일제 경제활동 더미	0.44	0.50	0.00	1.00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²⁾	5.34	1.83	1.00	8.00

주: 1) 20.7은 2014년 1/4분기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임(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음(8점 척도 : 1.전혀 그렇지 않다~8.매우그렇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비용/WTP를 추정하기 위한 프로빗 추정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9〉 프로빗(Probit) 추정결과

변수명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ln(m_i - t_i)$	-4.17	-2.88	-7.01	-1.33
$-\ln m_i$	-4.09	-2.81	-6.95	-1.24
여성정책 업무경험 더미	0.22	1.42	-0.08	0.52
배우자 전일제 경제활동 더미	0.21	1.53	-0.06	0.47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¹⁾	0.39	9.95	0.31	0.47
상수항	-1.40	-1.27	-3.56	0.76

주: 1)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음(8점 척도 : 1.전혀 그렇지 않다~8.매우그렇다)

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비용 또는 WTP

프로빗 추정치로 계산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비용 또는 WTP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정치가 0보다 작을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되며, 0보다 클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WTP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7%의 추정치가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은 비용인 경우 78만원, WTP인 경우 3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비용으로 인식한 표본과 WTP로 인식한 표본의 주요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과 작성 횟수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성별과 작성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WTP로 인식한 표본의 여성비율이 47%로 비용으로 인식한 표본의 여성비율(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성시간을 살펴보면 4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이 비용으로 인식한 표본의 경우 절반 이상(57%)으로 WTP로 인식한 표본의 경우(44%)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여성일수록, 작성시간이 짧을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 또는 WTP 추정치는 단년도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합의가 크지 않지만, 향후 패널자료가 구축된 이후 보다 정교하고 강건한 모형을 사용하여 연간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작성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0〉 주요 변수별 비용/WTP

(단위: 명, 만원, %)

주요 변수별 분석		비용				WTP			
		응답자수	평균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응답자수	평균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월 평균 근로 소득	25% 미만 (250만원)	88	22%	-38.4	-18.7	33	28%	24.9	12.1
	25~50% (300만원)	89	23%	-58.6	-22.4	19	16%	34.4	13.3
	50~75% (400만원)	101	26%	-84.4	-25.9	38	33%	45.3	14.2
	75% 이상 (400만원)	114	29%	-118.4	-23.8	26	22%	51.7	10.4
성별	여성	121	31%	-73.6	-23.4	54	47%	38.4	13.2
	남성	271	69%	-80.1	-22.6	62	53%	39.8	12.1
작성 횟수	1회	171	44%	-69.0	-21.4	51	44%	42.4	14.4
	2회	118	30%	-81.2	-23.1	41	35%	29.9	9.7
	3회 이상	103	26%	-89.7	-25.0	25	22%	46.1	13.9
작성 시간	1시간	48	12%	-54.8	-18.1	24	21%	34.8	11.7
	2시간	69	18%	-81.5	-23.3	17	15%	48.1	14.1
	3시간	53	14%	-86.1	-24.2	24	21%	41.2	14.3
	4시간 이상	222	57%	-80.2	-23.5	51	44%	37.2	11.8
전체		392	100%	-78.1	-22.9	116	100%	39.1	12.6

라.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적절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작성담당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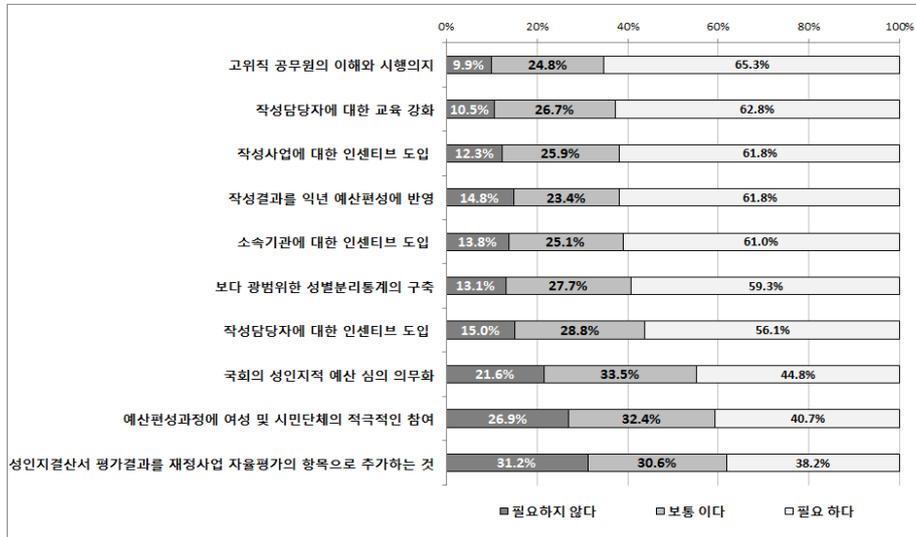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를 8점 척도로 사용하여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 Ⅲ-21>와 같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경우 강제적인 성격의 개선(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추가) 보다는 자발적 성격의 개선(교육강화/인센티브 도입 등)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단위: %, 점)

구분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평균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의지	9.9	24.8	65.3	5.92
작성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10.5	26.7	62.8	5.79
작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12.3	25.9	61.8	5.76
작성결과를 익년 예산 편성에 반영 (예 :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14.8	23.4	61.8	5.70
소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우수 작성기관에 대한 포상)	13.8	25.1	61.0	5.67
보다 광범위한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13.1	27.7	59.3	5.66
작성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인사고과에 반영, 작성수당 지급 등)	15.0	28.8	56.1	5.58
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	21.6	33.5	44.8	5.07
예산편성과정에 여성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26.9	32.4	40.7	4.80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	31.2	30.6	38.2	4.59



[그림 Ⅲ-5]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과제

3. 소결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는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진단하여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되었다. 작성담당자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향후 패널자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성담당자의 인지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성인지예·결산서를 적어도 한번 이상 작성해 본적이 있는 공무원 중 향후 패널자료 구축에 동의한 표본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 및 시사점을 크게 네 부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예·결산 과정에서의 행동변화, 비용 그리고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

한 인식과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횟수가 증가할수록,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컸다. 행동변화에 있어서는 남성인 경우, 여성 정책 업무경험이 없는 경우 변화폭이 컸으며, 2014년 이전 작성경험자 보다 2014년 최초 작성자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의 변화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직후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과시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예·결산 과정에서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행동변화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최초 작성자 보다, 2014년 이전 작성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까지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거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평등 관점을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고려하게 되기까지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들의 작성에 대한 비용 혹은 WTP(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의 추정치가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성별과 작성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일수록, 작성시간이 짧을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용/WTP 추정치의 단년도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크지 않으나, 향후 패널자료가 구축된 이후에 연간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작성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제적인 성격의 개선(국회의 성인지적 예산심의 의무화/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추가) 보다는 자발적 성격의 개선(교육강화/인센티브 도입 등)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121
--	-----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123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2
3.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134
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166
5.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188
6. 소결	200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11.3.8)에 근거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다. 이어 2013년,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2014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성인지예·결산서²³⁾는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의 지방공무원이 작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도, 이해도 등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도입되어 운영된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경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식과 지침, 매뉴얼, 컨설팅 등에 대한 의견 및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온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데 황정임 외(2012, 2013)의 연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분청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2013년 첫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박수범 외(2014)의 연구에서는 5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23) 예산서는 일차적으로 조직 상태에 대한 기술이며,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부처 간 지원배분, 기능 간 자원배분에 있어 결국은 의사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호는 특정한 의사결정자의 선호일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의사결정 참여자의 집단적 선호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성인지예산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려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성평등 제고 활동과 재원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참여자의 집단적 선호를 반영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2015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고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된 현 상황에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현황이나 규모 등은 집계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나 몇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가 매우 필요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²⁴⁾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는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어려움, 문제점, 성인지예산서 작성 전후의 인식 변화, 성인지예산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을 가진 공무원과 작성경험을 갖지 않은 공무원간에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나.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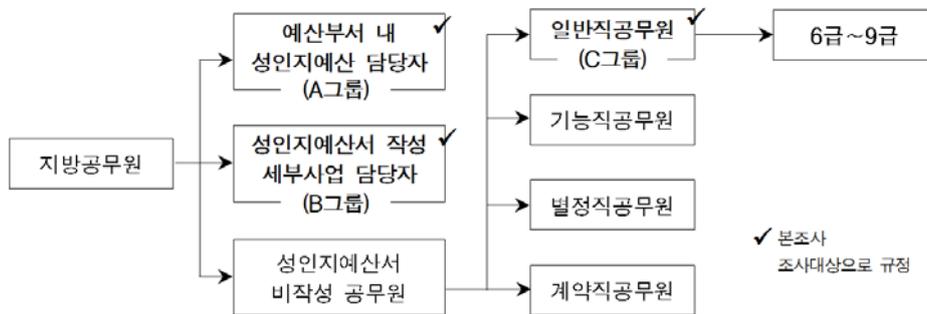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는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기준으로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구분한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는 다시 (1)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한 예산부서 내 성인지예산 담당자 조사와 (2) 성인지예산서의 사업설명자료를 작성

24) [부록 5], [부록 6] 설문지 참조

한 사업담당자 조사로 구분하였다.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다음과 같다. 총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대상이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17개(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27개(시 74, 군 84, 자치구 69)이다.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 그룹, B 그룹)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는 예산부서 내 성인지예산 담당자(이하 예산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사업담당자(이하 사업담당 공무원이라 한다)로 구분하였다. 즉, 지방공무원 중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한 예산부서 내 성인지예산 담당자 244명, 지방공무원 중 2014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담당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그림 4-1] 참조).²⁵⁾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 모집단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중 예산담당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지자체 예산부서 내 성인지예산 총괄 예산담당자 명단을 근거로 표집하였다.

사업담당 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예산담당자로부터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담당자 명단을 제공받아, 244개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25) 이하 조사분석에서는 예산부서내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A그룹,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사업담당자를 B그룹, 일반직공무원을 C그룹으로 명명한다.

사업수의 50% 이상이 완료되도록 사업담당자를 표집하였다.²⁶⁾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령 받은 각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서 예산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1) 조사 참여 및 (2)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담당자 명단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28개 지자체로부터 사업담당자 명단 수령을 완료하였고, 16개 지자체가 거절하였다. 거절사유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업담당자 리스트 제공 거부하는 경우였다. 이에 대해 공문 확인, 조사 취지, 보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 거절 의사를 밝혀 왔다. 또한 명단 제공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사업수 대비 적은 사업담당자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완된 명단을 요청했으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림 IV-2] 성인지예산서 총괄 담당자용 조사 안내문

26) 사업담당 공무원 명단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했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에게 연락해서 제공받도록 권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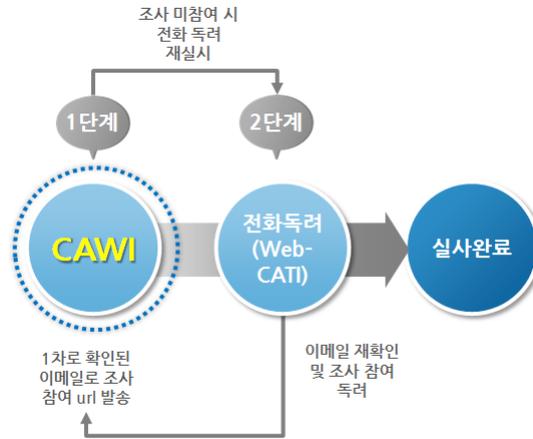
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 그룹)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2. 12. 31 기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안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근거로 전국의 244개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 표본설계 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 결과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표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직급은 6-9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17개 시도별, 직급별 분포가 6-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분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따라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2. 12. 31 기준) 자료 중 6-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17개 시도별, 직급별, 소속기관 규모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기 확보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웹 조사(CAWI :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공무원의 이메일 재확인과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Web-CATI : Web-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그림 Ⅳ-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방법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 그룹)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예산담당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조사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조사 참여 독려 전화를 5회 이상 실시하여 조사 응답률을 제고하였다. 총 228개 지자체 소속의 228명 총괄 예산담당자가 조사를 완료하였다.²⁷⁾ 244개 지자체의 전수 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1) 조사 거절, (2) 출산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조사 참여 불가능 (3) 조사 참여 지연 등으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담당자의 경우 각 지자체의 상기 총괄 예산담당자가 제출한 명단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중복을 제거한 명단을 최종 명단으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쳐 정리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담당자의 이메일로 조사 안내문과 조사사이트 주소를 발송하였다. 조사 참여 이메일 발송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메일 주소 재확인 및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담당자는 총 3,10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7) 총 9개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담당자가 두 명 이상으로 파악되어 두 명 이상의 담당자가 웹 설문을 완료하였다.

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 그룹)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1차로 244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작위로 비작성 공무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는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구축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 발송한 후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5회 이상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다. 총 214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라. 조사내용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 그룹, B 그룹)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 그룹, B 그룹)의 조사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성인지예·결산제도 관련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1>와 같다.

<표 Ⅳ-1>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내용

대분류	조사내용(예산담당, 사업담당 공통문항)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근무처, 성별, 현재부서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 직렬, 직급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경험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및 절차	문2-1_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문2-2_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문2-3_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 문9_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절차[예산담당] 문14_본인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사업담당]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문3_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문17_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문19_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문22-1_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분류	조사내용(예산담당, 사업담당 공통문항)	
	경험한 변화에 대한 인식	문22-2_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문22-3_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인식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	문24-1_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 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24-3_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 하는데 효과가 있다 문24-5_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 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문25-3_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문25-4_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자체예산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문26_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평등정책추진	문28_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 결산제도 관련 인식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문30-1_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30-2_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30-3_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자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인지	문31_2013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 그룹)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 그룹)의 조사내용은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조사내용

대분류	조사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처, 성별, 현재부서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 직렬, 직급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인식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	문24-1_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 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24-3_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문24-5_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문25-3_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문25-4_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자체예산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문26_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	문28_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 결산제도 관련 인식	성인지결산 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문30-1_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30-2_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30-3_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자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인지	문31_2013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총 5,332명의 공무원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2014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이하 작성 공무원)은 3,332명,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이하 비작성 공무원)은 2,000명이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 중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11명이었고,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921명이었다. 성별은 여성 1,929명이었고 남성 1,403명이었다. 현재부서 근무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인 1,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이 1,0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정책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수행 경험을 살펴본 결과, 둘 다 수행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둘 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392명에 그쳤다. 직렬을 살펴보면 일반직이 2,132명, 직급으로는 7급이 1,784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작성 공무원 2,000명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77명, 기초자치단체는 1,723명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842명, 남성이 1,158명이었다. 현재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662명으로 1년 이상-2년 미만(659명)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공무원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이 6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정책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수행 경험에서는 둘 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587명이었다. 직렬은 일반직이 1,447명, 직급은 7급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참가한 총 인원 5,332명 중 소속 지자체기준 조사 참가자 수는 작성과 비작성 구분에 상관없이 경기, 서울, 경북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33

〈표 IV-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28	100.0	3,104	100.0	2,000	100.0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7.0	395	12.7	277	13.9
	기초자치단체	212	93.0	2,709	87.3	1,723	86.2
성별	남자	104	45.6	1,299	41.8	1,158	57.9
	여자	124	54.4	1,805	58.2	842	42.1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29.8	761	24.5	662	33.1
	1년 이상~2년 미만	82	36.0	1,117	36.0	659	33.0
	2년 이상~3년 미만	42	18.4	611	19.7	318	15.9
	3년 이상	36	15.8	615	19.8	360	18.0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7.9	514	16.6	481	24.1
	5년 이상~10년 미만	77	33.8	824	26.5	414	20.7
	10년 이상~15년 미만	31	13.6	437	14.1	178	8.9
	15년 이상~20년 미만	41	18.0	387	12.5	227	11.4
	20년 이상	61	26.8	942	30.3	697	34.9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6.6	377	12.1	81	4.1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23.7	1,349	43.5	332	16.6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69.7	1,378	44.4	1,587	79.4
직렬	일반직	204	89.5	1,928	62.1	1,447	72.4
	세무직	4	1.8	17	0.5	45	2.3
	전산직	19	8.3	79	2.5	52	2.6
	기타	1	0.4	1,080	34.8	456	22.8
직급	6급 이상	30	13.2	525	16.9	537	26.9
	7급	136	59.6	1,648	53.1	728	36.4
	8급	54	23.7	712	22.9	480	24.0
	9급 이하	8	3.5	219	7.1	255	12.8
소속 지자체	서울	25	11.0	358	11.5	312	15.6
	부산	16	7.0	167	5.4	105	5.3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대구	9	3.9	74	2.4	76	3.8
	인천	11	4.8	155	5.0	88	4.4
	광주	5	2.2	85	2.7	48	2.4
	대전	6	2.6	61	2.0	35	1.8
	울산	6	2.6	84	2.7	47	2.4
	세종	1	0.4	15	0.5	6	0.3
	경기	29	12.7	531	17.1	341	17.1
	강원	19	8.3	161	5.2	103	5.2
	충북	12	5.3	199	6.4	97	4.9
	충남	15	6.6	162	5.2	118	5.9
	전북	13	5.7	184	5.9	109	5.5
	전남	20	8.8	261	8.4	136	6.8
	경북	22	9.6	298	9.6	180	9.0
	경남	18	7.9	236	7.6	170	8.5
	제주	1	0.4	73	2.4	29	1.5

3.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은 예산담당자(A그룹)와 사업담당자(B그룹)에 해당되는 분석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및 절차,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²⁸⁾

28)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된 첫 해이므로 작성 공무원과 비작성 공무원의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후 국가공무원과의 비교, 권역별 비교, 도농 비교 등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먼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이다. 예산담당(3.0점)과 사업담당(2.9점)의 인식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예산담당의 경우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담당(38.7%),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업담당(30.2%), 기초자치단체 소속 예산담당(24.1%)의 순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의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예산담당은 남성공무원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여성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과 사업담당 모두에서 5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의 두 가지 경험이 있는 예산담당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두 가지 모두 경험이 있는 사업담당은 경험이 없는 사업담당에 비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등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부산과 광주지역이 3.4점을 주었고, 사업담당의 경우 부산지역과 세종시가 3.2점을 주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4〉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전체		228	26.8	46.9	26.3	3.0	3,104	31.3	41.8	26.9	2.9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62.5	25.0	12.5	2.4	395	38.7	37.7	23.5	2.8	
	기초자치단체	212	24.1	48.6	27.4	3.0	2,709	30.2	42.3	27.4	2.9	
성별	남자	104	31.7	37.5	30.8	3.0	1,299	28.6	39.4	32.0	3.0	
	여자	124	22.6	54.8	22.6	3.0	1,805	33.3	43.4	23.3	2.9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25.0	38.2	36.8	3.1	761	28.5	41.3	30.2	3.0	
	1년 이상~2년 미만	82	25.6	53.7	20.7	2.9	1,117	32.3	42.6	25.1	2.9	
	2년 이상~3년 미만	42	35.7	42.9	21.4	2.8	611	32.4	42.7	24.9	2.9	
	3년 이상	36	22.2	52.8	25.0	3.0	615	31.9	39.8	28.3	2.9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22.2	44.4	33.3	3.0	514	29.6	44.6	25.9	2.9	
	5년 이상~10년 미만	77	33.8	40.3	26.0	2.9	824	34.5	41.0	24.5	2.8	
	10년 이상~15년 미만	31	22.6	54.8	22.6	3.1	437	33.2	44.4	22.4	2.8	
	15년 이상~20년 미만	41	22.0	53.7	24.4	3.0	387	30.5	38.8	30.7	3.0	
20년 이상	61	24.6	47.5	27.9	3.0	942	29.0	40.9	30.1	3.0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33.3	40.0	26.7	2.9	377	27.1	41.1	31.8	3.0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20.4	44.4	35.2	3.1	1,349	31.9	40.8	27.3	2.9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28.3	48.4	23.3	2.9	1,378	31.9	42.9	25.3	2.9
직렬	일반직	204	25.5	48.5	26.0	3.0	1,928	30.6	41.0	28.4	2.9	
	세무직	4	25.0	50.0	25.0	3.0	17	35.3	35.3	29.4	3.2	
	전산직	19	42.1	31.6	26.3	2.7	79	36.7	43.0	20.3	2.8	
	기타	1	0.0	0.0	100.0	4.0	1,080	32.1	43.1	24.8	2.9	
직급	6급 이상	30	40.0	36.7	23.3	2.8	525	28.2	39.8	32.0	3.0	
	7급	136	22.1	52.2	25.7	3.0	1,648	32.1	42.2	25.7	2.9	
	8급	54	31.5	40.7	27.8	2.9	712	32.4	40.6	27.0	2.9	
	9급 이하	8	25.0	37.5	37.5	3.1	219	29.2	47.0	23.7	2.9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37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24.0	40.0	36.0	3.1	358	35.8	40.2	24.0	2.8
	부산	16	12.5	43.8	43.8	3.4	167	19.8	43.7	36.5	3.2
	대구	9	66.7	22.2	11.1	2.3	74	39.2	32.4	28.4	2.9
	인천	11	9.1	63.6	27.3	3.2	155	25.8	47.7	26.5	3.0
	광주	5	0.0	60.0	40.0	3.4	85	35.3	41.2	23.5	2.9
	대전	6	33.3	50.0	16.7	2.8	61	47.5	37.7	14.8	2.5
	울산	6	33.3	50.0	16.7	2.8	84	48.8	32.1	19.0	2.6
	세종	1	100.0	0.0	0.0	2.0	15	6.7	60.0	33.3	3.2
	경기	29	20.7	62.1	17.2	2.9	531	36.3	40.1	23.5	2.8
	강원	19	26.3	52.6	21.1	2.8	161	32.3	49.1	18.6	2.8
	충북	12	33.3	33.3	33.3	3.0	199	33.2	38.7	28.1	2.9
	충남	15	26.7	46.7	26.7	2.9	162	27.2	42.0	30.9	3.1
	전북	13	46.2	38.5	15.4	2.8	184	26.1	44.6	29.3	3.0
	전남	20	25.0	40.0	35.0	3.1	261	27.6	40.6	31.8	3.0
	경북	22	9.1	59.1	31.8	3.2	298	26.2	46.6	27.2	3.0
	경남	18	44.4	38.9	16.7	2.7	236	26.3	41.5	32.2	3.0
	제주	1	100.0	0.0	0.0	2.0	73	35.6	34.2	30.1	2.9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이다. 예산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을 5점 기준에 평균 3점 정도로 평가하였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3.1점 정도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에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 예산담당(62.5%)>광역 사업담당(22.8%)>기초 예산담당(21.7%)>기초 사업담당(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예산담당은 남성공무원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여성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 유무의 경우 두 가지 모두 경험이 있는 예산담당이 작성양식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두 가지 모두 경험이 있는 사업담당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업담당에 비해 작성양식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등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에 대해 예산담당의 경우 부산지역이 3.4점, 사업담당의 경우에도 부산지역이 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전체		228	24.6	49.1	26.3	3.0	3,104	19.7	51.6	28.7	3.1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62.5	31.3	6.3	2.4	395	22.8	48.4	28.9	3.0
	기초자치단체	212	21.7	50.5	27.8	3.1	2,709	19.2	52.0	28.7	3.1
성별	남자	104	25.0	46.2	28.8	3.0	1,299	17.6	48.6	33.8	3.2
	여자	124	24.2	51.6	24.2	3.0	1,805	21.2	53.7	25.1	3.0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19.1	50.0	30.9	3.1	761	16.7	52.6	30.7	3.1
	1년 이상~2년 미만	82	24.4	50.0	25.6	3.0	1,117	19.6	52.6	27.8	3.1
	2년 이상~3년 미만	42	31.0	54.8	14.3	2.8	611	21.8	51.1	27.2	3.1
	3년 이상	36	27.8	38.9	33.3	3.0	615	21.5	49.1	29.4	3.1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27.8	27.8	44.4	3.2	514	18.7	52.7	28.6	3.1
	5년 이상~10년 미만	77	28.6	45.5	26.0	2.9	824	19.8	54.1	26.1	3.1
	10년 이상~15년 미만	31	22.6	58.1	19.4	3.0	437	22.7	54.2	23.1	3.0
	15년 이상~20년 미만	41	26.8	48.8	24.4	3.0	387	16.8	51.4	31.8	3.2
	20년 이상	61	18.0	55.7	26.2	3.1	942	20.0	47.6	32.5	3.1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39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33.3	53.3	13.3	2.7	377	18.6	53.3	28.1	3.1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18.5	51.9	29.6	3.1	1,349	18.4	50.9	30.7	3.1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25.8	47.8	26.4	3.0	1,378	21.3	51.7	27.0	3.0
직렬	일반직	204	23.0	50.5	26.5	3.0	1,928	19.2	50.4	30.4	3.1
	세무직	4	25.0	50.0	25.0	3.0	17	23.5	41.2	35.3	3.3
	전산직	19	42.1	36.8	21.1	2.7	79	22.8	54.4	22.8	3.0
	기타	1	0.0	0.0	100.0	4.0	1,080	20.2	53.7	26.1	3.1
직급	6급 이상	30	33.3	53.3	13.3	2.8	525	20.0	45.7	34.3	3.1
	7급	136	21.3	52.9	25.7	3.0	1,648	20.2	52.1	27.7	3.1
	8급	54	29.6	38.9	31.5	3.0	712	18.1	54.6	27.2	3.1
	9급 이하	8	12.5	37.5	50.0	3.4	219	20.1	51.6	28.3	3.1
소속 지자체	서울	25	40.0	24.0	36.0	2.9	358	21.8	49.4	28.8	3.1
	부산	16	12.5	50.0	37.5	3.4	167	13.8	48.5	37.7	3.3
	대구	9	44.4	44.4	11.1	2.7	74	14.9	60.8	24.3	3.1
	인천	11	27.3	54.5	18.2	2.9	155	17.4	53.5	29.0	3.1
	광주	5	20.0	60.0	20.0	3.0	85	25.9	51.8	22.4	2.9
	대전	6	33.3	66.7	0.0	2.7	61	24.6	52.5	23.0	3.0
	울산	6	33.3	33.3	33.3	3.0	84	27.4	54.8	17.9	2.8
	세종	1	100.0	0.0	0.0	2.0	15	20.0	33.3	46.7	3.2
	경기	29	24.1	55.2	20.7	2.9	531	20.9	54.2	24.9	3.0
	강원	19	26.3	52.6	21.1	2.9	161	19.9	57.8	22.4	3.0
	충북	12	16.7	58.3	25.0	3.1	199	26.1	44.2	29.6	3.0
	충남	15	20.0	53.3	26.7	3.1	162	15.4	50.6	34.0	3.2
	전북	13	23.1	38.5	38.5	3.3	184	17.4	48.4	34.2	3.2
	전남	20	10.0	55.0	35.0	3.3	261	19.5	52.5	28.0	3.1
	경북	22	9.1	63.6	27.3	3.2	298	16.8	54.4	28.9	3.1
	경남	18	33.3	44.4	22.2	2.8	236	18.2	49.6	32.2	3.1
	제주	1	100.0	0.0	0.0	2.0	73	17.8	43.8	38.4	3.2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 예산담당자의 경우 3.0점, 사업담당자의 경우 3.2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담당자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광역 예산담당(50.0%)>기초 예산담당(23.1%)>광역 사업담당(17.5%)>기초 사업담당(12.8%)의 순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예산담당자는 남성공무원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여성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의 경우 예산담당자와 사업담당자 모두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 근무한 경우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예산담당자이면서 6급 이상인 경우에 작성 및 취합일정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부산과 광주지역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부산지역이 3.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들이 작성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41

〈표 IV-6〉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전체		228	25.0	46.9	28.1	3.0	3,104	13.4	54.6	32.0	3.2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50.0	37.5	12.5	2.5	395	17.5	50.6	31.9	3.1	
	기초자치단체	212	23.1	47.6	29.2	3.1	2,709	12.8	55.1	32.0	3.2	
성별	남자	104	28.8	39.4	31.7	3.0	1,299	13.1	51.9	35.0	3.2	
	여자	124	21.8	53.2	25.0	3.0	1,805	13.7	56.5	29.8	3.2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22.1	42.6	35.3	3.1	761	11.3	54.4	34.3	3.2	
	1년 이상~2년 미만	82	23.2	41.5	35.4	3.1	1,117	15.1	54.3	30.5	3.2	
	2년 이상~3년 미만	42	21.4	64.3	14.3	3.0	611	13.6	55.0	31.4	3.2	
	3년 이상	36	38.9	47.2	13.9	2.7	615	12.8	54.8	32.4	3.2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11.1	27.8	61.1	3.4	514	14.4	57.4	28.2	3.1	
	5년 이상~10년 미만	77	27.3	40.3	32.5	3.0	824	14.4	54.1	31.4	3.2	
	10년 이상~15년 미만	31	29.0	51.6	19.4	2.9	437	16.0	59.3	24.7	3.1	
	15년 이상~20년 미만	41	19.5	48.8	31.7	3.1	387	11.9	50.4	37.7	3.3	
20년 이상	61	27.9	57.4	14.8	2.9	942	11.5	53.0	35.6	3.3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26.7	53.3	20.0	2.9	377	14.6	52.8	32.6	3.2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27.8	48.1	24.1	2.9	1,349	12.1	54.7	33.2	3.2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23.9	45.9	30.2	3.1	1,378	14.4	54.9	30.6	3.2	
직렬	일반직	204	24.5	45.6	29.9	3.0	1,928	12.7	53.4	33.9	3.2	
	세무직	4	50.0	50.0	0.0	2.5	17	11.8	52.9	35.3	3.4	
	전산직	19	26.3	63.2	10.5	2.7	79	19.0	48.1	32.9	3.2	
	기타	1	0.0	0.0	100.0	4.0	1,080	14.4	57.1	28.4	3.1	
직급	6급 이상	30	50.0	36.7	13.3	2.6	525	11.2	52.6	36.2	3.3	
	7급	136	19.1	55.1	25.7	3.1	1,648	13.7	54.6	31.7	3.2	
	8급	54	27.8	33.3	38.9	3.1	712	14.9	54.6	30.5	3.2	
	9급 이하	8	12.5	37.5	50.0	3.3	219	11.9	58.9	29.2	3.2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20.0	32.0	48.0	3.3	358	13.4	56.7	29.9	3.2
	부산	16	12.5	37.5	50.0	3.4	167	10.2	46.7	43.1	3.4
	대구	9	33.3	55.6	11.1	2.8	74	13.5	52.7	33.8	3.2
	인천	11	36.4	36.4	27.3	2.8	155	12.3	58.1	29.7	3.2
	광주	5	0.0	80.0	20.0	3.4	85	21.2	49.4	29.4	3.1
	대전	6	16.7	66.7	16.7	3.0	61	23.0	52.5	24.6	3.0
	울산	6	16.7	66.7	16.7	3.0	84	14.3	61.9	23.8	3.1
	세종	1	0.0	100.0	0.0	3.0	15	13.3	46.7	40.0	3.3
	경기	29	27.6	48.3	24.1	2.9	531	13.4	58.8	27.9	3.2
	강원	19	26.3	57.9	15.8	2.9	161	14.3	61.5	24.2	3.1
	충북	12	25.0	41.7	33.3	3.1	199	18.1	49.2	32.7	3.1
	충남	15	13.3	73.3	13.3	3.0	162	11.1	50.0	38.9	3.3
	전북	13	23.1	30.8	46.2	3.3	184	11.4	51.1	37.5	3.3
	전남	20	30.0	50.0	20.0	2.8	261	12.3	54.8	33.0	3.2
	경북	22	27.3	50.0	22.7	2.9	298	12.1	58.1	29.9	3.2
	경남	18	38.9	27.8	33.3	2.9	236	12.7	48.3	39.0	3.3
	제주	1	100.0	0.0	0.0	2.0	73	13.7	50.7	35.6	3.2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예산담당만 응답하였다. ‘사업부서’에서 선정하였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서’가 25.4%, ‘여성정책부서’가 23.2%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는 9.2%였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대상사업 선정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정책부서’(43.8%)와 ‘예산부서’(37.5%)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주도하였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사

업부서'(43.9%)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주도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예산부서'(24.5%)와 '여성정책부서'(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리스트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와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확정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주도했다는 응답은 광주지역에서 80.0%(세종시 100%제외)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주도했다는 응답은 서울지역에서 52.0%(제주 100%제외)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정책부서'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주도했다는 응답은 대구지역에서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절차: 예산담당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사업 부서	예산 부서	여성 정책 부서	기타	사 례 수	사업 부서	예산 부서	여성 정책 부서	기타
전체		228	42.1	25.4	23.2	9.2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18.8	37.5	43.8	0					
	기초자치단체	212	43.9	24.5	21.7	9.8					
성별	남자	104	38.5	26.0	25.0	10.6					
	여자	124	45.2	25.0	21.8	8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48.5	14.7	20.6	16.1					
	1년 이상~2년 미만	82	40.2	31.7	24.4	3.6					
	2년 이상~3년 미만	42	42.9	31.0	14.3	12					
	3년 이상	36	33.3	25.0	36.1	5.6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50.0	22.2	16.7	11.2					
	5년 이상~10년 미만	77	31.2	33.8	27.3	7.8					
	10년 이상~15년 미만	31	54.8	25.8	12.9	6.5					
	15년 이상~20년 미만	41	36.6	26.8	22.0	14.6					
	20년 이상	61	50.8	14.8	26.2	8.2					

14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사업 부서	예산 부서	여성 정책 부서	기타	사 례 수	사업 부서	예산 부서	여성 정책 부서	기타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53.3	13.3	33.3	0	해당 사항 없음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48.1	18.5	20.4	13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39.0	28.9	23.3	8.9					
직렬	일반직	204	43.6	23.5	23.5	9.3					
	세무직	4	0.0	75.0	0.0	25					
	전산직	19	36.8	36.8	21.1	5.3					
	기타	1	0.0	0.0	100.0	0					
직급	6급 이상	30	30.0	20.0	40.0	10					
	7급	136	46.3	26.5	17.6	9.5					
	8급	54	38.9	25.9	29.6	5.6					
	9급 이하	8	37.5	25.0	12.5	25					
소속 지자체	서울	25	32.0	52.0	12.0	4.0					
	부산	16	50.0	43.8	0.0	6.3					
	대구	9	22.2	11.1	66.7	0.0					
	인천	11	63.6	0.0	18.2	18.2					
	광주	5	80.0	0.0	20.0	0.0					
	대전	6	50.0	0.0	33.3	16.7					
	울산	6	33.3	16.7	50.0	0.0					
	세종	1	100.0	0.0	0.0	0.0					
	경기	29	37.9	20.7	20.7	20.6					
	강원	19	42.1	31.6	21.1	5.3					
	충북	12	41.7	33.3	16.7	8.3					
	충남	15	33.3	40.0	13.3	13.3					
	전북	13	38.5	15.4	38.5	7.7					
	전남	20	55.0	15.0	30.0	0.0					
	경북	22	22.7	22.7	36.4	18.1					
	경남	18	61.1	16.7	16.7	5.6					
제주	1	0.0	100.0	0.0	0.0						

주: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담당 그룹(B)과 비작성 그룹(C)은 무응답 제외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45

본인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업담당만 응답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점 기준에 2.8점으로 나타나 대상사업 선정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담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담당에 비해 본인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2.9점)이 여성(2.7점)보다 0.2점 높게 나타났고,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4%p가량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재직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공무원의 경우 본인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에 따라서는 여성정책업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본인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6급 이상인 공무원이 본인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경남지역이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제주지역이 2.9점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본인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사업담당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전체						3,104	37.2	40.5	22.3	2.8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395	42.5	35.4	22.0	2.7
	기초자치단체					2,709	36.4	41.2	22.4	2.8
성별	남자					1,299	35.1	38.8	26.1	2.9
	여자					1,805	38.7	41.7	19.6	2.7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761	31.4	44.3	24.3	2.9
	1년 이상~2년 미만					1,117	39.4	39.7	20.9	2.7
	2년 이상~3년 미만					611	39.4	40.1	20.5	2.7
	3년 이상					615	38.2	37.4	24.4	2.8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514	36.8	43.0	20.2	2.8
	5년 이상~10년 미만					824	40.5	39.6	19.9	2.7
	10년 이상~15년 미만					437	37.8	43.7	18.5	2.7
	15년 이상~20년 미만				해당 사항 없음	387	36.4	39.5	24.0	2.8
	20년 이상					942	34.6	38.7	26.6	2.9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377	27.6	43.5	28.9	3.0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1,349	37.3	40.0	22.8	2.8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378	39.8	40.1	20.1	2.7
직렬	일반직					1,928	36.4	40.6	23.0	2.8
	세무직					17	35.3	41.2	23.5	2.8
	전산직					79	41.8	39.2	19.0	2.7
	기타					1,080	38.4	40.3	21.3	2.8
직급	6급 이상					525	34.7	36.4	29.0	2.9
	7급					1,648	37.3	41.3	21.5	2.8
	8급					712	38.9	40.7	20.4	2.7
	9급 이하					219	37.4	43.4	19.2	2.8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47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평 균	사 례 수	적 절 하 지 않 았 다	보 통 이 다	적 절 하 였 다
소속 지자체	서울					358	43.3	36.6	20.1	2.7
	부산					167	32.3	35.9	31.7	3.0
	대구					74	48.6	32.4	18.9	2.6
	인천					155	37.4	43.2	19.4	2.8
	광주					85	40.0	37.6	22.4	2.8
	대전					61	54.1	31.1	14.8	2.4
	울산					84	47.6	38.1	14.3	2.6
	세종					15	26.7	46.7	26.7	2.9
	경기					531	41.1	40.7	18.3	2.7
	강원					161	34.8	47.2	18.0	2.8
	충북					199	40.7	40.7	18.6	2.7
	충남					162	34.6	33.3	32.1	2.9
	전북					184	34.2	39.7	26.1	2.9
	전남					261	29.1	48.7	22.2	2.9
	경북					298	30.9	49.0	20.1	2.8
	경남					236	31.4	37.3	31.4	3.0
	제주					73	34.2	31.5	34.2	2.9

주: 성인지예산서 작성 예산담당 그룹(A)과 비작성 그룹(C)는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먼저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받아서 읽어보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예산담당(91.2%)이 사업담당(52.5%)보다 훨씬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예산담당 91.5%가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7.5%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소속에서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답한 비율이 59.0%로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의 5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면서 예산담당인 경우와 남성이면서 사업담당인 경우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급의 경우 예산담당 중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답한 비율이 7급(92.6%)에서 가장 높았고, 사업담당 중에서는 6급 이상(56.6%)에서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보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광주, 세종, 충남, 제주지역의 예산담당은 100% 작성지침을 받아 읽어본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은 세종시(93.3%), 제주지역(65.8%) 순으로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49

〈표 IV-9〉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사 례 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전체		228	91.2	6.1	2.6	3,104	52.5	25.7	21.8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87.5	12.5	0.0	395	59.0	24.3	16.7
	기초자치단체	212	91.5	5.7	2.8	2,709	51.6	25.9	22.6
성별	남자	104	89.4	6.7	3.8	1,299	59.0	26.9	14.1
	여자	124	92.7	5.6	1.6	1,805	47.9	24.8	27.4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85.3	10.3	4.4	761	52.3	24.7	23.0
	1년 이상~2년 미만	82	92.7	4.9	2.4	1,117	51.0	26.6	22.4
	2년 이상~3년 미만	42	92.9	4.8	2.4	611	52.0	27.2	20.8
	3년 이상	36	97.2	2.8	0.0	615	55.9	23.7	20.3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88.9	5.6	5.6	514	47.9	22.8	29.4
	5년 이상~10년 미만	77	87.0	6.5	6.5	824	54.0	25.5	20.5
	10년 이상~15년 미만	31	90.3	9.7	0.0	437	48.3	30.2	21.5
	15년 이상~20년 미만	41	95.1	4.9	0.0	387	54.5	26.4	19.1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20년 이상	61	95.1	4.9	0.0	942	54.9	25.1	20.1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86.7	13.3	0.0	377	57.0	25.2	17.8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96.3	1.9	1.9	1,349	54.3	25.1	20.7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89.9	6.9	3.1	1,378	49.6	26.4	24.0
직렬	일반직	204	90.2	6.9	2.9	1,928	55.3	25.9	18.7
	세무직	4	100.0	0.0	0.0	17	58.8	29.4	11.8
	전산직	19	100.0	0.0	0.0	79	63.3	24.1	12.7
	기타	1	100.0	0.0	0.0	1,080	46.6	25.3	28.1
직급	6급 이상	30	86.7	13.3	0.0	525	56.6	25.7	17.7
	7급	136	92.6	5.1	2.2	1,648	52.8	26.4	20.8
	8급	54	90.7	3.7	5.6	712	51.0	25.3	23.7
	9급 이하	8	87.5	12.5	0.0	219	45.7	21.5	32.9

150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사 례 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 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소속 지자체	서울	25	92.0	4.0	4.0	358	50.8	21.2	27.9
	부산	16	100.0	0.0	0.0	167	54.5	23.4	22.2
	대구	9	88.9	11.1	0.0	74	44.6	31.1	24.3
	인천	11	90.9	9.1	0.0	155	47.7	29.0	23.2
	광주	5	100.0	0.0	0.0	85	47.1	31.8	21.2
	대전	6	83.3	0.0	16.7	61	57.4	24.6	18.0
	울산	6	83.3	0.0	16.7	84	39.3	33.3	27.4
	세종	1	100.0	0.0	0.0	15	93.3	6.7	0.0
	경기	29	79.3	17.2	3.4	531	46.0	27.5	26.6
	강원	19	94.7	5.3	0.0	161	50.9	26.1	23.0
	충북	12	91.7	8.3	0.0	199	52.3	25.6	22.1
	충남	15	100.0	0.0	0.0	162	54.3	23.5	22.2
	전북	13	92.3	7.7	0.0	184	56.0	27.2	16.8
	전남	20	90.0	10.0	0.0	261	56.3	26.4	17.2
	경북	22	90.9	4.5	4.5	298	59.7	24.5	15.8
	경남	18	94.4	0.0	5.6	236	56.8	27.5	15.7
	제주	1	100.0	0.0	0.0	73	65.8	12.3	21.9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51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산담당과 사업담당 모두 참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예산담당인 경우 73.2%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인 경우 57.0%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교육참석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과 기초에 상관없이 예산담당인 교육참석률이 사업담당인 교육참석률보다 높았다.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모두에서 남성공무원의 교육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은 예산담당인 경우 5년 미만(83.3%)에서 교육에 참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담당인 경우 15년 이상~20년 미만(59.4%), 5년 이상~10년 미만(59.3%)의 그룹에서 교육에 참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급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9급 이하(87.5%)에서, 사업담당은 7급(58.1%)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에 참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교육참석률은 전북(84.6%), 강원(84.2%), 대전(83.3%)지역의 순(세종시, 제주지역 제외)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인 교육참석률은 대전(80.3%), 경북(77.5%), 제주(63.0%)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전체		228	73.2	26.8	3,104	57.0	43.0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75.0	25.0	395	57.0	43.0	
	기초자치단체	212	73.1	26.9	2,709	57.0	43.0	
성별	남자	104	77.9	22.1	1,299	60.9	39.1	
	여자	124	69.4	30.6	1,805	54.2	45.8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67.6	32.4	761	51.8	48.2	
	1년 이상~2년 미만	82	74.4	25.6	1,117	54.8	45.2	
	2년 이상~3년 미만	42	71.4	28.6	611	63.8	36.2	
	3년 이상	36	83.3	16.7	615	60.7	39.3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83.3	16.7	514	50.4	49.6	
	5년 이상~10년 미만	77	72.7	27.3	824	59.3	40.7	
	10년 이상~15년 미만	31	71.0	29.0	437	54.7	45.3	
	15년 이상~20년 미만	41	70.7	29.3	387	59.4	40.6	
20년 이상	61	73.8	26.2	942	58.6	41.4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60.0	40.0	377	65.5	34.5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87.0	13.0	1,349	63.9	36.1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69.8	30.2	1,378	47.9	52.1
직렬	일반직	204	71.6	28.4	1,928	58.7	41.3	
	세무직	4	100.0	0.0	17	35.3	64.7	
	전산직	19	84.2	15.8	79	64.6	35.4	
	기타	1	100.0	0.0	1,080	53.7	46.3	
직급	6급 이상	30	70.0	30.0	525	60.0	40.0	
	7급	136	72.8	27.2	1,648	58.1	41.9	
	8급	54	74.1	25.9	712	54.1	45.9	
	9급 이하	8	87.5	12.5	219	50.7	49.3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53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참석 했다	참석 하지 못했다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 하지 못했다
소속 지자체	서울	25	72.0	28.0	358	51.4	48.6
	부산	16	81.3	18.8	167	59.9	40.1
	대구	9	66.7	33.3	74	51.4	48.6
	인천	11	54.5	45.5	155	58.1	41.9
	광주	5	60.0	40.0	85	57.6	42.4
	대전	6	83.3	16.7	61	80.3	19.7
	울산	6	50.0	50.0	84	61.9	38.1
	세종	1	100.0	0.0	15	33.3	66.7
	경기	29	72.4	27.6	531	58.0	42.0
	강원	19	84.2	15.8	161	36.6	63.4
	충북	12	83.3	16.7	199	48.7	51.3
	충남	15	80.0	20.0	162	56.2	43.8
	전북	13	84.6	15.4	184	56.5	43.5
	전남	20	60.0	40.0	261	52.9	47.1
	경북	22	72.7	27.3	298	77.5	22.5
	경남	18	72.2	27.8	236	54.2	45.8
	제주	1	100.0	0.0	73	63.0	37.0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모두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보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컨설팅이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담당(81.6%)이 사업담당(58.5%)에 비해 작성컨설팅을 받은 비율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사업담당이면서 여성인 경우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38.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업담당이면서 남성인 경우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45.9%)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경우(49.4%)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업담당인 경우 10년 이상~15년 미만 근무한 경우(43.0%)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을 살펴보면 8급 예산담당을 제외하고는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예산담당 8급(51.9%)과 6급 이상(45.0%)에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제주지역의 예산담당은 전원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의 예산담당은 전원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대전지역의 사업담당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이에 반해 세종시에서는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종시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컨설팅 수혜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각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중앙부처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침과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55

〈표 IV-11〉 성인지예산서 작성컨설팅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전체		228	43.9	56.1	3,104	41.3	58.7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81.3	18.8	395	58.5	41.5
	기초자치단체	212	41.0	59.0	2,709	38.8	61.2
성별	남자	104	42.3	57.7	1,299	45.9	54.1
	여자	124	45.2	54.8	1,805	38.0	62.0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38.2	61.8	761	36.8	63.2
	1년 이상~2년 미만	82	39.0	61.0	1,117	40.2	59.8
	2년 이상~3년 미만	42	59.5	40.5	611	43.9	56.1
	3년 이상	36	47.2	52.8	615	46.3	53.7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44.4	55.6	514	37.5	62.5
	5년 이상~10년 미만	77	49.4	50.6	824	42.6	57.4
	10년 이상~15년 미만	31	45.2	54.8	437	43.0	57.0
	15년 이상~20년 미만	41	41.5	58.5	387	41.9	58.1
	20년 이상	61	37.7	62.3	942	41.2	58.8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33.3	66.7	377	46.9	53.1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61.1	38.9	1,349	47.1	52.9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39.0	61.0	1,378	34.1	65.9
직렬	일반직	204	43.6	56.4	1,928	41.1	58.9
	세무직	4	50.0	50.0	17	35.3	64.7
	전산직	19	47.4	52.6	79	48.1	51.9
	기타	1	0.0	100.0	1,080	41.3	58.7
직급	6급 이상	30	50.0	50.0	525	45.0	55.0
	7급	136	39.7	60.3	1,648	42.5	57.5
	8급	54	51.9	48.1	712	37.9	62.1
	9급 이하	8	37.5	62.5	219	34.2	65.8

15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소속 지자체	서울	25	56.0	44.0	358	34.1	65.9
	부산	16	75.0	25.0	167	51.5	48.5
	대구	9	44.4	55.6	74	37.8	62.2
	인천	11	18.2	81.8	155	45.8	54.2
	광주	5	0.0	100.0	85	38.8	61.2
	대전	6	100.0	0.0	61	78.7	21.3
	울산	6	50.0	50.0	84	36.9	63.1
	세종	1	0.0	100.0	15	26.7	73.3
	경기	29	17.2	82.8	531	38.2	61.8
	강원	19	73.7	26.3	161	36.0	64.0
	충북	12	50.0	50.0	199	50.3	49.7
	충남	15	60.0	40.0	162	38.9	61.1
	전북	13	76.9	23.1	184	38.6	61.4
	전남	20	15.0	85.0	261	29.1	70.9
	경북	22	13.6	86.4	298	46.6	53.4
	경남	18	44.4	55.6	236	41.9	58.1
	제주	1	100.0	0.0	73	68.5	31.5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 변화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경험한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예산담당은 2.9점, 사업담당은 3.3점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해 보면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에 관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무원 재직기간의 경우 사업담당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점수가 나왔지만 예산담당의 경우는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들이 평가한 점수가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둘 다 수행경험이 있는 예산담당의 경우 인식변화가 크지 않다고 답한 반면 둘 다 수행경험이 있는 사업담당의 경우 인식변화가 크다고 답하여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직급에 있어서도 예산담당의 경우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인식변화가 크다고 답한 반면 사업담당의 경우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인식변화가 크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전북(61.5%), 부산(56.3%), 대전(50.0%)지역의 순으로 인식변화가 가장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의 경우 제주(56.2%), 부산(52.7%), 전북(49.5%)지역의 순으로 인식변화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2〉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전체		228	35.5	33.8	30.7	2.9	3,104	18.1	37.9	43.9	3.3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62.5	31.3	6.3	2.3	395	19.7	37.0	43.3	3.2	
	기초자치단체	212	33.5	34.0	32.5	3.0	2,709	17.9	38.1	44.0	3.3	
성별	남자	104	38.5	35.6	26.0	2.8	1,299	17.8	38.5	43.7	3.3	
	여자	124	33.1	32.3	34.7	3.0	1,805	18.4	37.5	44.1	3.3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30.9	32.4	36.8	3.0	761	15.5	38.1	46.4	3.3	
	1년 이상~2년 미만	82	31.7	36.6	31.7	3.0	1,117	17.5	38.9	43.5	3.2	
	2년 이상~3년 미만	42	50.0	26.2	23.8	2.6	611	17.8	39.6	42.6	3.3	
	3년 이상	36	36.1	38.9	25.0	2.9	615	22.8	34.1	43.1	3.2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11.1	44.4	44.4	3.3	514	16.3	40.9	42.8	3.3	
	5년 이상~10년 미만	77	36.4	24.7	39.0	2.9	824	15.7	41.0	43.3	3.3	
	10년 이상~15년 미만	31	41.9	35.5	22.6	2.8	437	19.7	38.4	41.9	3.2	
	15년 이상~20년 미만	41	31.7	43.9	24.4	3.0	387	17.8	35.1	47.0	3.3	
20년 이상	61	41.0	34.4	24.6	2.8	942	20.7	34.5	44.8	3.3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60.0	33.3	6.7	2.3	377	16.7	37.7	45.6	3.3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38.9	24.1	37.0	3.0	1,349	16.1	36.0	48.0	3.3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32.1	37.1	30.8	2.9	1,378	20.5	39.9	39.6	3.2	
직렬	일반직	204	34.3	34.8	30.9	2.9	1,928	18.0	37.0	45.0	3.3	
	세무직	4	25.0	50.0	25.0	3.0	17	23.5	29.4	47.1	3.4	
	전산직	19	47.4	21.1	31.6	2.7	79	17.7	45.6	36.7	3.2	
	기타	1	100.0	0.0	0.0	2.0	1,080	18.2	39.2	42.6	3.3	
직급	6급 이상	30	33.3	36.7	30.0	2.9	525	19.2	32.6	48.2	3.3	
	7급	136	40.4	33.1	26.5	2.8	1,648	19.3	37.3	43.4	3.3	
	8급	54	27.8	31.5	40.7	3.1	712	15.3	42.0	42.7	3.3	
	9급 이하	8	12.5	50.0	37.5	3.3	219	16.0	42.5	41.6	3.2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59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32.0	36.0	32.0	3.0	358	19.3	40.2	40.5	3.2
	부산	16	25.0	18.8	56.3	3.2	167	12.0	35.3	52.7	3.5
	대구	9	55.6	33.3	11.1	2.3	74	23.0	37.8	39.2	3.2
	인천	11	9.1	63.6	27.3	3.2	155	17.4	39.4	43.2	3.3
	광주	5	20.0	60.0	20.0	3.0	85	22.4	29.4	48.2	3.3
	대전	6	33.3	16.7	50.0	3.0	61	23.0	42.6	34.4	3.1
	울산	6	33.3	50.0	16.7	3.0	84	26.2	32.1	41.7	3.2
	세종	1	0.0	100.0	0.0	3.0	15	13.3	40.0	46.7	3.4
	경기	29	34.5	34.5	31.0	2.9	531	15.6	39.4	45.0	3.3
	강원	19	31.6	52.6	15.8	2.7	161	24.8	37.3	37.9	3.1
	충북	12	25.0	50.0	25.0	3.0	199	16.6	43.7	39.7	3.2
	충남	15	46.7	20.0	33.3	2.8	162	16.7	35.8	47.5	3.3
	전북	13	30.8	7.7	61.5	3.5	184	19.0	31.5	49.5	3.4
	전남	20	50.0	35.0	15.0	2.8	261	19.9	40.2	39.8	3.2
	경북	22	45.5	22.7	31.8	2.8	298	17.8	39.6	42.6	3.3
	경남	18	38.9	27.8	33.3	2.9	236	16.9	35.6	47.5	3.3
	제주	1	100.0	0.0	0.0	2.0	73	13.7	30.1	56.2	3.5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문항에는 예산담당이 2.4점, 사업담당이 3.1점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해 보면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에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둘 다 수행경험이 있는 예산담당의 경우 제도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낮은 반면 둘 다 수행경험이 있는 사업담당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직급에 있어서도 예산담당자의 경우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더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한 반면 사업담당자의 경우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더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자의 경우 대전(50.0%), 전북(23.1%)지역에서 더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부산(41.9%), 제주(39.7%)지역에서 더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61

〈표 IV-13〉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전체		228	53.9	32.9	13.2	2.4	3,104	24.7	41.1	34.2	3.1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75.0	18.8	6.3	2.0	395	24.1	42.0	33.9	3.1	
	기초자치단체	212	52.4	34.0	13.7	2.5	2,709	24.8	41.0	34.2	3.1	
성별	남자	104	58.7	28.8	12.5	2.4	1,299	24.9	39.0	36.1	3.1	
	여자	124	50.0	36.3	13.7	2.5	1,805	24.5	42.7	32.8	3.1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41.2	44.1	14.7	2.6	761	21.7	42.0	36.3	3.1	
	1년 이상~2년 미만	82	56.1	30.5	13.4	2.4	1,117	25.4	41.3	33.3	3.0	
	2년 이상~3년 미만	42	61.9	26.2	11.9	2.2	611	25.4	41.4	33.2	3.1	
	3년 이상	36	63.9	25.0	11.1	2.3	615	26.3	39.5	34.1	3.1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27.8	55.6	16.7	2.8	514	22.8	44.2	33.1	3.1	
	5년 이상~10년 미만	77	53.2	28.6	18.2	2.5	824	24.4	42.6	33.0	3.1	
	10년 이상~15년 미만	31	41.9	41.9	16.1	2.6	437	26.5	43.9	29.5	3.0	
	15년 이상~20년 미만	41	68.3	26.8	4.9	2.1	387	24.0	39.3	36.7	3.1	
20년 이상	20년 이상	61	59.0	31.1	9.8	2.3	942	25.4	37.7	36.9	3.1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66.7	33.3	0.0	2.1	377	24.9	38.2	36.9	3.1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57.4	27.8	14.8	2.4	1,349	22.7	40.9	36.4	3.1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51.6	34.6	13.8	2.5	1,378	26.6	42.2	31.3	3.0
직렬	일반직	204	53.4	33.3	13.2	2.4	1,928	24.3	39.9	35.7	3.1	
	세무직	4	50.0	25.0	25.0	2.5	17	29.4	29.4	41.2	3.2	
	전산직	19	57.9	31.6	10.5	2.4	79	25.3	48.1	26.6	2.9	
	기타	1	100.0	0.0	0.0	2.0	1,080	25.2	43.0	31.9	3.1	
직급	6급 이상	30	63.3	23.3	13.3	2.3	525	23.2	38.5	38.3	3.2	
	7급	136	56.6	33.1	10.3	2.4	1,648	26.2	40.4	33.4	3.0	
	8급	54	48.1	31.5	20.4	2.6	712	22.6	44.0	33.4	3.1	
	9급 이하	8	12.5	75.0	12.5	3.0	219	23.3	44.3	32.4	3.1	

16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48.0	40.0	12.0	2.4	358	27.9	38.8	33.2	3.0
	부산	16	43.8	37.5	18.8	2.7	167	12.6	45.5	41.9	3.3
	대구	9	77.8	22.2	0.0	1.9	74	28.4	40.5	31.1	3.0
	인천	11	63.6	27.3	9.1	2.4	155	20.6	45.2	34.2	3.1
	광주	5	40.0	40.0	20.0	2.8	85	30.6	34.1	35.3	3.0
	대전	6	50.0	0.0	50.0	2.7	61	31.1	42.6	26.2	2.9
	울산	6	50.0	33.3	16.7	2.5	84	28.6	33.3	38.1	3.1
	세종	1	100.0	0.0	0.0	2.0	15	40.0	33.3	26.7	2.9
	경기	29	44.8	41.4	13.8	2.6	531	23.9	42.0	34.1	3.1
	강원	19	63.2	36.8	0.0	2.2	161	34.8	38.5	26.7	2.8
	충북	12	41.7	41.7	16.7	2.5	199	26.6	44.2	29.1	3.0
	충남	15	40.0	40.0	20.0	2.7	162	25.3	38.9	35.8	3.1
	전북	13	53.8	23.1	23.1	2.7	184	27.2	37.0	35.9	3.1
	전남	20	60.0	35.0	5.0	2.3	261	23.8	45.2	31.0	3.0
	경북	22	59.1	27.3	13.6	2.5	298	20.5	43.3	36.2	3.2
	경남	18	66.7	22.2	11.1	2.3	236	23.7	38.1	38.1	3.2
	제주	1	100.0	0.0	0.0	1.0	73	15.1	45.2	39.7	3.3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문항에는 예산담당이 2.8점, 사업담당이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해 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더 낮은 점수를 주었고, 사업담당인 경우 미세하기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사업담당에서는 남성공무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의 경우 예산담당은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 사업담당은 근무기간이 긴 경우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직급의 경우에도 예산담당은 직급이 낮은 경우에, 사업담당은 직급이 높은 경우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대전(50.0%), 부산(43.8%)지역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인 경우 세종(53.3%), 제주(52.1%)지역에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1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전체		228	34.2	41.7	24.1	2.8	3,104	18.3	41.2	40.5	3.2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50.0	37.5	12.5	2.5	395	18.5	38.5	43.0	3.2	
	기초자치단체	212	33.0	42.0	25.0	2.9	2,709	18.2	41.6	40.1	3.2	
성별	남자	104	38.5	40.4	21.2	2.8	1,299	16.9	41.0	42.0	3.3	
	여자	124	30.6	42.7	26.6	2.9	1,805	19.2	41.4	39.4	3.2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23.5	45.6	30.9	3.0	761	16.0	41.9	42.0	3.3	
	1년 이상~2년 미만	82	35.4	40.2	24.4	2.9	1,117	19.2	41.0	39.8	3.2	
	2년 이상~3년 미만	42	45.2	38.1	16.7	2.6	611	19.8	41.2	39.0	3.2	
	3년 이상	36	38.9	41.7	19.4	2.8	615	17.9	40.8	41.3	3.2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5.6	61.1	33.3	3.3	514	16.3	45.9	37.7	3.2	
	5년 이상~10년 미만	77	32.5	33.8	33.8	2.9	824	18.9	41.5	39.6	3.2	
	10년 이상~15년 미만	31	32.3	41.9	25.8	2.9	437	20.1	44.6	35.2	3.2	
	15년 이상~20년 미만	41	48.8	34.1	17.1	2.7	387	15.2	40.6	44.2	3.3	
20년 이상	61	36.1	50.8	13.1	2.7	942	19.1	37.2	43.7	3.3		
	여성정책/ 성별영향분 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46.7	46.7	6.7	2.5	377	19.4	39.0	41.6	3.2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29.6	38.9	31.5	3.0	1,349	15.8	39.4	44.8	3.3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34.6	42.1	23.3	2.8	1,378	20.4	43.7	35.9	3.1
직렬	일반직	204	33.3	42.2	24.5	2.9	1,928	18.5	39.2	42.4	3.2	
	세무직	4	50.0	25.0	25.0	2.8	17	29.4	17.6	52.9	3.3	
	전산직	19	36.8	42.1	21.1	2.8	79	20.3	45.6	34.2	3.1	
	기타	1	100.0	0.0	0.0	2.0	1,080	17.6	45.0	37.4	3.2	
직급	6급 이상	30	43.3	40.0	16.7	2.7	525	16.4	36.2	47.4	3.3	
	7급	136	38.2	40.4	21.3	2.8	1,648	19.6	40.8	39.6	3.2	
	8급	54	22.2	44.4	33.3	3.1	712	17.1	44.1	38.8	3.2	
	9급 이하	8	12.5	50.0	37.5	3.3	219	16.4	47.5	36.1	3.2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65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32.0	44.0	24.0	2.8	358	21.5	39.9	38.5	3.1
	부산	16	18.8	37.5	43.8	3.3	167	9.6	41.9	48.5	3.5
	대구	9	55.6	33.3	11.1	2.3	74	23.0	36.5	40.5	3.2
	인천	11	27.3	54.5	18.2	2.9	155	16.8	44.5	38.7	3.2
	광주	5	0.0	60.0	40.0	3.4	85	22.4	32.9	44.7	3.2
	대전	6	50.0	0.0	50.0	2.7	61	24.6	34.4	41.0	3.1
	울산	6	33.3	50.0	16.7	3.0	84	23.8	38.1	38.1	3.1
	세종	1	0.0	100.0	0.0	3.0	15	13.3	33.3	53.3	3.4
	경기	29	27.6	44.8	27.6	2.9	531	19.0	43.1	37.9	3.2
	강원	19	36.8	52.6	10.5	2.7	161	21.7	44.1	34.2	3.1
	충북	12	33.3	41.7	25.0	2.8	199	17.6	45.2	37.2	3.1
	충남	15	33.3	46.7	20.0	2.9	162	17.3	40.7	42.0	3.3
	전북	13	30.8	38.5	30.8	3.0	184	18.5	37.5	44.0	3.3
	전남	20	35.0	55.0	10.0	2.8	261	19.5	44.4	36.0	3.1
	경북	22	45.5	22.7	31.8	2.8	298	14.1	44.0	41.9	3.3
	경남	18	44.4	33.3	22.2	2.7	236	18.2	35.6	46.2	3.3
	제주	1	100.0	0.0	0.0	1.0	73	8.2	39.7	52.1	3.5

주: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 그룹(C)은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제외

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은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에 모두 해당되는 항목이다.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성인지예산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한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식의 경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세 항목 모두에 대해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이 작성 공무원에 비해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취지나 효과에 대해 비작성 공무원이 작성 공무원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비작성 공무원은 3.5점, 작성 공무원 중 사업담당은 3.2점, 예산담당은 2.7점을 부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예산담당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예산담당에 비해 제도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답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의 경우 예산담당은 5년 미만 근무한 경우 2.9점, 사업담당은 5년 미만과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3.2점, 비작성 공무원은 15년 이상~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3.6점으로 나타나 해당 그룹에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67

응답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직급별로 2점대, 사업담당 및 비작성 공무원은 3점대로 예산담당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예산담당의 직급별 차이가 최대 0.5점으로 나타나 직급별 다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예산담당 중 직급이 높을수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광주와 대전지역이 3.0점, 사업담당 의 경우 부산과 제주지역이 3.4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광주지역이 3.7점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산담당 대구, 세종지역 2.0점, 비작성 공무원 세종지역 2.5점으로 낮은 동의정도가 조사되었다.

〈표 Ⅳ-15〉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전체	228	41.7	36.0	20.2	2.2	2.7	3,104	19.3	42.4	35.6	2.7	3.2	2,000	16.3	27.9	53.4	2.5	3.5	
근무 지역	광역	16	68.8	25.0	6.3	0.0	2.2	395	17.7	42.5	35.9	3.8	3.2	277	18.8	25.3	53.8	2.2	3.4
	기초	212	39.6	36.8	21.2	2.4	2.7	2,709	19.5	42.3	35.6	2.6	3.2	1,723	15.9	28.3	53.3	2.6	3.5
성별	남자	104	41.3	41.3	15.4	1.9	2.7	1,299	17.8	42.6	37.1	2.5	3.2	1,158	17.4	28.2	51.7	2.6	3.4
	여자	124	41.9	31.5	24.2	2.4	2.7	1,805	20.3	42.2	34.6	2.9	3.1	842	14.7	27.3	55.6	2.4	3.5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32.4	41.2	25.0	1.5	2.8	761	16.0	47.0	34.4	2.5	3.2	662	13.1	29.2	55.0	2.7	3.5
	1년~2년미만	82	41.5	31.7	23.2	3.7	2.8	1,117	18.3	42.7	36.6	2.4	3.2	659	17.9	28.1	52.0	2.0	3.4
	2년~3년미만	42	47.6	42.9	9.5	0.0	2.4	611	22.4	40.6	33.7	3.3	3.1	318	17.9	25.8	53.1	3.1	3.4
	3년이상	36	52.8	27.8	16.7	2.8	2.5	615	22.0	37.7	37.2	3.1	3.1	360	17.8	26.9	52.8	2.5	3.4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33.3	33.3	33.3	0.0	2.9	514	14.8	46.9	34.2	4.1	3.2	481	16.0	32.0	49.5	2.5	3.4
	5년~10년미만	77	33.8	32.5	27.3	6.5	2.8	824	19.9	43.7	33.5	2.9	3.1	414	16.7	30.0	49.5	3.9	3.4
	10년~15년미만	31	35.5	48.4	16.1	0.0	2.8	437	21.7	43.2	32.7	2.3	3.1	178	15.7	34.8	48.3	1.1	3.4
	15년~20년미만	41	56.1	31.7	12.2	0.0	2.5	387	17.8	40.1	40.1	2.1	3.2	227	13.7	24.2	58.6	3.5	3.6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20년이상	61	47.5	37.7	14.8	0.0	2.6	942	20.6	39.3	37.8	2.3	3.2	697	17.4	23.2	57.7	1.7	3.5
	둘다경험 유	15	33.3	53.3	6.7	6.7	2.7	377	22.8	34.7	39.8	2.7	3.1	81	23.5	16.0	59.3	1.2	3.6
	하나만경험 유	54	44.4	37.0	16.7	1.9	2.6	1,349	17.9	40.9	38.6	2.5	3.2	332	18.4	30.4	49.7	1.5	3.4
	둘다경험 무	159	41.5	34.0	22.6	1.9	2.7	1,378	19.6	45.9	31.6	3.0	3.1	1,587	15.5	27.9	53.8	2.8	3.5
직렬	일반직	204	42.2	35.3	20.1	2.5	2.7	1,928	19.0	40.9	37.6	2.4	3.2	1,447	16.4	26.8	54.5	2.3	3.5
	세무직	4	25.0	50.0	25.0	0.0	2.8	17	29.4	29.4	41.2	0.0	3.2	45	15.6	26.7	53.3	4.4	3.5
	전산직	19	36.8	42.1	21.1	0.0	2.8	79	17.7	45.6	32.9	3.8	3.1	52	15.4	26.9	53.8	3.8	3.4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19.6	44.9	32.2	3.2	3.1	456	16.0	31.4	49.8	2.9	3.4
직급	6급 이상	30	56.7	30.0	13.3	0.0	2.4	525	17.5	38.7	41.5	2.3	3.2	537	15.1	21.4	60.9	2.6	3.6
	7급	136	41.2	41.2	16.2	1.5	2.7	1,648	21.4	41.3	34.8	2.5	3.1	728	19.1	27.6	51.4	1.9	3.4
	8급	54	35.2	25.9	33.3	5.6	2.9	712	16.4	45.6	34.3	3.7	3.2	480	14.4	34.2	48.1	3.3	3.4
	9급 이하	8	37.5	37.5	25.0	0.0	2.8	219	16.4	48.4	32.4	2.7	3.2	255	14.5	30.2	52.9	2.4	3.5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69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 속 지 자 체	서울	25	32.0	40.0	16.0	12.0	2.7	358	21.5	42.7	32.1	3.6	3.1	312	15.7	28.2	54.5	1.6	3.5
	부산	16	43.8	18.8	37.5	0.0	2.9	167	12.0	34.7	52.7	0.6	3.4	105	10.5	27.6	60.0	1.9	3.6
	대구	9	77.8	11.1	11.1	0.0	2.0	74	20.3	47.3	28.4	4.1	3.1	76	13.2	21.1	61.8	3.9	3.6
	인천	11	36.4	45.5	18.2	0.0	2.8	155	16.1	42.6	39.4	1.9	3.2	88	9.1	38.6	50.0	2.3	3.5
	광주	5	20.0	60.0	20.0	0.0	3.0	85	20.0	42.4	36.5	1.2	3.2	48	12.5	18.8	64.6	4.2	3.7
	대전	6	33.3	16.7	50.0	0.0	3.0	61	27.9	37.7	32.8	1.6	2.9	35	25.7	20.0	51.4	2.9	3.3
	울산	6	50.0	16.7	33.3	0.0	2.7	84	25.0	42.9	28.6	3.6	2.9	47	12.8	29.8	57.4	0.0	3.5
	세종	1	100.0	0.0	0.0	0.0	2.0	15	6.7	40.0	46.7	6.7	3.4	6	16.7	50.0	0.0	33.3	2.5
	경기	29	41.4	44.8	13.8	0.0	2.6	531	19.0	43.9	33.5	3.6	3.1	341	17.0	31.1	49.3	2.6	3.4
	강원	19	47.4	42.1	10.5	0.0	2.5	161	23.0	41.6	32.3	3.1	3.1	103	17.5	29.1	49.5	3.9	3.4
	충북	12	41.7	41.7	16.7	0.0	2.7	199	17.6	45.7	31.7	5.0	3.1	97	18.6	26.8	50.5	4.1	3.4
	충남	15	26.7	46.7	26.7	0.0	2.9	162	21.0	34.0	43.8	1.2	3.2	118	16.9	26.3	54.2	2.5	3.5
	전북	13	53.8	30.8	15.4	0.0	2.5	184	19.6	41.3	38.6	0.5	3.2	109	20.2	33.0	42.2	4.6	3.3
	전남	20	50.0	30.0	20.0	0.0	2.7	261	20.3	46.7	30.3	2.7	3.1	136	15.4	28.7	55.1	0.7	3.5
	경북	22	31.8	45.5	13.6	9.1	2.9	298	18.8	46.3	32.9	2.0	3.1	180	17.2	23.9	56.7	2.2	3.5
	경남	18	38.9	27.8	33.3	0.0	2.9	236	18.6	39.4	39.0	3.0	3.2	170	18.2	24.1	55.9	1.8	3.5
	제주	1	100.0	0.0	0.0	0.0	1.0	73	12.3	37.0	47.9	2.7	3.4	29	24.1	17.2	58.6	0.0	3.5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작성 공무원이 3.4점, 사업담당이 3.1점, 예산담당이 2.6점은 순으로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업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각각 광역과 기초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지만, 예산담당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점수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점수보다 0.4점 높게 나왔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남성공무원에 비해 여성공무원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사업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3점대로 나타났지만 예산담당인 경우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들이 준 3.0점을 제외하고는 2점대로 낮은 동의정도가 나타났고 재직기간별로 최대 0.6점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 직급의 경우 사업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3점대로 나타났지만 예산담당인 경우 9급 이하 공무원이 준 3.0점을 제외하고는 2점대로 낮은 동의정도가 나타났다. 또한 예산담당인 경우 9급 이하에서 3.0점, 사업담당인 경우 6급 이상에서 3.2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에서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2.8점, 사업담당인 경우 부산과 제주지역에서 3.3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3.6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가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71

〈표 IV-16〉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균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균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균
전체	228	47.8	36.4	14.0	1.8	2.6	3,104	22.0	42.3	33.4	2.3	3.1	2,000	17.9	29.7	49.8	2.6	3.4			
근무 지역	광역	16	68.8	25.0	6.3	0.0	2.2	395	22.0	41.5	33.7	2.8	3.1	277	20.9	24.9	53.1	1.1	3.4		
	기초	212	46.2	37.3	14.6	1.9	2.6	2,709	22.0	42.4	33.3	2.2	3.1	1,723	17.4	30.5	49.3	2.8	3.4		
성별	남자	104	50.0	34.6	14.4	1.0	2.5	1,299	20.1	40.1	37.6	2.2	3.2	1,158	20.0	29.2	47.9	2.8	3.3		
	여자	124	46.0	37.9	13.7	2.4	2.6	1,805	23.4	43.9	30.3	2.4	3.0	842	15.0	30.4	52.4	2.3	3.5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32.4	47.1	17.6	2.9	2.7	761	20.5	44.2	33.0	2.4	3.1	662	16.3	30.1	50.8	2.9	3.4		
	1년~2년미만	82	51.2	31.7	14.6	2.4	2.6	1,117	21.2	43.5	32.9	2.3	3.1	659	18.1	30.5	48.9	2.6	3.4		
	2년~3년미만	42	59.5	35.7	4.8	0.0	2.3	611	24.4	42.4	31.4	1.8	3.1	318	20.4	28.3	49.1	2.2	3.3		
	3년이상	36	55.6	27.8	16.7	0.0	2.5	615	23.1	37.7	36.6	2.6	3.1	360	18.3	28.9	50.3	2.5	3.4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33.3	33.3	33.3	0.0	3.0	514	18.7	46.5	30.9	3.9	3.1	481	16.0	34.7	45.9	3.3	3.3		
	5년~10년미만	77	44.2	31.2	19.5	5.2	2.7	824	22.3	43.7	31.3	2.7	3.1	414	18.6	31.9	46.1	3.4	3.3		
	10년~15년미만	31	45.2	41.9	12.9	0.0	2.6	437	24.7	43.7	29.3	2.3	3.0	178	22.5	32.0	43.8	1.7	3.2		
	15년~20년미만	41	53.7	39.0	7.3	0.0	2.4	387	19.9	40.8	38.0	1.3	3.2	227	15.0	29.1	54.2	1.8	3.4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5년 이상	61	54.1	39.3	6.6	0.0	2.4	942	23.2	38.7	36.5	1.5	3.1	697	18.7	24.5	54.8	2.0	3.4		
	둘다경험 유	15	60.0	33.3	0.0	6.7	2.1	377	25.5	35.5	36.3	2.7	3.1	81	21.0	23.5	55.6	0.0	3.4		
	하나만경험 유	54	42.6	44.4	9.3	3.7	2.6	1,349	20.1	41.6	36.8	1.6	3.2	332	20.2	30.7	46.7	2.4	3.3		
	둘다경험 무	159	48.4	34.0	17.0	0.6	2.6	1,378	23.0	44.8	29.2	2.9	3.0	1,587	17.3	29.8	50.2	2.8	3.4		
직렬	일반직	204	48.5	36.3	13.2	2.0	2.5	1,928	22.0	41.9	34.0	2.1	3.1	1,447	18.4	28.7	50.5	2.4	3.4		
	세무직	4	25.0	25.0	50.0	0.0	3.0	17	29.4	23.5	47.1	0.0	3.3	45	15.6	37.8	44.4	2.2	3.4		
	전산직	19	42.1	42.1	15.8	0.0	2.7	79	16.5	49.4	30.4	3.8	3.1	52	15.4	36.5	44.2	3.8	3.2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22.4	42.8	32.3	2.5	3.1	456	16.9	31.4	48.7	3.1	3.4		
직급	6급 이상	30	50.0	43.3	6.7	0.0	2.4	525	20.2	39.2	39.0	1.5	3.2	537	17.3	23.8	56.8	2.0	3.5		
	7급	136	50.0	38.2	10.3	1.5	2.5	1,648	24.2	41.1	32.9	1.9	3.1	728	21.0	29.7	47.4	1.9	3.3		
	8급	54	44.4	27.8	25.9	1.9	2.7	712	20.6	44.4	31.6	3.4	3.1	480	16.3	34.4	45.4	4.0	3.3		
	9급 이하	8	25.0	37.5	25.0	12.5	3.0	219	15.1	52.1	29.2	3.7	3.1	255	13.3	33.3	50.2	3.1	3.4		

17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 속 지 자 체	서울	25	44.0	40.0	8.0	8.0	2.5	358	23.7	39.1	33.8	3.4	3.0	312	16.0	27.9	53.8	2.2	3.4
	부산	16	43.8	37.5	18.8	0.0	2.7	167	13.2	42.5	43.7	0.6	3.3	105	12.4	26.7	59.0	1.9	3.6
	대구	9	77.8	11.1	11.1	0.0	2.0	74	24.3	39.2	33.8	2.7	3.1	76	9.2	28.9	56.6	5.3	3.5
	인천	11	54.5	36.4	9.1	0.0	2.5	155	20.6	46.5	31.0	1.9	3.1	88	15.9	34.1	47.7	2.3	3.4
	광주	5	20.0	60.0	20.0	0.0	3.0	85	18.8	42.4	35.3	3.5	3.2	48	18.8	22.9	54.2	4.2	3.4
	대전	6	33.3	16.7	50.0	0.0	2.8	61	36.1	36.1	26.2	1.6	2.8	35	20.0	37.1	42.9	0.0	3.2
	울산	6	50.0	50.0	0.0	0.0	2.5	84	28.6	38.1	29.8	3.6	2.9	47	17.0	31.9	51.1	0.0	3.3
	세종	1	100.0	0.0	0.0	0.0	2.0	15	33.3	40.0	26.7	0.0	2.9	6	16.7	33.3	33.3	16.7	3.0
	경기	29	48.3	48.3	3.4	0.0	2.4	531	20.3	46.0	32.0	1.7	3.1	341	18.2	30.8	48.4	2.6	3.4
	강원	19	52.6	31.6	15.8	0.0	2.5	161	26.7	41.0	29.2	3.1	3.0	103	30.1	24.3	43.7	1.9	3.1
	충북	12	50.0	25.0	25.0	0.0	2.5	199	17.6	49.7	27.6	5.0	3.1	97	19.6	34.0	42.3	4.1	3.3
	충남	15	40.0	33.3	26.7	0.0	2.8	162	27.2	37.0	34.6	1.2	3.1	118	19.5	27.1	50.8	2.5	3.4
	전북	13	53.8	38.5	7.7	0.0	2.5	184	22.3	38.6	38.6	0.5	3.2	109	24.8	24.8	46.8	3.7	3.2
	전남	20	45.0	35.0	15.0	5.0	2.7	261	23.4	46.4	27.6	2.7	3.0	136	11.0	36.0	49.3	3.7	3.5
	경북	22	45.5	36.4	13.6	4.5	2.7	298	22.1	41.9	34.2	1.7	3.1	180	20.0	29.4	48.3	2.2	3.3
	경남	18	44.4	38.9	16.7	0.0	2.6	236	20.8	39.8	37.3	2.1	3.2	170	17.1	33.5	47.6	1.8	3.3
	제주	1	100.0	0.0	0.0	0.0	1.0	73	12.3	37.0	47.9	2.7	3.4	29	24.1	17.2	58.6	0.0	3.5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작성 공무원이 3.2점, 사업담당이 3.0점, 예산담당이 2.4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경우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경우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사업담당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는 남성공무원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점수가 높았고, 사업담당은 여성공무원에 비해 남성공무원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이 재직기간별 최대 0.7점 차이가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예산담당이 직급별 최대 0.6점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업담당 및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별 유사한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공무원들이 예산담당(2.6점), 사업담당(3.3점), 비작성 공무원(3.4점)으로 해당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전체	228	51.8	35.1	12.3	0.9	2.4	3,104	26.0	44.3	27.3	2.4	3.0	2,000	22.5	35.4	39.9	2.3	3.2	
근무 지역	광역	16	81.3	12.5	6.3	0.0	1.9	395	24.6	45.8	26.3	3.3	3.0	277	26.0	33.9	39.4	0.7	3.1
	기초	212	49.5	36.8	12.7	0.9	2.5	2,709	26.2	44.0	27.4	2.3	3.0	1,723	21.9	35.6	40.0	2.6	3.2
성별	남자	104	53.8	36.5	8.7	1.0	2.3	1,299	23.7	44.7	28.9	2.7	3.0	1,158	24.8	35.7	37.2	2.3	3.1
	여자	124	50.0	33.9	15.3	0.8	2.5	1,805	27.6	43.9	26.1	2.3	2.9	842	19.2	34.9	43.6	2.3	3.3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41.2	42.6	14.7	1.5	2.6	761	23.4	49.1	25.4	2.1	3.0	662	19.8	36.0	41.7	2.6	3.2
	1년~2년미만	82	52.4	32.9	13.4	1.2	2.5	1,117	26.6	44.1	26.6	2.7	2.9	659	22.8	36.6	38.7	2.0	3.2
	2년~3년미만	42	61.9	28.6	9.5	0.0	2.2	611	27.7	40.3	29.6	2.5	3.0	318	25.5	31.8	40.6	2.2	3.2
	3년이상	36	58.3	33.3	8.3	0.0	2.3	615	26.5	42.4	28.6	2.4	3.0	360	24.2	35.3	38.1	2.5	3.1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33.3	38.9	27.8	0.0	2.9	514	22.6	51.2	23.2	3.1	3.0	481	19.5	40.7	36.2	3.5	3.2
	5년~10년미만	77	50.6	32.5	14.3	2.6	2.4	824	26.9	46.2	23.8	3.0	2.9	414	26.3	36.2	33.8	3.6	3.1
	10년~15년미만	31	45.2	41.9	12.9	0.0	2.6	437	27.5	45.1	25.2	2.3	2.9	178	26.4	35.4	37.6	0.6	3.1
	15년~20년미만	41	63.4	29.3	7.3	0.0	2.2	387	24.0	41.6	31.8	2.6	3.0	227	22.5	36.1	39.6	1.8	3.2
	20년이상	61	54.1	37.7	8.2	0.0	2.4	942	27.2	39.5	31.7	1.6	3.0	697	21.2	30.8	46.6	1.3	3.3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60.0	13.3	20.0	6.7	2.3	377	29.2	39.0	29.4	2.4	3.0	81	23.5	29.6	45.7	1.2	3.3
	하나만경험 유	54	53.7	31.5	14.8	0.0	2.4	1,349	24.5	42.9	30.4	2.2	3.0	332	27.1	33.1	38.9	0.9	3.1
	둘다경험 무	159	50.3	38.4	10.7	0.6	2.5	1,378	26.6	47.0	23.7	2.7	2.9	1,587	21.4	36.1	39.8	2.6	3.2
직렬	일반직	204	52.5	34.8	11.8	1.0	2.4	1,928	26.2	43.4	28.2	2.2	3.0	1,447	23.6	34.7	39.9	1.9	3.2
	세무직	4	25.0	25.0	50.0	0.0	3.3	17	23.5	35.3	41.2	0.0	3.2	45	15.6	42.2	40.0	2.2	3.3
	전산직	19	47.4	42.1	10.5	0.0	2.5	79	30.4	46.8	17.7	5.1	2.8	52	25.0	40.4	32.7	1.9	3.0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25.3	45.7	26.2	2.8	3.0	456	19.3	36.2	40.8	3.7	3.3
직급	6급 이상	30	53.3	40.0	6.7	0.0	2.3	525	25.5	40.2	33.0	1.3	3.0	537	20.9	29.8	48.2	1.1	3.3
	7급	136	53.7	35.3	10.3	0.7	2.4	1,648	28.1	42.4	27.4	2.1	2.9	728	25.3	36.3	36.7	1.8	3.1
	8급	54	50.0	29.6	18.5	1.9	2.5	712	23.3	47.9	24.9	3.9	3.0	480	21.9	39.0	35.2	4.0	3.2
	9급 이하	8	25.0	50.0	25.0	0.0	2.9	219	20.1	56.2	21.0	2.7	3.0	255	18.8	37.6	40.4	3.1	3.2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75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 속 지 자 체	서울	25	64.0	20.0	12.0	4.0	2.2	358	28.2	40.2	28.2	3.4	2.9	312	17.6	35.9	44.6	1.9	3.3
	부산	16	43.8	43.8	12.5	0.0	2.6	167	18.0	37.1	43.1	1.8	3.3	105	14.3	34.3	49.5	1.9	3.4
	대구	9	77.8	22.2	0.0	0.0	1.8	74	20.3	43.2	29.7	6.8	3.1	76	17.1	35.5	44.7	2.6	3.3
	인천	11	45.5	45.5	9.1	0.0	2.6	155	26.5	49.7	22.6	1.3	2.9	88	17.0	43.2	37.5	2.3	3.3
	광주	5	60.0	20.0	20.0	0.0	2.4	85	29.4	35.3	34.1	1.2	3.1	48	20.8	37.5	37.5	4.2	3.2
	대전	6	33.3	50.0	16.7	0.0	2.5	61	39.3	42.6	16.4	1.6	2.6	35	22.9	31.4	42.9	2.9	3.1
	울산	6	50.0	33.3	16.7	0.0	2.5	84	26.2	51.2	21.4	1.2	2.8	47	23.4	36.2	40.4	0.0	3.2
	세종	1	100.0	0.0	0.0	0.0	2.0	15	26.7	53.3	20.0	0.0	2.8	6	33.3	50.0	0.0	16.7	2.4
	경기	29	41.4	48.3	10.3	0.0	2.6	531	26.0	46.5	25.0	2.4	2.9	341	22.9	37.0	37.2	2.9	3.2
	강원	19	57.9	36.8	5.3	0.0	2.2	161	30.4	46.6	19.9	3.1	2.8	103	29.1	31.1	37.9	1.9	3.1
	충북	12	50.0	25.0	25.0	0.0	2.5	199	27.1	45.2	23.1	4.5	2.9	97	25.8	33.0	38.1	3.1	3.1
	충남	15	53.3	33.3	13.3	0.0	2.5	162	25.9	43.2	28.4	2.5	3.0	118	24.6	33.1	39.0	3.4	3.1
	전북	13	53.8	46.2	0.0	0.0	2.4	184	27.2	38.6	32.6	1.6	3.1	109	30.3	30.3	36.7	2.8	3.0
	전남	20	55.0	25.0	20.0	0.0	2.5	261	26.4	46.0	24.9	2.7	3.0	136	20.6	39.7	36.0	3.7	3.2
	경북	22	40.9	45.5	9.1	4.5	2.5	298	23.2	49.0	26.8	1.0	3.0	180	25.0	33.9	39.4	1.7	3.2
	경남	18	50.0	27.8	22.2	0.0	2.6	236	24.6	43.2	30.1	2.1	3.0	170	24.7	35.3	40.0	0.0	3.1
	제주	1	100.0	0.0	0.0	0.0	2.0	73	21.9	42.5	32.9	2.7	3.1	29	34.5	27.6	37.9	0.0	3.1

나.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비작성 공무원이 작성 공무원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 비작성 공무원이 3.4점, 사업담당이 3.2점, 예산담당이 2.8점 순으로 동의정도가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업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응답결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예산담당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지자체장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 사업담당, 비작성 공무원 모두에서 남성공무원의 평가정도가 여성공무원의 평가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직급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9급 이하에서 3.3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에서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인 경우 9급 이하에서 3.1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급에서 3.2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인천지역에서 3.3점, 사업담당인 경우도 인천지역에서 3.4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세종지역에서 3.7점으로 지자체장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77

〈표 IV-18〉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전체	228	31.6	47.4	18.9	2.2	2.8	3,104	15.1	45.0	32.3	7.6	3.2	2,000	10.2	38.6	41.2	10.1	3.4	
근무	광역	16	62.5	25.0	12.5	0.0	2.4	395	13.7	49.1	28.1	9.1	3.2	277	10.5	34.7	44.0	10.8	3.4
	기초	212	29.2	49.1	19.3	2.4	2.9	2,709	15.3	44.4	33.0	7.3	3.2	1,723	10.2	39.2	40.7	9.9	3.4
성별	남자	104	28.8	48.1	21.2	1.9	2.9	1,299	12.9	43.2	37.5	6.5	3.3	1,158	9.7	35.8	43.9	10.7	3.5
	여자	124	33.9	46.8	16.9	2.4	2.8	1,805	16.7	46.3	28.6	8.4	3.1	842	10.9	42.4	37.5	9.1	3.3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23.5	50.0	22.1	4.4	2.9	761	12.6	44.7	35.5	7.2	3.3	662	11.3	39.0	38.7	11.0	3.4
	1년~2년미만	82	28.0	47.6	22.0	2.4	2.9	1,117	15.8	46.3	30.6	7.3	3.2	659	9.1	40.4	41.7	8.8	3.4
	2년~3년미만	42	45.2	45.2	9.5	0.0	2.6	611	17.0	45.2	29.6	8.2	3.1	318	11.0	36.8	41.2	11.0	3.4
	3년이상	36	38.9	44.4	16.7	0.0	2.8	615	15.0	42.9	34.3	7.8	3.2	360	9.4	36.1	45.0	9.4	3.5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11.1	66.7	16.7	5.6	3.1	514	14.0	46.7	31.1	8.2	3.2	481	10.8	42.0	33.7	13.5	3.3
	5년~10년미만	77	33.8	49.4	15.6	1.3	2.7	824	15.4	49.2	28.0	7.4	3.1	414	9.7	42.3	35.3	12.8	3.3
	10년~15년미만	31	16.1	48.4	25.8	9.7	3.1	437	18.8	43.2	30.2	7.8	3.1	178	14.0	34.8	39.3	11.8	3.3
	15년~20년미만	41	36.6	43.9	19.5	0.0	2.9	387	14.0	43.4	33.1	9.6	3.2	227	10.1	34.4	47.6	7.9	3.5
	20년이상	61	39.3	41.0	19.7	0.0	2.8	942	14.1	41.9	37.5	6.5	3.3	697	9.2	36.4	48.4	6.0	3.5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33.3	40.0	20.0	6.7	2.7	377	18.0	42.4	33.7	5.8	3.2	81	14.8	28.4	53.1	3.7	3.6
	하나만경험 유	54	22.2	53.7	22.2	1.9	3.0	1,349	14.4	44.7	33.1	7.8	3.2	332	11.1	39.2	41.0	8.7	3.4
	둘다경험 무	159	34.6	45.9	17.6	1.9	2.8	1,378	14.9	46.0	31.2	7.8	3.2	1,587	9.8	38.9	40.6	10.6	3.4
직렬	일반직	204	29.9	48.0	19.6	2.5	2.9	1,928	14.7	44.4	33.9	7.0	3.2	1,447	10.5	37.0	43.1	9.4	3.4
	세무직	4	50.0	25.0	25.0	0.0	2.5	17	17.6	35.3	41.2	5.9	3.4	45	2.2	40.0	51.1	6.7	3.7
	전산직	19	42.1	47.4	10.5	0.0	2.7	79	16.5	46.8	22.8	13.9	3.1	52	5.8	34.6	50.0	9.6	3.6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15.6	46.1	30.1	8.2	3.2	456	10.5	43.6	33.3	12.5	3.3
직급	6급 이상	30	50.0	36.7	13.3	0.0	2.6	525	13.5	43.4	34.7	8.4	3.2	537	8.2	37.8	47.5	6.5	3.5
	7급	136	29.4	44.9	22.8	2.9	2.9	1,648	15.6	44.4	32.6	7.3	3.2	728	10.3	37.1	42.9	9.8	3.4
	8급	54	31.5	57.4	11.1	0.0	2.7	712	15.2	45.5	31.6	7.7	3.2	480	12.5	39.2	36.3	12.1	3.3
	9급 이하	8	0.0	62.5	25.0	12.5	3.3	219	14.6	51.6	26.9	6.8	3.1	255	9.8	43.1	32.5	14.5	3.3

178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 르 겠다	평 균	
소속 지 자체	서울	25	24.0	44.0	32.0	0.0	3.0	358	15.6	41.9	31.3	11.2	3.2	312	9.0	41.7	41.3	8.0	3.4
	부산	16	37.5	37.5	18.8	6.3	2.9	167	14.4	41.3	38.9	5.4	3.3	105	10.5	34.3	42.9	12.4	3.4
	대구	9	33.3	66.7	0.0	0.0	2.6	74	10.8	47.3	31.1	10.8	3.2	76	9.2	42.1	36.8	11.8	3.4
	인천	11	9.1	54.5	27.3	9.1	3.3	155	8.4	43.9	39.4	8.4	3.4	88	9.1	45.5	35.2	10.2	3.5
	광주	5	40.0	40.0	20.0	0.0	2.8	85	17.6	36.5	38.8	7.1	3.3	48	8.3	27.1	56.3	8.3	3.6
	대전	6	33.3	50.0	16.7	0.0	2.7	61	16.4	50.8	24.6	8.2	3.0	35	17.1	45.7	31.4	5.7	3.2
	울산	6	33.3	66.7	0.0	0.0	2.5	84	16.7	44.0	28.6	10.7	3.1	47	12.8	38.3	38.3	10.6	3.2
	세종	1	100.0	0.0	0.0	0.0	2.0	15	20.0	40.0	26.7	13.3	2.9	6	0.0	16.7	33.3	50.0	3.7
	경기	29	31.0	41.4	24.1	3.4	2.9	531	14.7	47.6	29.9	7.7	3.2	341	9.1	37.2	43.1	10.6	3.5
	강원	19	26.3	63.2	10.5	0.0	2.8	161	21.1	44.1	21.7	13.0	3.0	103	11.7	49.5	28.2	10.7	3.3
	충북	12	41.7	33.3	8.3	16.7	2.4	199	15.6	46.2	26.6	11.6	3.1	97	7.2	52.6	30.9	9.3	3.3
	충남	15	20.0	66.7	13.3	0.0	2.9	162	14.2	42.0	35.8	8.0	3.2	118	10.2	34.7	47.5	7.6	3.5
	전북	13	53.8	15.4	30.8	0.0	2.5	184	15.8	42.4	36.4	5.4	3.3	109	8.3	30.3	44.0	17.4	3.5
	전남	20	20.0	60.0	20.0	0.0	3.1	261	14.2	50.2	31.8	3.8	3.2	136	8.8	40.4	43.4	7.4	3.5
	경북	22	36.4	45.5	18.2	0.0	2.8	298	16.1	44.3	36.2	3.4	3.2	180	16.1	35.6	38.9	9.4	3.3
	경남	18	38.9	44.4	16.7	0.0	2.7	236	15.3	44.9	34.3	5.5	3.2	170	10.0	32.4	47.1	10.6	3.5
	제주	1	100.0	0.0	0.0	0.0	2.0	73	12.3	53.4	31.5	2.7	3.2	29	17.2	27.6	48.3	6.9	3.3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작성 공무원이 3.2점, 사업담당이 3.1점, 예산담당이 2.7점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경우에 그리고 비작성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경우에 높은 점수가 나왔다. 사업담당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점수가 남성공무원의 점수보다 높았고, 사업담당 및 비작성 공무원에서는 남성공무원의 점수가 여성공무원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은 예산담당은 10년 이상~15년 미만 재직할 경우 3.1점, 사업담당은 5년 미만 재직할 경우 3.2점, 비작성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응답자 직급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의 경우 9급 이하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비작성 공무원은 6급 이상과 9급 이하에서 3.3점으로 동일한 값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3.3점, 사업담당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제주지역에서 3.2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경남지역에서 3.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점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점	사 수	그 다	렇 통	지 다	않 다	보 통	평 점		
전체	228	32.9	50.4	14.5	2.2	2.7	3,104	16.6	49.6	25.4	8.4	3.1	2,000	13.7	43.5	31.1	11.8	3.2					
근무	광역	16	50.0	31.3	18.8	0.0	2.6	395	14.2	50.9	25.8	9.1	3.1	277	15.2	38.6	33.6	12.6	3.3				
	기초	212	31.6	51.9	14.2	2.4	2.8	2,709	16.9	49.4	25.4	8.3	3.1	1,723	13.5	44.2	30.6	11.7	3.2				
성별	남자	104	37.5	48.1	12.5	1.9	2.7	1,299	15.2	47.9	29.9	6.9	3.2	1,158	13.4	40.8	33.4	12.3	3.3				
	여자	124	29.0	52.4	16.1	2.4	2.8	1,805	17.6	50.8	22.2	9.5	3.0	842	14.1	47.0	27.8	11.0	3.2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29.4	48.5	17.6	4.4	2.8	761	13.0	50.6	27.9	8.5	3.2	662	14.4	41.2	31.1	13.3	3.2				
	1년~2년미만	82	26.8	57.3	13.4	2.4	2.8	1,117	17.2	50.8	24.1	8.0	3.1	659	12.3	47.0	30.7	10.0	3.2				
	2년~3년미만	42	38.1	45.2	16.7	0.0	2.7	611	19.1	50.4	21.8	8.7	3.0	318	14.8	43.4	27.7	14.2	3.2				
	3년이상	36	47.2	44.4	8.3	0.0	2.6	615	17.4	45.4	28.5	8.8	3.1	360	14.2	41.1	34.4	10.3	3.3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11.1	77.8	5.6	5.6	2.9	514	13.4	50.8	26.7	9.1	3.2	481	11.2	45.1	27.2	16.4	3.2				
	5년~10년미만	77	33.8	57.1	7.8	1.3	2.6	824	17.2	50.5	24.0	8.3	3.1	414	12.1	46.9	27.5	13.5	3.2				
	10년~15년미만	31	19.4	41.9	29.0	9.7	3.1	437	20.8	48.5	22.0	8.7	3.0	178	17.4	39.3	29.2	14.0	3.2				
	15년~20년미만	41	39.0	41.5	19.5	0.0	2.8	387	14.7	48.8	26.6	9.8	3.1	227	15.9	42.7	34.8	6.6	3.2				
	20년이상	61	41.0	44.3	14.8	0.0	2.6	942	16.6	48.9	27.1	7.4	3.1	697	14.8	41.6	34.9	8.8	3.3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33.3	46.7	13.3	6.7	2.7	377	19.9	48.0	26.3	5.8	3.0	81	19.8	35.8	42.0	2.5	3.3				
	하나만경험 유	54	35.2	55.6	7.4	1.9	2.6	1,349	15.2	50.4	25.1	9.3	3.1	332	15.7	42.2	31.6	10.5	3.2				
	둘다경험 무	159	32.1	49.1	17.0	1.9	2.8	1,378	17.1	49.2	25.5	8.2	3.1	1,587	13.0	44.1	30.4	12.5	3.2				
직렬	일반직	204	29.9	52.0	15.7	2.5	2.8	1,928	16.5	49.2	26.4	7.9	3.1	1,447	14.7	41.9	32.3	11.1	3.2				
	세무직	4	100.0	0.0	0.0	0.0	1.5	17	17.6	41.2	35.3	5.9	3.3	45	8.9	42.2	37.8	11.1	3.4				
	전산직	19	47.4	47.4	5.3	0.0	2.5	79	19.0	54.4	13.9	12.7	2.9	52	7.7	42.3	38.5	11.5	3.4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16.6	50.1	24.4	9.0	3.1	456	11.8	48.5	25.4	14.3	3.2				
직급	6급 이상	30	53.3	40.0	6.7	0.0	2.4	525	14.9	50.9	24.8	9.5	3.1	8	0.0	62.5	25.0	12.5	3.3				
	7급	136	30.9	45.6	20.6	2.9	2.9	1,648	17.8	49.3	24.9	8.0	3.1	728	13.3	43.4	31.9	11.4	3.2				
	8급	54	29.6	66.7	3.7	0.0	2.6	712	16.4	48.6	26.5	8.4	3.1	480	13.5	45.0	27.5	14.0	3.2				
	9급 이하	8	12.5	62.5	12.5	12.5	3.0	219	12.3	51.6	27.4	8.7	3.2	255	9.8	45.5	27.8	16.9	3.3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81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속 지 자체	서울	25	28.0	56.0	16.0	0.0	2.9	358	17.0	44.4	26.8	11.7	3.1	312	15.4	47.1	27.2	10.3	3.2
	부산	16	18.8	37.5	37.5	6.3	3.3	167	16.2	48.5	28.7	6.6	3.2	105	14.3	35.2	38.1	12.4	3.3
	대구	9	33.3	66.7	0.0	0.0	2.6	74	14.9	48.6	25.7	10.8	3.1	76	15.8	39.5	28.9	15.8	3.2
	인천	11	9.1	54.5	27.3	9.1	3.2	155	11.6	54.2	24.5	9.7	3.2	88	8.0	54.5	26.1	11.4	3.2
	광주	5	40.0	20.0	40.0	0.0	3.0	85	15.3	44.7	32.9	7.1	3.2	48	12.5	43.8	31.3	12.5	3.3
	대전	6	50.0	50.0	0.0	0.0	2.3	61	18.0	57.4	13.1	11.5	2.9	35	22.9	48.6	20.0	8.6	3.0
	울산	6	16.7	66.7	16.7	0.0	3.0	84	20.2	48.8	20.2	10.7	3.0	47	12.8	46.8	29.8	10.6	3.1
	세종	1	0.0	100.0	0.0	0.0	3.0	15	20.0	40.0	26.7	13.3	2.9	6	16.7	16.7	16.7	50.0	3.0
	경기	29	24.1	51.7	20.7	3.4	2.9	531	15.3	51.8	24.5	8.5	3.1	341	12.3	41.3	34.3	12.0	3.3
	강원	19	36.8	52.6	10.5	0.0	2.7	161	23.0	46.6	16.8	13.7	2.9	103	19.4	48.5	20.4	11.7	3.0
	충북	12	25.0	50.0	8.3	16.7	2.6	199	17.6	49.7	22.1	10.6	3.0	97	7.2	61.9	20.6	10.3	3.2
	충남	15	33.3	60.0	6.7	0.0	2.7	162	16.0	47.5	28.4	8.0	3.1	118	11.0	39.0	39.8	10.2	3.3
	전북	13	61.5	30.8	7.7	0.0	2.2	184	18.5	48.9	25.0	7.6	3.1	109	11.9	36.7	33.0	18.3	3.3
	전남	20	35.0	50.0	15.0	0.0	2.8	261	15.7	54.4	25.3	4.6	3.1	136	12.5	44.9	34.6	8.1	3.3
	경북	22	40.9	50.0	9.1	0.0	2.6	298	17.4	50.0	27.2	5.4	3.1	180	17.8	46.1	23.9	12.2	3.1
	경남	18	44.4	50.0	5.6	0.0	2.5	236	15.7	49.2	28.4	6.8	3.1	170	12.4	32.4	42.4	12.9	3.4
	제주	1	100.0	0.0	0.0	0.0	2.0	73	15.1	49.3	32.9	2.7	3.2	29	20.7	34.5	37.9	6.9	3.2

다. 지자체 예산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비작성 공무원이 3.5점, 사업담당이 3.3점, 예산담당이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작성 공무원이 지자체 예산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동의수준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자의 경우만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 및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광역과 기초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본 결과 예산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은 남녀 모두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5년 미만 근무했을 때 3.3점, 사업담당은 5년 미만 근무했을 때 3.4점, 비작성 공무원은 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근무했을 때 3.6점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직급의 경우 예산담당은 9급 이하에서 3.3점, 비작성 공무원은 9급 이하에서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담당은 6급 이상에서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대전지역에서 3.5점, 사업담당은 제주지역에서 3.6점, 비작성 공무원은 부산지역에서 3.7점으로 동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83

〈표 IV-20〉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전체		228	33.8	40.4	25.9	3.1	3,104	14.5	41.8	43.7	3.3	2,000	13.4	30.6	56.1	3.5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18.8	37.5	43.8	2.8	395	13.2	43.0	43.8	3.3	277	16.6	26.0	57.4	3.5	
	기초자치단체	212	34.9	40.6	24.5	3.1	2,709	14.7	41.7	43.7	3.3	1,723	12.9	31.3	55.8	3.5	
성별	남자	104	30.8	36.5	32.7	3.0	1,299	15.9	40.6	43.5	3.3	1,158	16.8	33.4	49.8	3.4	
	여자	124	36.3	43.5	20.2	3.1	1,805	13.4	42.8	43.8	3.3	842	8.8	26.6	64.6	3.7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미만	68	35.3	33.8	30.9	3.0	761	13.1	42.0	44.8	3.3	662	11.8	29.2	59.1	3.6	
	1년이상~2년미만	82	36.6	48.8	14.6	3.2	1,117	15.2	42.7	42.1	3.3	659	11.2	33.4	55.4	3.5	
	2년이상~3년미만	42	31.0	38.1	31.0	2.9	611	14.4	42.2	43.4	3.3	318	18.9	26.7	54.4	3.4	
	3년이상	36	27.8	36.1	36.1	2.9	615	14.8	39.7	45.5	3.3	360	15.6	31.4	53.1	3.4	
공무원 재직 기간	5년미만	18	38.9	55.6	5.6	3.3	514	10.5	44.6	44.9	3.4	481	10.4	29.7	59.9	3.6	
	5년이상~10년미만	77	36.4	32.5	31.2	3.0	824	14.4	42.6	43.0	3.3	414	11.6	33.1	55.3	3.5	
	10년이상~15년미만	31	41.9	35.5	22.6	3.2	437	14.4	45.8	39.8	3.3	178	17.4	36.5	46.1	3.3	
	15년이상~20년미만	41	29.3	46.3	24.4	3.0	387	14.5	37.7	47.8	3.3	227	12.3	30.0	57.7	3.6	
20년 이상	61	27.9	44.3	27.9	3.0	942	16.7	39.6	43.7	3.3	697	15.9	28.3	55.8	3.5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다 경험 있음	15	33.3	40.0	26.7	3.0	377	13.8	37.1	49.1	3.4	81	19.8	17.3	63.0	3.6
		하나만 경험 있음	54	25.9	44.4	29.6	2.9	1,349	13.1	39.5	47.4	3.4	332	12.7	30.7	56.6	3.5
		둘 다 경험 없음	159	36.5	39.0	24.5	3.1	1,378	16.0	45.4	38.6	3.2	1,587	13.2	31.2	55.6	3.5
직렬	일반직	204	33.8	40.2	26.0	3.1	1,928	14.7	40.6	44.7	3.3	1,447	13.3	29.9	56.7	3.5	
	세무직	4	50.0	25.0	25.0	3.0	17	5.9	52.9	41.2	3.4	45	17.8	28.9	53.3	3.4	
	전산직	19	31.6	47.4	21.1	3.1	79	20.3	41.8	38.0	3.2	52	7.7	36.5	55.8	3.5	
	기타	1	0.0	0.0	100.0	2.0	1,080	13.7	44.0	42.3	3.3	456	13.8	32.0	54.2	3.5	
직급	6급 이상	30	16.7	43.3	40.0	2.8	525	15.8	34.9	49.3	3.4	537	15.5	26.1	58.5	3.5	
	7급	136	33.1	43.4	23.5	3.1	1,648	16.1	41.3	42.6	3.3	728	14.4	33.5	52.1	3.4	
	8급	54	44.4	29.6	25.9	3.1	712	11.2	46.5	42.3	3.3	480	11.5	31.3	57.3	3.5	
	9급 이하	8	37.5	50.0	12.5	3.3	219	9.6	47.5	42.9	3.3	255	9.8	30.2	60.0	3.6	

18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24.0	48.0	28.0	2.9	358	13.7	46.1	40.2	3.3	312	9.9	28.2	61.9	3.6
	부산	16	37.5	43.8	18.8	3.2	167	10.2	32.9	56.9	3.5	105	6.7	28.6	64.8	3.7
	대구	9	11.1	44.4	44.4	2.6	74	17.6	45.9	36.5	3.2	76	9.2	31.6	59.2	3.6
	인천	11	36.4	54.5	9.1	3.3	155	16.8	36.8	46.5	3.3	88	12.5	28.4	59.1	3.6
	광주	5	20.0	60.0	20.0	3.0	85	16.5	38.8	44.7	3.3	48	6.3	33.3	60.4	3.6
	대전	6	50.0	33.3	16.7	3.5	61	26.2	36.1	37.7	3.1	35	17.1	28.6	54.3	3.4
	울산	6	33.3	33.3	33.3	3.0	84	20.2	35.7	44.0	3.2	47	4.3	38.3	57.4	3.6
	세종	1	0.0	100.0	0.0	3.0	15	6.7	60.0	33.3	3.3	6	33.3	33.3	33.3	2.8
	경기	29	48.3	31.0	20.7	3.2	531	13.6	40.5	46.0	3.3	341	12.3	34.6	53.1	3.5
	강원	19	36.8	42.1	21.1	3.1	161	16.1	47.2	36.6	3.2	103	19.4	32.0	48.5	3.4
	충북	12	25.0	41.7	33.3	2.8	199	15.6	41.7	42.7	3.3	97	12.4	30.9	56.7	3.5
	충남	15	26.7	40.0	33.3	3.0	162	14.8	40.1	45.1	3.3	118	16.9	28.0	55.1	3.5
	전북	13	23.1	38.5	38.5	2.8	184	15.2	35.9	48.9	3.4	109	23.9	21.1	55.0	3.3
	전남	20	25.0	40.0	35.0	2.9	261	14.6	46.4	39.1	3.3	136	14.0	34.6	51.5	3.5
	경북	22	36.4	45.5	18.2	3.2	298	13.8	47.0	39.3	3.3	180	15.6	33.3	51.1	3.5
	경남	18	50.0	22.2	27.8	3.2	236	14.4	41.5	44.1	3.3	170	15.3	29.4	55.3	3.5
	제주	1	100.0	0.0	0.0	4.0	73	2.7	41.1	56.2	3.6	29	20.7	13.8	65.5	3.5

라. 지역 성평등목표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지자체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기반하여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을 살펴본 결과, 비작성 공무원이 3.6점, 사업담당이 3.3점, 예산담당이 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소속인 경우 동의수준이 높았고, 비작성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모두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직급의 경우 예산담당은 9급 이하가 3.5점, 비작성 공무원은 9급 이하가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담당은 6급 이상과 8급에서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대전지역에서 3.3점, 사업담당은 부산과 제주지역에서 3.6점, 비작성 공무원은 부산지역에서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전체		228	32.0	48.7	19.3	3.1	3,104	11.4	45.2	43.4	3.3	2,000	9.1	32.3	58.6	3.6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25.0	43.8	31.3	2.9	395	12.9	43.5	43.5	3.3	277	11.9	27.4	60.6	3.6
	기초자치단체	212	32.5	49.1	18.4	3.1	2,709	11.2	45.5	43.3	3.4	1,723	8.6	33.1	58.3	3.6
성별	남자	104	31.7	47.1	21.2	3.0	1,299	12.8	44.9	42.3	3.3	1,158	11.6	34.1	54.3	3.5
	여자	124	32.3	50.0	17.7	3.2	1,805	10.4	45.5	44.1	3.4	842	5.7	29.8	64.5	3.7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미만	68	35.3	44.1	20.6	3.1	761	9.7	45.1	45.2	3.4	662	7.7	31.0	61.3	3.6
	1년이상~2년미만	82	35.4	51.2	13.4	3.2	1,117	11.6	47.0	41.4	3.3	659	8.0	32.8	59.2	3.6
	2년이상~3년미만	42	23.8	54.8	21.4	3.0	611	12.8	43.7	43.5	3.3	318	11.6	33.6	54.7	3.5
	3년이상	36	27.8	44.4	27.8	3.0	615	11.7	43.7	44.6	3.4	360	11.4	32.8	55.8	3.5
공무원 재직 기간	5년미만	18	38.9	55.6	5.6	3.3	514	9.9	45.5	44.6	3.4	481	8.1	30.4	61.5	3.6
	5년이상~10년미만	77	35.1	36.4	28.6	3.0	824	12.0	46.7	41.3	3.3	414	8.7	37.4	53.9	3.5
	10년이상~15년미만	31	38.7	48.4	12.9	3.3	437	11.2	49.9	38.9	3.3	178	10.7	38.8	50.6	3.4
	15년이상~20년미만	41	22.0	70.7	7.3	3.1	387	9.6	45.5	45.0	3.4	227	7.0	30.0	63.0	3.7
여성정책/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20년 이상	61	29.5	47.5	23.0	3.1	942	12.5	41.5	46.0	3.4	697	10.3	29.8	59.8	3.6
	둘다 경험 있음	15	20.0	53.3	26.7	2.9	377	13.3	36.6	50.1	3.4	81	11.1	22.2	66.7	3.8
	하나만 경험 있음	54	29.6	46.3	24.1	3.1	1,349	11.2	42.1	46.7	3.4	332	12.3	28.0	59.6	3.6
	둘 다 경험 없음	159	34.0	49.1	17.0	3.2	1,378	11.1	50.7	38.2	3.3	1,587	8.3	33.7	58.0	3.6
직렬	일반직	204	30.9	50.0	19.1	3.1	1,928	12.0	43.4	44.6	3.4	1,447	9.7	31.5	58.7	3.6
	세무직	4	50.0	25.0	25.0	3.3	17	11.8	47.1	41.2	3.4	45	8.9	31.1	60.0	3.7
	전산직	19	42.1	36.8	21.1	3.3	79	12.7	53.2	34.2	3.2	52	5.8	36.5	57.7	3.6
	기타	1	0.0	100.0	0.0	3.0	1,080	10.2	47.9	41.9	3.3	456	7.5	34.4	58.1	3.6
직급	6급 이상	30	23.3	53.3	23.3	3.0	525	13.5	38.1	48.4	3.4	537	9.5	28.7	61.8	3.6
	7급	136	32.4	49.3	18.4	3.1	1,648	11.4	46.1	42.5	3.3	728	9.3	35.3	55.4	3.5
	8급	54	33.3	44.4	22.2	3.0	712	10.4	46.3	43.3	3.4	480	9.0	35.0	56.0	3.6
	9급 이하	8	50.0	50.0	0.0	3.5	219	9.6	52.5	37.9	3.3	255	7.8	26.3	65.9	3.7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에·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87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사 례 수	중 요 하 지 않 다	보 통	중 요 하 다	평 균
소속 지자체	서울	25	24.0	48.0	28.0	2.9	358	13.7	48.6	37.7	3.2	312	7.4	32.4	60.3	3.6
	부산	16	31.3	50.0	18.8	3.2	167	8.4	32.9	58.7	3.6	105	5.7	22.9	71.4	3.8
	대구	9	22.2	55.6	22.2	2.9	74	13.5	41.9	44.6	3.3	76	5.3	32.9	61.8	3.6
	인천	11	18.2	81.8	0.0	3.2	155	13.5	40.6	45.8	3.4	88	11.4	31.8	56.8	3.6
	광주	5	20.0	60.0	20.0	3.0	85	4.7	41.2	54.1	3.5	48	4.2	29.2	66.7	3.7
	대전	6	50.0	33.3	16.7	3.3	61	26.2	37.7	36.1	3.1	35	14.3	22.9	62.9	3.5
	울산	6	16.7	66.7	16.7	3.0	84	13.1	45.2	41.7	3.3	47	4.3	36.2	59.6	3.6
	세종	1	0.0	100.0	0.0	3.0	15	6.7	73.3	20.0	3.1	6	33.3	16.7	50.0	3.2
	경기	29	41.4	37.9	20.7	3.2	531	10.9	47.8	41.2	3.3	341	9.1	36.1	54.8	3.6
	강원	19	21.1	68.4	10.5	3.1	161	12.4	51.6	36.0	3.2	103	10.7	35.9	53.4	3.5
	충북	12	33.3	50.0	16.7	3.1	199	11.6	49.7	38.7	3.3	97	9.3	33.0	57.7	3.6
	충남	15	40.0	33.3	26.7	3.1	162	11.1	38.9	50.0	3.4	118	9.3	35.6	55.1	3.6
	전북	13	38.5	30.8	30.8	3.1	184	8.2	43.5	48.4	3.5	109	15.6	32.1	52.3	3.4
	전남	20	40.0	45.0	15.0	3.3	261	12.3	46.0	41.8	3.3	136	10.3	29.4	60.3	3.6
	경북	22	36.4	45.5	18.2	3.2	298	11.4	49.3	39.3	3.3	180	9.4	30.0	60.6	3.6
	경남	18	27.8	50.0	22.2	3.0	236	10.6	44.5	44.9	3.4	170	8.2	35.3	56.5	3.6
	제주	1	100.0	0.0	0.0	4.0	73	4.1	31.5	64.4	3.6	29	13.8	17.2	69.0	3.6

5.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인식

가.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비작성 공무원이 작성 공무원보다 높은 동의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나 방향성 등에 대한 수용도나 공감정도가 비작성 공무원이 작성 공무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비작성 공무원이 3.4점, 사업담당이 3.1점, 예산담당이 2.7점의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예산담당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예산담당에 비해 동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담당 및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았고, 사업담당은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았다. 비작성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의수준이 같았다.

응답자 직급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9급 이하가 2.9점, 사업담당은 6급 이상~9급 이하가 3.2점, 비작성 공무원은 6급 이상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광주 및 전남지역이 3.0점, 사업담당은 부산지역이 3.4점, 비작성 공무원은 제주지역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89

〈표 IV-22〉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수	그 다	렐 통	지 다	않 통	보 통	그 다	잘 다	모 다	르 다	모 다	르 다	평 다	사 수	그 다	렐 통	지 다	않 통	보 통	그 다	잘 다	모 다	르 다	평 다	사 수	그 다	렐 통	지 다	않 통	보 통	그 다	잘 다	모 다	르 다
전체	228	38.6	42.1	15.8	3.5	2.7	3,104	17.0	47.4	32.1	3.6	3.1	2,000	12.3	35.6	47.1	5.1	3.4																
근무	광역	16	75.0	18.8	0.0	6.3	2.1	395	18.7	46.3	31.4	3.5	3.1	277	17.0	28.9	48.0	6.1	3.4															
	기초	212	35.8	43.9	17.0	3.3	2.7	2,709	16.8	47.5	32.2	3.6	3.1	1,723	11.5	36.7	47.0	4.9	3.4															
성별	남자	104	39.4	43.3	15.4	1.9	2.6	1,299	16.0	48.0	32.7	3.2	3.2	1,158	13.7	34.3	46.4	5.6	3.4															
	여자	124	37.9	41.1	16.1	4.8	2.7	1,805	17.7	46.9	31.6	3.8	3.1	842	10.2	37.4	48.1	4.3	3.4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27.9	47.1	20.6	4.4	2.8	761	13.3	50.9	32.3	3.5	3.2	662	10.6	35.8	48.0	5.6	3.4															
	1년~2년미만	82	36.6	42.7	19.5	1.2	2.8	1,117	18.1	47.0	32.1	2.9	3.1	659	13.2	33.5	48.4	4.9	3.4															
	2년~3년미만	42	50.0	38.1	7.1	4.8	2.4	611	18.7	46.3	30.9	4.1	3.1	318	15.1	37.1	44.7	3.1	3.3															
	3년이상	36	50.0	36.1	8.3	5.6	2.5	615	18.0	44.7	32.8	4.4	3.1	360	11.1	37.8	45.0	6.1	3.4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22.2	55.6	22.2	0.0	3.0	514	13.8	49.8	32.1	4.3	3.2	481	12.9	38.7	43.5	5.0	3.4															
	5년~10년미만	77	40.3	39.0	18.2	2.6	2.6	824	18.3	49.9	29.1	2.7	3.1	414	11.4	41.1	42.0	5.6	3.3															
	10년~15년미만	31	45.2	38.7	16.1	0.0	2.7	437	18.1	50.6	27.2	4.1	3.1	178	13.5	46.6	34.3	5.6	3.2															
	15년~20년미만	41	43.9	31.7	17.1	7.3	2.6	387	15.5	44.2	35.9	4.4	3.2	227	10.1	31.3	54.2	4.4	3.5															
	20년이상	61	34.4	50.8	9.8	4.9	2.7	942	17.7	43.6	35.2	3.4	3.2	697	12.8	28.8	53.7	4.7	3.5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60.0	20.0	13.3	6.7	2.4	377	18.0	43.8	34.7	3.4	3.1	81	19.8	22.2	55.6	2.5	3.4															
	하나만경험 유	54	48.1	37.0	11.1	3.7	2.5	1,349	17.0	44.5	34.8	3.8	3.2	332	12.7	37.7	45.5	4.2	3.4															
	둘다경험 무	159	33.3	45.9	17.6	3.1	2.8	1,378	16.8	51.2	28.7	3.4	3.1	1,587	11.8	35.9	47.0	5.4	3.4															
직렬	일반직	204	38.7	41.2	16.7	3.4	2.7	1,928	17.7	46.1	32.5	3.7	3.1	1,447	12.0	35.2	48.0	4.8	3.4															
	세무직	4	25.0	50.0	25.0	0.0	2.8	17	23.5	47.1	29.4	0.0	3.1	45	11.1	42.2	40.0	6.7	3.4															
	전산직	19	42.1	47.4	5.3	5.3	2.4	79	21.5	50.6	24.1	3.8	3.0	52	13.5	25.0	55.8	5.8	3.5															
	기타	1	0.0	100.0	0.0	0.0	3.0	1,080	15.4	49.4	31.9	3.3	3.1	456	13.2	37.5	43.9	5.5	3.4															
직급	6급 이상	30	50.0	36.7	10.0	3.3	2.6	525	16.0	44.8	35.6	3.6	3.2	537	11.4	27.7	56.2	4.7	3.5															
	7급	136	39.7	43.4	13.2	3.7	2.6	1,648	18.5	46.2	31.7	3.5	3.1	728	13.9	37.1	44.1	4.9	3.3															
	8급	54	31.5	38.9	25.9	3.7	2.8	712	16.2	50.1	29.8	3.9	3.1	480	10.6	41.9	42.1	5.4	3.4															
	9급 이하	8	25.0	62.5	12.5	0.0	2.9	219	11.0	53.0	33.3	2.7	3.2	255	12.5	36.1	45.9	5.5	3.4															

190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속 지 자체	서울	25	44.0	32.0	20.0	4.0	2.6	358	16.5	48.6	27.7	7.3	3.1	312	9.6	35.9	50.6	3.8	3.5
	부산	16	43.8	31.3	25.0	0.0	2.7	167	12.0	40.1	46.7	1.2	3.4	105	10.5	30.5	58.1	1.0	3.5
	대구	9	66.7	22.2	11.1	0.0	2.3	74	18.9	55.4	21.6	4.1	3.0	76	9.2	34.2	51.3	5.3	3.4
	인천	11	36.4	45.5	9.1	9.1	2.6	155	14.2	49.7	33.5	2.6	3.2	88	12.5	50.0	33.0	4.5	3.3
	광주	5	20.0	60.0	20.0	0.0	3.0	85	22.4	37.6	35.3	4.7	3.1	48	10.4	37.5	45.8	6.3	3.4
	대전	6	33.3	33.3	16.7	16.7	2.6	61	29.5	41.0	27.9	1.6	2.9	35	22.9	28.6	42.9	5.7	3.2
	울산	6	50.0	33.3	16.7	0.0	2.5	84	16.7	46.4	27.4	9.5	3.1	47	8.5	31.9	55.3	4.3	3.5
	세종	1	100.0	0.0	0.0	0.0	1.0	15	13.3	60.0	20.0	6.7	3.1	6	0.0	33.3	33.3	33.3	3.5
	경기	29	27.6	62.1	6.9	3.4	2.8	531	18.3	49.5	28.2	4.0	3.1	341	14.1	35.5	45.5	5.0	3.4
	강원	19	36.8	52.6	10.5	0.0	2.7	161	20.5	47.2	29.2	3.1	3.0	103	11.7	38.8	42.7	6.8	3.4
	충북	12	41.7	33.3	16.7	8.3	2.6	199	16.1	53.3	25.1	5.5	3.0	97	16.5	33.0	43.3	7.2	3.3
	충남	15	46.7	46.7	6.7	0.0	2.4	162	17.9	41.4	37.7	3.1	3.2	118	15.3	33.1	47.5	4.2	3.4
	전북	13	53.8	38.5	7.7	0.0	2.5	184	16.3	43.5	38.6	1.6	3.2	109	13.8	31.2	44.0	11.0	3.4
	전남	20	35.0	35.0	30.0	0.0	3.0	261	19.2	47.1	33.0	0.8	3.1	136	13.2	37.5	45.6	3.7	3.4
	경북	22	27.3	45.5	13.6	13.6	2.7	298	16.4	48.7	32.9	2.0	3.2	180	13.3	33.3	47.2	6.1	3.4
	경남	18	27.8	44.4	27.8	0.0	2.9	236	13.6	46.6	36.4	3.4	3.2	170	8.8	40.0	48.2	2.9	3.5
	제주	1	100.0	0.0	0.0	0.0	2.0	73	11.0	49.3	38.4	1.4	3.3	29	10.3	27.6	55.2	6.9	3.6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91

“성인지결산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작성 공무원이 3.5점, 사업담당이 3.2점, 예산담당이 2.8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의 동의수준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들의 동의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비작성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 비작성 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동의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부산, 광주, 경기, 전남지역에서 3.0점, 사업담당은 제주지역에서 3.5점, 비작성 공무원은 광주, 제주지역에서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수	그 레	잘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수	그 레	잘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수	그 레	잘 지 않 다	보 통	그 렇 지 않 다	잘 모르 겠다
전체	228	30.7	45.2	21.9	2.2	2.8	3,104	15.9	45.5	35.5	3.0	3.2	2,000	11.0	30.5	55.4	3.2	3.5		
근무	광역	16	56.3	31.3	12.5	0.0	2.6	395	17.2	44.8	34.9	3.0	3.1	277	13.4	26.0	56.3	4.3	3.5	
	기초	212	28.8	46.2	22.6	2.4	2.8	2,709	15.7	45.6	35.6	3.0	3.2	1,723	10.6	31.2	55.3	3.0	3.5	
성별	남자	104	37.5	37.5	24.0	1.0	2.7	1,299	15.4	45.9	36.0	2.7	3.2	1,158	13.0	31.6	51.9	3.5	3.5	
	여자	124	25.0	51.6	20.2	3.2	2.9	1,805	16.3	45.3	35.2	3.3	3.2	842	8.3	28.9	60.2	2.6	3.6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26.5	47.1	23.5	2.9	2.9	761	13.9	45.9	37.6	2.6	3.2	662	8.3	31.1	56.8	3.8	3.6	
	1년~2년미만	82	26.8	50.0	22.0	1.2	2.9	1,117	17.0	46.1	34.0	2.9	3.1	659	10.6	29.7	56.9	2.7	3.5	
	2년~3년미만	42	38.1	33.3	23.8	4.8	2.7	611	16.2	45.8	34.7	3.3	3.2	318	16.0	32.1	50.0	1.9	3.4	
	3년이상	36	38.9	44.4	16.7	0.0	2.7	615	16.1	43.7	36.6	3.6	3.2	360	12.2	29.2	54.7	3.9	3.5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16.7	61.1	22.2	0.0	3.1	514	12.6	49.0	34.6	3.7	3.2	481	9.8	32.4	54.7	3.1	3.5	
	5년~10년미만	77	35.1	36.4	26.0	2.6	2.8	824	17.0	48.1	33.0	1.9	3.1	414	11.4	34.1	50.7	3.9	3.4	
	10년~15년미만	31	38.7	38.7	22.6	0.0	2.8	437	17.4	46.2	32.0	4.3	3.1	178	11.8	38.8	44.4	5.1	3.4	
	15년~20년미만	41	31.7	39.0	26.8	2.4	2.8	387	14.5	45.7	36.7	3.1	3.2	227	8.8	27.3	61.2	2.6	3.6	
	20년이상	61	24.6	59.0	13.1	3.3	2.8	942	16.7	41.0	39.4	3.0	3.2	697	12.2	26.0	59.7	2.2	3.6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53.3	33.3	6.7	6.7	2.3	377	16.7	39.8	40.3	3.2	3.2	81	13.6	28.4	58.0	0.0	3.5	
	하나만경험 유	54	37.0	40.7	18.5	3.7	2.7	1,349	15.1	44.7	37.4	2.7	3.2	332	12.3	29.5	55.4	2.7	3.5	
	둘다경험 무	159	26.4	47.8	24.5	1.3	2.9	1,378	16.5	47.9	32.4	3.3	3.1	1,587	10.6	30.7	55.3	3.4	3.5	
직렬	일반직	204	28.9	46.6	22.5	2.0	2.8	1,928	16.0	43.9	36.9	3.2	3.2	1,447	10.9	30.5	55.9	2.8	3.5	
	세무직	4	50.0	25.0	25.0	0.0	2.5	17	23.5	35.3	41.2	0.0	3.2	45	17.8	26.7	51.1	4.4	3.4	
	전산직	19	42.1	36.8	15.8	5.3	2.7	79	20.3	50.6	26.6	2.5	3.0	52	9.6	28.8	57.7	3.8	3.6	
	기타	1	100.0	0.0	0.0	0.0	2.0	1,080	15.3	48.2	33.6	2.9	3.2	456	11.0	30.9	53.9	4.2	3.5	
직급	6급 이상	30	36.7	46.7	13.3	3.3	2.7	525	15.8	41.9	39.4	2.9	3.2	537	10.8	24.8	62.0	2.4	3.6	
	7급	136	32.4	46.3	19.1	2.2	2.8	1,648	17.4	43.9	35.7	3.0	3.2	728	11.5	33.1	52.1	3.3	3.5	
	8급	54	24.1	40.7	33.3	1.9	3.0	712	14.6	49.2	32.9	3.4	3.2	480	11.5	33.8	50.8	4.0	3.5	
	9급 이하	8	25.0	50.0	25.0	0.0	3.0	219	9.6	54.3	33.3	2.7	3.2	255	9.0	28.6	59.6	2.7	3.6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93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 속 지 자 체	서울	25	40.0	36.0	20.0	4.0	2.7	358	14.2	44.4	34.6	6.7	3.2	312	8.7	30.4	58.0	2.9	3.6
	부산	16	25.0	37.5	37.5	0.0	3.0	167	9.0	42.5	47.3	1.2	3.4	105	11.4	23.8	62.9	1.9	3.6
	대구	9	55.6	33.3	11.1	0.0	2.3	74	17.6	47.3	31.1	4.1	3.2	76	3.9	35.5	57.9	2.6	3.6
	인천	11	18.2	63.6	9.1	9.1	2.8	155	14.2	49.7	33.5	2.6	3.2	88	8.0	40.9	46.6	4.5	3.5
	광주	5	20.0	60.0	20.0	0.0	3.0	85	22.4	37.6	36.5	3.5	3.1	48	10.4	18.8	66.7	4.2	3.7
	대전	6	16.7	33.3	50.0	0.0	3.3	61	26.2	41.0	31.1	1.6	3.0	35	11.4	28.6	57.1	2.9	3.5
	울산	6	33.3	50.0	16.7	0.0	2.8	84	15.5	52.4	26.2	6.0	3.1	47	6.4	38.3	53.2	2.1	3.5
	세종	1	100.0	0.0	0.0	0.0	2.0	15	13.3	60.0	26.7	0.0	3.1	6	16.7	50.0	16.7	16.7	3.0
	경기	29	20.7	51.7	24.1	3.4	3.0	531	17.1	48.4	31.3	3.2	3.1	341	11.1	31.1	54.3	3.5	3.5
	강원	19	26.3	57.9	15.8	0.0	2.8	161	18.6	47.2	32.9	1.2	3.1	103	12.6	34.0	48.5	4.9	3.5
	충북	12	58.3	33.3	8.3	0.0	2.3	199	14.6	48.2	31.7	5.5	3.1	97	11.3	33.0	50.5	5.2	3.4
	충남	15	40.0	33.3	26.7	0.0	2.7	162	16.0	40.7	39.5	3.7	3.2	118	13.6	28.8	55.1	2.5	3.5
	전북	13	38.5	46.2	15.4	0.0	2.8	184	15.2	41.8	41.3	1.6	3.3	109	14.7	28.4	52.3	4.6	3.5
	전남	20	20.0	55.0	25.0	0.0	3.0	261	18.8	44.1	36.0	1.1	3.2	136	11.8	33.1	52.2	2.9	3.5
	경북	22	27.3	50.0	13.6	9.1	2.8	298	17.1	47.0	35.2	0.7	3.2	180	13.3	25.0	59.4	2.2	3.5
	경남	18	27.8	38.9	33.3	0.0	2.9	236	14.8	42.8	39.4	3.0	3.2	170	12.4	30.6	55.9	1.2	3.6
	제주	1	0.0	0.0	100.0	0.0	4.0	73	5.5	45.2	47.9	1.4	3.5	29	10.3	20.7	65.5	3.4	3.7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 성평등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작성 공무원이 3.4점, 사업담당이 3.1점, 예산담당이 2.7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동의수준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에서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업담당과 비작성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동의수준을 보였다.

응답자 성별의 경우 예산담당, 비작성 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았고, 사업담당은 남성공무원의 동의수준이 여성공무원의 동의수준보다 높았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5년 미만 근무한 경우 2.9점, 사업담당은 5년 미만 근무한 경우와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3.2점, 비작성 공무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인 경우 전남지역에서 3.1점, 사업담당인 경우 부산, 전북, 제주지역에서 3.3점, 비작성 공무원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지역에서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95

(표 IV-24)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전체	228	35.1	45.2	16.7	3.1	2.7	3,104	17.3	46.9	32.7	3.1	3.1	2,000	13.2	33.6	49.4	3.9	3.4	
근무 지역	광역	16	62.5	31.3	6.3	0.0	2.3	395	18.2	47.6	31.4	2.8	3.1	277	15.9	29.6	49.1	5.4	3.4
	기초	212	33.0	46.2	17.5	3.3	2.7	2,709	17.2	46.8	32.9	3.2	3.1	1,723	12.7	34.2	49.4	3.6	3.4
성별	남자	104	39.4	45.2	14.4	1.0	2.6	1,299	17.6	45.7	33.9	2.8	3.2	1,158	14.8	33.2	47.8	4.1	3.4
	여자	124	31.5	45.2	18.5	4.8	2.8	1,805	17.1	47.8	31.8	3.3	3.1	842	10.9	34.1	51.5	3.4	3.5
현 부서 근무 기간	1년미만	68	29.4	47.1	19.1	4.4	2.8	761	14.2	49.5	33.2	3.0	3.2	662	10.7	35.5	49.5	4.2	3.5
	1년~2년미만	82	31.7	48.8	18.3	1.2	2.8	1,117	19.0	46.3	31.6	3.1	3.1	659	13.7	32.0	50.8	3.5	3.4
	2년~3년미만	42	47.6	40.5	7.1	4.8	2.4	611	17.5	48.8	30.9	2.8	3.1	318	15.7	36.2	45.6	2.5	3.3
	3년이상	36	38.9	38.9	19.4	2.8	2.7	615	18.0	42.8	35.6	3.6	3.2	360	14.4	30.8	49.7	5.0	3.4
공무 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22.2	66.7	11.1	0.0	2.9	514	14.0	51.2	31.3	3.5	3.2	481	14.8	37.0	44.3	4.0	3.3
	5년~10년미만	77	39.0	37.7	20.8	2.6	2.6	824	18.6	49.2	30.3	1.9	3.1	414	14.7	37.0	44.2	4.1	3.3
	10년~15년미만	31	32.3	51.6	16.1	0.0	2.7	437	19.5	49.0	27.7	3.9	3.0	178	12.9	42.7	37.6	6.7	3.2
	15년~20년미만	41	41.5	41.5	12.2	4.9	2.5	387	18.1	44.2	34.1	3.6	3.1	227	10.6	30.4	55.5	3.5	3.5
	20년이상	61	31.1	47.5	16.4	4.9	2.8	942	16.8	42.7	37.2	3.4	3.2	697	12.1	28.1	57.1	2.7	3.5
여성 정책 등 평가 경험	둘다경험 유	15	66.7	20.0	6.7	6.7	2.1	377	19.1	41.6	36.9	2.4	3.2	81	19.8	25.9	54.3	0.0	3.4
	하나만경험 유	54	37.0	38.9	18.5	5.6	2.7	1,349	16.5	45.4	34.6	3.4	3.2	332	15.7	33.4	47.6	3.3	3.4
	둘다경험 무	159	31.4	49.7	17.0	1.9	2.7	1,378	17.6	49.7	29.6	3.0	3.1	1,587	12.3	34.0	49.5	4.2	3.4
직렬	일반직	204	35.3	45.1	16.7	2.9	2.7	1,928	18.2	44.8	33.7	3.4	3.1	1,447	13.0	33.7	49.8	3.5	3.4
	세무직	4	50.0	25.0	25.0	0.0	2.5	17	29.4	41.2	29.4	0.0	3.0	45	17.8	35.6	42.2	4.4	3.3
	전산직	19	31.6	47.4	15.8	5.3	2.7	79	17.7	49.4	30.4	2.5	3.1	52	11.5	34.6	50.0	3.8	3.4
	기타	1	0.0	100.0	0.0	0.0	3.0	1,080	15.6	50.6	31.1	2.8	3.1	456	13.4	32.9	48.7	5.0	3.4
직급	6급 이상	30	46.7	36.7	13.3	3.3	2.5	525	16.8	44.0	36.4	2.9	3.2	537	11.0	26.3	59.6	3.2	3.6
	7급	136	35.3	46.3	14.7	3.7	2.7	1,648	19.0	44.8	33.1	3.2	3.1	728	13.0	37.1	45.9	4.0	3.4
	8급	54	27.8	46.3	24.1	1.9	2.8	712	15.9	52.1	28.7	3.4	3.1	480	14.6	36.9	44.0	4.6	3.3
	9급 이하	8	37.5	50.0	12.5	0.0	2.8	219	11.0	52.5	33.8	2.7	3.2	255	15.3	32.9	48.2	3.5	3.4

19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사 례 수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잘 모르 겠다	평 균	
소속 지 자체	서울	25	48.0	32.0	16.0	4.0	2.5	358	14.2	46.1	32.4	7.3	3.2	312	9.6	34.0	53.2	3.2	3.5
	부산	16	37.5	43.8	18.8	0.0	2.7	167	10.8	44.3	44.3	0.6	3.3	105	12.4	25.7	60.0	1.9	3.5
	대구	9	66.7	22.2	11.1	0.0	2.3	74	14.9	55.4	27.0	2.7	3.1	76	5.3	42.1	48.7	3.9	3.5
	인천	11	27.3	54.5	9.1	9.1	2.6	155	16.1	48.4	33.5	1.9	3.2	88	14.8	43.2	37.5	4.5	3.3
	광주	5	40.0	40.0	20.0	0.0	2.8	85	24.7	37.6	34.1	3.5	3.1	48	14.6	27.1	54.2	4.2	3.5
	대전	6	33.3	16.7	50.0	0.0	3.0	61	26.2	37.7	32.8	3.3	3.0	35	22.9	28.6	48.6	0.0	3.3
	울산	6	33.3	50.0	16.7	0.0	2.8	84	16.7	50.0	28.6	4.8	3.1	47	10.6	29.8	55.3	4.3	3.5
	세종	1	100.0	0.0	0.0	0.0	1.0	15	13.3	53.3	26.7	6.7	3.1	6	16.7	50.0	16.7	16.7	3.0
	경기	29	27.6	51.7	17.2	3.4	2.9	531	17.7	49.3	29.4	3.6	3.1	341	13.8	37.0	45.2	4.1	3.4
	강원	19	31.6	63.2	5.3	0.0	2.6	161	21.1	45.3	30.4	3.1	3.0	103	12.6	35.9	43.7	7.8	3.4
	충북	12	50.0	41.7	8.3	0.0	2.3	199	19.1	49.2	26.1	5.5	3.0	97	7.2	39.2	48.5	5.2	3.4
	충남	15	33.3	46.7	20.0	0.0	2.7	162	20.4	38.3	38.3	3.1	3.2	118	13.6	33.1	49.2	4.2	3.4
	전북	13	38.5	46.2	7.7	7.7	2.5	184	16.8	42.9	39.7	0.5	3.3	109	20.2	25.7	47.7	6.4	3.3
	전남	20	25.0	45.0	30.0	0.0	3.1	261	19.9	47.5	31.4	1.1	3.1	136	13.2	34.6	47.8	4.4	3.4
	경북	22	22.7	45.5	18.2	13.6	2.8	298	18.8	48.3	31.2	1.7	3.1	180	16.7	27.8	53.3	2.2	3.4
	경남	18	27.8	55.6	16.7	0.0	2.8	236	14.4	50.0	33.5	2.1	3.2	170	14.1	34.1	50.6	1.2	3.4
	제주	1	100.0	0.0	0.0	0.0	2.0	73	11.0	47.9	39.7	1.4	3.3	29	17.2	20.7	55.2	6.9	3.4

나.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인지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올해 2013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인지비율이 비작성 공무원의 인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성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담당의 인지비율이 사업담당의 인지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인지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의 인지비율이 남성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작성 공무원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예산담당은 15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할 경우 12.2%, 사업담당은 5년 미만 재직할 경우 47.7%, 비작성 공무원은 5년 이상~10년 미만 재직할 경우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9급 이하에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담당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지역에서는 100% 알고 있었으며, 사업담당의 경우 제주지역 71.2%, 비작성 공무원도 제주지역 69.0%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5〉 2013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전체		228	93.0	7.0	3,104	60.8	39.2	2,000	45.6	54.5
근무처	광역자치단체	16	93.8	6.3	395	62.5	37.5	277	50.2	49.8
	기초자치단체	212	92.9	7.1	2,709	60.6	39.4	1,723	44.8	55.2
성별	남자	104	89.4	10.6	1,299	58.5	41.5	1,158	45.3	54.7
	여자	124	96.0	4.0	1,805	62.5	37.5	842	45.8	54.2
현재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68	95.6	4.4	761	59.4	40.6	662	41.5	58.5
	1년 이상~2년 미만	82	90.2	9.8	1,117	60.4	39.6	659	48.0	52.0
	2년 이상~3년 미만	42	95.2	4.8	611	63.3	36.7	318	45.6	54.4
	3년 이상	36	91.7	8.3	615	60.8	39.2	360	48.3	51.7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미만	18	94.4	5.6	514	52.3	47.7	481	41.4	58.6
	5년 이상~10년 미만	77	90.9	9.1	824	56.2	43.8	414	34.5	65.5
	10년 이상~15년 미만	31	93.5	6.5	437	56.8	43.2	178	38.8	61.2
	15년 이상~20년 미만	41	87.8	12.2	387	67.2	32.8	227	52.4	47.6
	20년 이상	61	98.4	1.6	942	68.8	31.2	697	54.2	45.8
여성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경험	둘 다 수행경험 있음	15	93.3	6.7	377	73.7	26.3	81	72.8	27.2
	하나만 수행경험 있음	54	94.4	5.6	1,349	62.3	37.7	332	54.5	45.5
	둘 다 수행경험 없음	159	92.5	7.5	1,378	55.9	44.1	1,587	42.3	57.7
직렬	일반직	204	93.6	6.4	1,928	62.5	37.5	1,447	47.7	52.3
	세무직	4	75.0	25.0	17	64.7	35.3	45	46.7	53.3
	전산직	19	89.5	10.5	79	53.2	46.8	52	48.1	51.9
	기타	1	100.0	0.0	1,080	58.3	41.7	456	38.4	61.6
직급	6급 이상	30	93.3	6.7	525	68.0	32.0	537	54.7	45.3
	7급	136	94.9	5.1	1,648	61.5	38.5	728	44.2	55.8
	8급	54	88.9	11.1	712	55.9	44.1	480	42.1	57.9
	9급 이하	8	87.5	12.5	219	54.8	45.2	255	36.5	63.5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199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비작성(C그룹)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사 례 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소속 지자체	서울	25	96.0	4.0	358	54.7	45.3	312	36.9	63.1
	부산	16	100.0	0.0	167	68.3	31.7	105	38.1	61.9
	대구	9	100.0	0.0	74	47.3	52.7	76	40.8	59.2
	인천	11	90.9	9.1	155	53.5	46.5	88	43.2	56.8
	광주	5	100.0	0.0	85	68.2	31.8	48	47.9	52.1
	대전	6	100.0	0.0	61	54.1	45.9	35	48.6	51.4
	울산	6	83.3	16.7	84	54.8	45.2	47	44.7	55.3
	세종	1	100.0	0.0	15	60.0	40.0	6	50.0	50.0
	경기	29	93.1	6.9	531	55.9	44.1	341	47.2	52.8
	강원	19	100.0	0.0	161	60.2	39.8	103	42.7	57.3
	충북	12	75.0	25.0	199	61.3	38.7	97	45.4	54.6
	충남	15	86.7	13.3	162	60.5	39.5	118	51.7	48.3
	전북	13	100.0	0.0	184	65.8	34.2	109	41.3	58.7
	전남	20	90.0	10.0	261	69.3	30.7	136	53.7	46.3
	경북	22	90.9	9.1	298	66.1	33.9	180	45.6	54.4
	경남	18	88.9	11.1	236	63.1	36.9	170	54.7	45.3
	제주	1	100.0	0.0	73	71.2	28.8	29	69.0	31.0

6. 소결

이상에서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작성 및 비작성 공무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작성 공무원 보다 비작성 공무원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소속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 성별수요를 고려한 예산집행의 중요도, 지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의 중요도 또한 비작성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작성 공무원보다 비작성 공무원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인지도는 작성 공무원이 비작성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6〉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2.7	3.2	3.5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2.6	3.1	3.4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2.4	3.0	3.2

* 예산담당A그룹 228명(광역16명/기초212명)이며, 사업담당B그룹은 3,104명(광역395명/기초 2,709명), 비작성C그룹은 2,000명(광역277명/기초1,723명)임

*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 5. 매우 그렇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201

〈표 IV-27〉 소속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2.8	3.2	3.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2.7	3.1	3.2

〈표 IV-28〉 성별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3.3	3.5

〈표 IV-29〉 지역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3.3	3.6

〈표 IV-30〉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

(단위: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평균	사업담당 (B그룹) 평균	비작성 (C그룹) 평균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7	3.1	3.4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2.8	3.2	3.5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2.7	3.1	3.4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비교한 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예산담당자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 기초자치단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도하는 실질적 예산 재배분의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가 작성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해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작성지침과 교육의 정도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컨설팅은 광역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게 집중되었다.

〈표 IV-31〉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및 절차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4	395	2.8
	기초자치단체	212	3.0	2,709	2.9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4	395	3.0
	기초자치단체	212	3.1	2,709	3.1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 일정의 적절성	광역자치단체	16	2.5	395	3.1
	기초자치단체	212	3.1	2,709	3.2

* 예산담당A그룹 228명(광역16명/기초212명)이며, 사업담당B그룹은 3,104명(광역395명/기초 2,709명), 비작성C그룹은 2,000명(광역277명/기초1,723명)임

*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 5. 매우 그렇다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203

〈표 IV-3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사례수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광역자치단체	16	75.0	25.0	395	57.0	43.0
	기초자치단체	212	73.1	26.9	2,709	57.0	43.0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컨설팅	광역자치단체	16	81.3	18.8	395	58.5	41.5
	기초자치단체	212	41.0	59.0	2,709	38.8	61.2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사례수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침을 받았으나 읽지 않았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광역자치단체	16	87.5	12.5	0.0	395	59.0	24.3	16.7
	기초자치단체	212	91.5	5.7	2.8	2,709	51.6	25.9	22.6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3〉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인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3	395	3.2
	기초자치단체	212	3.0	2,709	3.3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0	395	3.1
	기초자치단체	212	2.5	2,709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6	2.5	395	3.2
	기초자치단체	212	2.9	2,709	3.2

20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가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담당자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들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속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 성별수요를 고려한 예산집행의 중요도, 지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의 중요도 또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예산담당 (A그룹)		사업담당 (B그룹)		비작성 (C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광역	16 2.2	395 3.2	277 3.4		
	기초	212 2.7	2,709 3.2	1,723 3.5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광역	16 2.2	395 3.1	277 3.4		
	기초	212 2.6	2,709 3.1	1,723 3.4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광역	16 1.9	395 3.0	277 3.1		
	기초	212 2.5	2,709 3.0	1,723 3.2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광역	16 2.4	395 3.2	277 3.4		
	기초	212 2.9	2,709 3.2	1,723 3.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광역	16 2.6	395 3.1	277 3.3		
	기초	212 2.8	2,709 3.1	1,723 3.2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	16 2.8	395 3.3	277 3.5		
	기초	212 3.1	2,709 3.3	1,723 3.5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	16 2.9	395 3.3	277 3.6		
	기초	212 3.1	2,709 3.4	1,723 3.6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	16 2.1	395 3.1	277 3.4		
	기초	212 2.7	2,709 3.1	1,723 3.4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광역	16 2.6	395 3.1	277 3.5		
	기초	212 2.8	2,709 3.2	1,723 3.5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광역	16 2.3	395 3.1	277 3.4		
	기초	212 2.7	2,709 3.1	1,723 3.4		

셋째,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의 적절성, 취합일정의 적절성에 대해 예산담당은 부산, 광주지역이 사업담당은 부산, 세종지역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지역은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타 지역보다 많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5〉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단위:명, 점)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서울	25	3.1	358	2.8
	부산	16	3.4	167	3.2
	대구	9	2.3	74	2.9
	인천	11	3.2	155	3.0
	광주	5	3.4	85	2.9
	대전	6	2.8	61	2.5
	울산	6	2.8	84	2.6
	세종	1	2.0	15	3.2
	경기	29	2.9	531	2.8
	강원	19	2.8	161	2.8
	충북	12	3.0	199	2.9
	충남	15	2.9	162	3.1
	전북	13	2.8	184	3.0
	전남	20	3.1	261	3.0
	경북	22	3.2	298	3.0
	경남	18	2.7	236	3.0
	제주	1	2.0	73	2.9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적절성	서울	25	2.9	358	3.1
	부산	16	3.4	167	3.3
	대구	9	2.7	74	3.1
	인천	11	2.9	155	3.1

20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광주	5	3.0	85	2.9
	대전	6	2.7	61	3.0
	울산	6	3.0	84	2.8
	세종	1	2.0	15	3.2
	경기	29	2.9	531	3.0
	강원	19	2.9	161	3.0
	충북	12	3.1	199	3.0
	충남	15	3.1	162	3.2
	전북	13	3.3	184	3.2
	전남	20	3.3	261	3.1
	경북	22	3.2	298	3.1
	경남	18	2.8	236	3.1
	제주	1	2.0	73	3.2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의 적절성	서울	25	3.3	358
부산		16	3.4	167	3.4
대구		9	2.8	74	3.2
인천		11	2.8	155	3.2
광주		5	3.4	85	3.1
대전		6	3.0	61	3.0
울산		6	3.0	84	3.1
세종		1	3.0	15	3.3
경기		29	2.9	531	3.2
강원		19	2.9	161	3.1
충북		12	3.1	199	3.1
충남		15	3.0	162	3.3
전북		13	3.3	184	3.3
전남		20	2.8	261	3.2
경북		22	2.9	298	3.2
경남		18	2.9	236	3.3
제주		1	2.0	73	3.2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207

또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경우 부산, 광주, 세종, 충남, 제주지역의 예산담당자는 100% 읽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담당자 또한 세종지역 담당자의 93%가 읽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은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으로 지침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종지역은 행정구역 신설로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참여율은 전북, 강원 지역의 예산담당자와 대전, 경북지역의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비율이 높았으며, 컨설팅은 대전지역의 예산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모두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대전지역 또한 시범사업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년에 걸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으로 교육 및 컨설팅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36〉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단위: 명, %)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서울	25	92.0	72.0	56.0	358	50.8	51.4	34.1
부산	16	100.0	81.3	75.0	167	54.5	59.9	51.5
대구	9	88.9	66.7	44.4	74	44.6	51.4	37.8
인천	11	90.9	54.5	18.2	155	47.7	58.1	45.8
광주	5	100.0	60.0	0.0	85	47.1	57.6	38.8
대전	6	83.3	83.3	100.0	61	57.4	80.3	78.7
울산	6	83.3	50.0	50.0	84	39.3	61.9	36.9
세종	1	100.0	100.0	0.0	15	93.3	33.3	26.7
경기	29	79.3	72.4	17.2	531	46.0	58.0	38.2
강원	19	94.7	84.2	73.7	161	50.9	36.6	36.0
충북	12	91.7	83.3	50.0	199	52.3	48.7	50.3
충남	15	100.0	80.0	60.0	162	54.3	56.2	38.9

구분	예산담당A그룹				사업담당B그룹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사 례 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컨설팅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읽어 보았다	참석했다	받았다
전북	13	92.3	84.6	76.9	184	56.0	56.5	38.6
전남	20	90.0	60.0	15.0	261	56.3	52.9	29.1
경북	22	90.9	72.7	13.6	298	59.7	77.5	46.6
경남	18	94.4	72.2	44.4	236	56.8	54.2	41.9
제주	1	100.0	100.0	100.0	73	65.8	63.0	68.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의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운영의 구체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교육은 작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는 다시 예산담당 공무원과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시·도, 시·군·구별 교육자료 및 매뉴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담당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담당은 사업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에게 1차적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예산담당은 성인지예산제도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가 사업담당자에게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담당자의 1

차적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 체계 활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컨설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컨설팅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없이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본 조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보강이 급선무이다.

제 3 부

해외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V.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213
VI.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261

아시아권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과 성인지예산제도 215
2.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220
3. 정책 시사점 255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과 성인지예산제도

가. 개요

외국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제도운영의 현황과악이었다. 이에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지예산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결과는 어떻게 활용 및 환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조선주 외, 2013a;4).

이와 동시에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Gender Gap Index 201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WEF, 2013)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 권역 내 5개국 중 3개국의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필리핀 5위, 인도 101위, 말레이시아 102위, 우리나라 111위). 즉, 아시아 권역 내 성인지예산제도국의 운영현황 및 제도의 효과성을 시의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대외적으로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경제개발경험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라 한다)이 다른 영역과 주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아시아 권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경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서로의 성평등 정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후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 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여성가족부 내부회의자료, 2014).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경과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던 사례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의 활용 및 환류측면에서 아시아 권역의 국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경험의 KSP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2014년 2월 24-25일에 국제 컨퍼런스 “Gender Responsive Budgeting Narratives: Transforming Institutions, Empowering Communities”에 참가하여 아시아 권역 국가(말레이시아, 필리핀,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등)²⁹⁾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경험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각 국을 대표하는 연사들의 발표 및 말레이시아 페낭지역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경험 개괄 등을 청취하고 관련문헌을 조사하였다.

해당 컨퍼런스에 참가한 아시아 권역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에게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연구진 해외방문의 가능성 및 적절성을 직접 타진하고, 방문국가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필리핀을 2차 조사국가로 결정하였다. 기존 KSP 파트너국인 필리핀을 선택함으로써 아직 KSP 파트너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와의 비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진은 2015년 5월 19-22일에 필리핀 Malaybalay City를 방문하여 필리핀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경험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City Administrator 및 GAD(Gender and Development)팀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시청예산실, 정책수요조사 사무소(Malaybalay City Integrated Survey Syste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ranguay 2(제2구역-우리나라의 “동” 개념과 유사) 사무소, 지역 풀뿌리단체인 Malaybalay City Urban Poor Association을 방문하고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상기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성인지예산제도가 KSP 모듈화사업 및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과제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후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선택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9) 정부주도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 2014)이며, 이 중 아시아 권역국가는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이다.

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³⁰⁾중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의 채택 가능성

KSP는 전통적인 ODA와 그 성격과 특징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KSP사업은 ODA 대상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이자 공여국인 브라질, OECD 회원국인 터키, 멕시코, G20 회원국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그리고 자원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의 국가와도 협력 중에 있다. KSP는 일반적인 ODA 사업과는 달리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비ODA대상국의 경우 KSP비용을 분담한다. ODA 대상국 중에서도 사업비용 분담을 원하는 국가가 있기도 한데, 이 경우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실무적이며 활동적인 풀뿌리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상지원사업과는 달리 KSP는 경제·사회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KSP, 2014;www.ksp.go.kr).

KDI는 기존의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KSP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로 협력대상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의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제공하고 본 세부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 정비, 관련기관 구축, 관련인재 양성 등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중점지원국 사업을 시작하였다. 중점지원국 사업은 기존의 일반지원국(1년)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이 3년이며 정책자문주체의 수와 범위가 훨씬 많고 다양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자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KSP, 2014;www.ksp.go.kr).

KSP 협력대상국 선정은 사업수행 전년도 2/4분기부터 시작된다. 먼저 KDI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경제수준, 교육, 인구, 자원 등 성장잠재력을 반영

30) KSP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발췌하여 정리하였다(2014.8.11. 접속). 본문에 포함된 KSP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창작물이 아님을 밝힌다.

<http://www.ksp.go.kr/kr/pillars/policysnap.jsp>

<http://www.ksp.go.kr/kr/pillars/jointsnap.jsp>

<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KSP Index와 잠정대상국의 정책수요와 협력의 지,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 후 잠정협력대상국을 선정한다. 잠정협력대상국에게는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서면수요조사서가 발송되며 답신을 받은 후보국 중 응답서 내용의 충실성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해당년도 KSP의 협력대상국을 결정한다(KSP, 2014;www.ksp.go.kr).

KSP의 최근 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해당 정책 및 제도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구설립 등 정책의 도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KSP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고자 하는 국가들의 요청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들 국가에 친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KSP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대통령,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수차례 협력 대화를 추진하여 양국간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협력대상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SP, 2014;www.ksp.go.kr).

KSP의 주제는 전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KSP는 경제·인문·사회분야를 두루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세부주제로는 거시경제발전계획 수립, 산업정책 및 투자활성화, 무역·수출진흥, 중소기업 육성, 공기업개혁, 금융정책 등 경제분야는 물론, ICT, 과학기술혁신, 농산물가공, 교육,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전자정부, 전자구매시스템 등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국가정책자문사업의 경우 재정이나 조세 등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모듈화사업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sp, 2014;http://www.ksp.go.kr/kr/pillars/policysnap.jsp, 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예를 들어 2013년도의 경우 모듈화사업은 다음의 6가지 분야를 포괄하여 진행되었다.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보건의료, 인적자원, 국토건설이 해당 분야였으며, 행정·ICT 분야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이 포함되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 인적자원 분야에서 ‘재직근로자 직

업능력 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 모듈화사업도 경제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서 관련 인프라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의 모듈화사업은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 8개 분야를 포괄하였고, 행정·ICT
분야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재교육
사업', 인적자원 분야에서 '산업재해예방 제도 구축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KSP, 2014;<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2014년도의 모듈화사업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포함
되어 진행되고 있다. 모듈화사업은 국가정책자문사업이나 국제기구와의 공
동컨설팅사업과는 달리 특정국에 대해 개별적인 맞춤형 자문 또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대신 모듈로 한 번 정리되어 해당 사업 또는 정책의 소개 자료로
활용된다. 즉 중간에 KSP 파트너국의 피드백을 받거나 파트너국과 우리나라
간의 견해의 차나 인식의 괴리 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를 고려하거나 해
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KSP, 2014;<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따라서 특정 모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KSP 파트너국이 있다면 추후 국
가정책자문사업으로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
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는 재정정책의 일부분으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사회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은 KSP 파트너 국가이며,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발전 순
위는 낮지만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5위를 차지하는 등 높게 나
타났다(WEF, 2013).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의 모듈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듈이
적용되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배경, 양성평등 현황
등에 있어서는 파트너국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자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

가.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³¹⁾

말레이시아는 성인지예산제도를 2006년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정부주도형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4개의 부처에서 선별한 특정프로그램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고, 이 시범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형식을 갖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일반예산서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MWFCD, 2005¹;5-7).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말레이시아의 경우 성인지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련법, 규약, 시행계획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8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Eighth Malaysia Plan)내에 여성과 개발에 대한 목표(Women and Development Objectives)가 제시되어 있다.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에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조항(the Gender Equality Commitments)이 삽입되어 있다.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으로는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이 근거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5년에 CEDAW 협약을 비준하였고 협약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 및 보고서가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다(MWFCD, 2005¹;1).

31)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은 “Manual on Gender Budgeting in Malaysia”(2005)과 “Gender Budgeting in Malaysia”(2005)에서 직접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본문에 포함된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창작물이 아님을 밝힌다.

1) 추진체계

말레이시아 여성가족부(Ministry of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MWFD)와 UNDP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었고, 재정부의 경우 각 부처에 성인지예산 관련 정보가 일반예산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회람(Circular Letter)을 송부함으로써 제도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경제계획유닛(Economic Planning Unit), 국무조정실(Implementation Coordination Unit), 여성가족부, 재정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조직되었다. 워킹그룹에는 국제 성주류화 전문가와 국내의 컨설턴트가 포함되었다(MWFC, 2005¹;5-7).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현재 국가수준 혹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시범사업 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약화, 국제원조기구의 일방적인 주도 등을 주요 한계점으로 꼽기도 하였다(PWDC 면담, 2014). 이에 따라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성인지예산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PWDC 면담, 2014).

2) 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다른 국제원조 수여국에 비하여 자국의 예산운용에 있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나 원조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예산운용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국제원조 수여국에 비해 크다고 자평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자국의 결정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녀와 소년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차이 또는 차별, 불이익 등(예: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등)도 포함하고 있다(MWFC, 2005¹;4).

22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말레이시아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 보건부, 인적자원부, 농촌개발부(Education, Health, Human Resources, and Rural Development)에서 프로그램을 선별한 후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네 개 부처가 선정된 경위는 경제·사회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며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의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MWFCD, 2005¹;5-7).

각 부처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실시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서는 초등교육과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폴리테크닉 설립(Construction of Polytechnics), 보건부는 가정건강(Family Health Development), 정형외과분야(Orthopaedics), 농촌보건소(Rural Health Clinics), 인적자원부는 교육훈련,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농촌개발부는 지역사회발전과 빈곤층을 위한 주택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MWFCD, 2005¹;5-7).

〈표 V-1〉 부처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실시한 프로그램(MWFCD, 2005¹)

Ministry	Operating	Development
교육부(MOE)	초등교육	- 기숙학교 - Matriculation colleges ³²⁾ - 직업특화 중학교
고등교육부(MOHE)	선별된 대학들(universities)	- Universiti Teknologi MARA campus, Pahang - KUSTEM residential facilities - Car park, Universiti Teknologi MARA campus, Shah Alam
보건부(MOH)	정형외과, 가족건강발전	- 병원들의 수준 향상 - 시골 보건설비 - 도시 보건설비
인적자원부(MHR)	인력부	- ILP Selander, Melaka - ILP Selangor
농촌지역개발부(MRRD)	사회발전, 아동발전	- 빈곤층 대상의 주택보조 - 정신발달(Mental development) - 소득향상

성인지적 예산분석 파일럿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훈련이었다. 초기에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예산담당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국립행정원(Institut Tadbiran Awam Negara, INTAN)³³⁾ 소속 공무원들과 기타 부처 및 기관 내 젠더 프로그램(gender programmes)의 조정을 담당하는 성인지담당관(gender focal points)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성인지예산 분석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산접근법(The three categories of expenditure approach)이고, 두 번째 방식은 5단계 접근법(The five-step approach)이다(MWFCD, 2005²;14-20).

먼저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산접근법에서는 예산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여성을 위한 예산(Targeted gender-based expenditures of government agencies)으로 이는 젠더 혹은 여성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업의 예로는 여성보건프로그램, 여성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special entrepreneurship programmes for women), 모자가정 보조금, 미망인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고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즉 여성과 남성이 공무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여성관리자 교육훈련, 육아시설 설립, 육아휴직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나머지 일반예산으로 정부의 다른 모든 예산을 포함한다. 세 번째 유형의 예산을 분석하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며, 현재 서비스는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즉 정부의 프로그램, 사업, 프로젝트 및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정부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에서의 이상적 역할 수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MWFCD, 2005²;14-20).

32) Matriculation college는 Matriculation Programme을 운영하는 대학(college)이다. Matriculation Programme은 대학준비과정으로 교육기간은 1-2년 정도이며, 고등 교육부가 관리한다.

33) Institut Tadbiran Awam Negara(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TAN)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관으로 관리행정 공무원(civil servants i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교육기관이다.

이와 같이 예산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분류방법은 정부가 성주류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기에 적합하고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만일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예산 유형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분석결과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유형의 예산액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즉 젠더이슈 또는 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번째 예산유형은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형태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예산의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두 번째 예산 유형은 그 규모가 첫 번째 예산 유형보다 더 작다. 세 번째 예산 유형이 정부 전체예산의 대부분(95%)을 차지하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분석이 세 번째 예산 유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분석이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MWFCD, 2005²;14-20).

성인지예산은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분석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을 통해서만 정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에 집중하는 것과 예산은 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분석의 5단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분석 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나열되어 있고 각 업무가 예산용어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표의 마지막 열에서 제시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 수혜자의 젠더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의 프로그램이 국민 전체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MWFCD, 2005²;14-20).

〈표 V-2〉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5단계 접근법(MWFC, 2005²)

단계	설명	예산단계
1	해당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서로 다른 상황을 설명 (또한 농촌/도시, 연령대 등에 따라 세부 분석 진행)	수요조사
2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policy, programmes, and projects)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평가 (1단계에서 파악한 상황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정책, 프로그램
3	예산 및 기타 자원(인력 등)이 2단계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을 시행 하도록 배분되었는지 평가	투입
4	예산이 3단계에서 계획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니터링(관리)	결과(Outputs)
5	정책이 예산 집행을 통해 의도한 양성평등을 달성했는지, 1단계 에서 묘사된 상황을 변화시켰는지 평가	영향/성과(Outcomes)

효과적인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수반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예산 분석 시 5단계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표 V-3〉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MWFC, 2005²)

단계	필요한 데이터
1	-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과 남성의 수 - 교육이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2	-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과 남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 - 교육 대상자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교육장소 - 교육비 납부 가능 여부
3	- 프로그램(programme)에 배정된 예산액 - 프로그램(programme)을 계획하고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여성, 남성)의 수
4	- 교육과정에 참가한 여성과 남성의 수 -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과 남성의 수
5	- 교육과정 수료 후 여성과 남성 학생의 취업상황(취업된 사람의 수, 소득이 증가한 교육 이수자의 수)

말레이시아 기존 예산양식은 이미 동기, 목표, 구체적인 활동, 지표, 대상 (motivations, objectives, description of activities, indicators, and targets)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성인지예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한 첫 해에 시범작성을 실시한 네 개 부처에서 대상사업(programmes)을 선정할 때 운영예산(operating budget)과 개발예산(development budget)에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예산 유형에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MWFCD, 2005²;14-20).

말레이시아 정부는 운영예산을 통해 시행되는 프로그램(operating budget programmes)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양식 중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ABM-2 양식이 사용되었다.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작성항목은 음영처리 되거나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젠더이슈를 포함시킬 때도 추가 항목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예산담당 공무원이 일반예산서 내에 여성과 남성 간 정책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술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없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이는 ‘구체적 결과’(result specification)에 관한 부분(항목 12)으로 형평성(equity)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MWFCD, 2005²;21-33)(<표 -4> 참조).

항목 8과 9에서 성별 구분통계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농촌과 도시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석 및 분류 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이 처한 상황과 수요, 결과,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 구분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MWFCD, 2005²;21-33).

운영예산에 이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개발예산(development budget)을 별도로 두고 있다. 개발예산을 위한 예산서 양식은 운영예산을 위한 예산서 양식과 다른데 개발예산서 양식은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단답형 작성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전산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탤릭체로 표시된 작성항목은 젠더나 기타 형평성 이슈를 포함할 수 있다(MWFCD, 2005²;21-33)(<표 -5> 참조).

〈표 V-4〉 운영예산서 ABM-2 양식(MWFCD, 2005²⁾)

구분	양식 내용
1. Supply head	Vote number as per Budget Book
2. 기관(Agency)	부처/부서 명칭
3. 프로그램(Programme)	프로그램 명칭
4. 사업(Activity)	사업 명칭
5. 코드(Code)	검색이 가능한 사업 회계코드
6. 근거(Source of authority)	부처의 결정, 의회입법, 회계지침 등
7. 목표(Objective)	사전에 합의된 사업의 목표. 목표는 해결되거나 충족되어야 할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능의 형태 외에 법적 단순히 양식에 언급되는 것 외에 법적 진술(legislative statement)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
8. 수요/정책 분석 (Needs/policy analysis)	다음은 구체적으로 작성 : (i) 해결되어야 할 고객(국민)의 문제 및 충족시켜야 할 수요; 문제/수요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empirical data) (ii) 문제/수요 발생의 주요 이유 (iii) 문제/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제시(정책대안, 정부의 다른 사업, 해당 회계연도 내의 장기 및 단기 전략)
9. 고객(국민)(Clients)	사업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수혜할 고객(국민)
10. 기능(Functions)	사업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행되어야 할 주요 기능; 각 기능을 차별화하여 각기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예산확보 및 지출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11. 출처(Sources)	각 사업에 분배된 자원에 대한 정보
12. 구체적 결과 (Output specification)	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해 다음 내용을 기술 (i) 결과의 양, (ii) 결과의 질, (iii) 결과의 시기적절성, (iv) 결과의 비용, (v) 형평성(젠더 반영) - 위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전년도 합의/달성/변화 사항, 올해의 합의/변화 사항, 내년도 제안 내용
13. 영향 지표 (Impact indicators)	사업(activities)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다음을 포함 사업명칭, 마지막 평가년도, 평가되어야 할 문제, 활동 시작년도, 다음 평가년도, 방법론 (참고: 이탤릭체로 표시된 두 항목은 젠더이슈를 포함할 수 있음)
14. 프로그램 평가 (Programme evaluation plan)	다음은 명시: (i) 프로그램/사업(programme/activity) 시작년도, (ii) 마지막 평가년도, 다음 평가계획, (iii) 향후 평가에서 주로 포함될 부분, (iv)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론

Source: Manual on Gender Budgeting in Malaysia(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2005)

〈표 V-5〉 개발예산서 양식(MWFCD, 2005³⁴)

1. 부처
2. 기관
3. 시행기관
4. 부처코드
5. 프로젝트(Project) 코드
6. 프로그램/프로젝트(programme/project) 이름
7. 프로그램/프로젝트(programme/project) 범위
8. 분야
9. 프로그램/프로젝트(programme/project) 종류
10. 목표
11. 우선순위
12. 주(state)와 지역(district) 수준에서의 (해당) 위치
13. 개발지역/도시지역 주민 기준에서의 대상자
14. 지역 책임자
15. 의회구역
16. 지역의회
17. 도시(city), 지방(rural) 구분
18. 프로젝트(Project) 지표
(a) 빈곤퇴치 프로그램(programme) (예/아니오)* '예'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programme)에 분배된 예산 명시
(i) 소득창출 (ii) 기본 인프라 (iii) 인적자원 개발 (iv) 기타
(b) 사회재건 프로그램(Programme):
(i) 말레이인 기업가 개발 (예/아니오) (ii) 말레이인 교육훈련 (예/아니오) (iii) 기타 (예/아니오)
(c) 환경관련 프로그램 (예/아니오)
(d) KESBAN 프로젝트(project) ³⁴ (예/아니오)
(e) IT 프로젝트(project) (예/아니오)
(f) 주요 젠더이슈 제시 (예/아니오)
19. 프로그램이 민영화를 통해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예/아니오)
20. 프로그램이 대불후금인지 여부 (예/아니오)
21. 시행방법
22. 시행기간 및 시작, 완료년도 (예/아니오)
23. 개발예산 종류에 따른 프로그램의 총 비용
24. 프로그램/프로젝트(programme/project)의 총비용
25. 총 비용 중에서 연도별로 지방과 외국 수입(local and foreign revenue)으로 부담되는 비율
26. 건축자재 이용
27. 정부 예산 중 편성된 총 RM(Malaysian Ringgit, 화폐단위)
28. 정부예산 중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예산
29. 출처 및 종류, 그리고 년도에 따른 자원 분류
30. 관리비용
31. 다음 기준에 따른 인적자원요건: (a) 최고관리자 (b) 관리자, 전문가 (c) 지원그룹
32. 연도에 따른 물리적 목표(target): (a) % (b) 헥타르(hectare) (c) 수 (d) 킬로미터(kilometre) (e) 건축공사 % (construction work %) (f) 매수(acquisition) % (g) 기타

34) 안보 및 개발 프로그램(The Security and Development Program, KESBAN). 민사작전 (civil military affairs) 중심의 사회 안정과 치안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3)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말레이시아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페낭지역의 성인지예산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페낭에서는 2011년 PWDC(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를 창설하였다. 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단체명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PWDC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페낭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성주류화,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표성 제고 등을 목표로 페낭주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성주류화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다(PWDC 면담, 2014).

〈표 V-6〉 페낭 예산안 편성주기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KANITA, 2011)

예산단계	주요내용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6월 이전	예산지침 공람 (정책목표, 전년도 성과평가, 당해연도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공공지출의 성별수혜 귀착분석(public expenditure benefit incidence analyses) ▶ 시간사용에 대한 예산 영향분석(impact analysis of the budget on time use) ▶ 세입의 성별 귀착분석(revenue incidence analysis)
2. 6~7월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설정(outcome agreement)
3. 8~10월	예산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투입 및 배분(inputs allocation) ▶ 여성특화 지출(women specific expenditures) ▶ 공공부문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the public service) ▶ 일반 지출(general or mainstream expenditures)
4. 11~12월	지방의회 예산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정 및 승인(finalization and approval)
5. 12~1월	전년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결산(audit)

페낭 성인지예산은 참여예산과 함께 운영됨으로써 두 가지 예산모델이 결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성인지예산을 ‘반응적인(responsive)’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정부 혹은 의회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입안, 계획, 실행의 모든 측면에서 자원이 성인지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지역에서 성인지예산과 참여예산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성인지예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내 주민이 연결되고 있으며 참여예산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의 예산과정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PWDC 면담, 2014).

페낭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더 잘 이해하고 정부와 주민들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to create space for full dialogu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민의 예산배분 및 결정과정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시민의 특별한 정책수요(needs)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주체성/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empower) 위함이었다(PWDC, 2014;7).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시행한 성인지예산제도의 4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이다. 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기혼여부, 나이, 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특성을 파악한다. 실제로 5개의 조사지역 중 2개의 지역에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FGI를 실시하는 것으로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FGI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거주지와 주변장소를 방문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또한 FGI에 가족성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기 자신 외에 가족성

원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FGI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새로운 사업/프로젝트에 FGI 결과를 반영하였다(PWDC 면담, 2014).

세 번째 단계는 지역주민의 투표이다. 1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민에게 하나에 100링깃의 가치가 있는 쿠폰 다섯 장을 발급하고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프로젝트에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쿠폰에 화폐의 개념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책선호도를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통해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투표과정에서 지역주민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협상하기도 하고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프로젝트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PWDC 면담, 2014).

네 번째 단계는 사업/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행이다. 지역주민의 쿠폰 투표결과 가장 많은 수의 쿠폰을 얻은 사업/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실제로 시행되며 주민협회, 지역의회, PWDC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업/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행은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주민은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서 역량 및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긍정적 결과로는 지방의회(local council)와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의 호의적 반응, 지역주민의 자주의식 및 주체 의식 확립, 페낭 성인지예산 사례에 대한 외부의 관심, 여성 리더십 향상(지역주민의 조직화 및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지역사회 변화가능성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PWDC 면담, 2014).

현재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는 지역사회 환경미화 프로젝트도 성인지예산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낙후된 지역을 환경미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PWDC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자신의 거주지를 더럽고 저분한 곳으로 생각하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동네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등 실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인식의 변화를 이루었다. 아직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변화된 거주지의 모습에 만

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환경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PWDC 면담, 2014).

말레이시아 페낭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당면한 향후과제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와 함께 성인지예산을 주류화(mainstream)함으로써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모든 행정구역에서 지속적인 시스템화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의회 등의 수준에서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PWDC 면담, 2014).

나.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³⁵⁾

필리핀은 1995년 GAD(Gender and Development) 예산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AD의 계획 및 예산편성³⁶⁾은 Executive Order #43에 따라 예산을 집행결과와 연결시켜 검토하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직접 예산과정과 집행결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NEDA-NCRFW-ODAGDN, 2007;1-6).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는 여성권리장전(MCW), RA 9710, 일반 세출예산법(GA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73,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3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협약인 유엔협약(CEDAW), 북경행동강령(BPfA),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등도 성인지예산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리핀의 예산체계는 중기재정계획(The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 바탕을 두고 각 예산부문별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 부처 내 조직의 업무성과

35)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은 “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2007)과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2012)에서 직접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본문에 포함된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창작물이 아님을 밝힌다.

36) GAD의 기획과 예산편성이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표구조(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ramework)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의 주요 최종산출물(Main Final Outputs)을 작성하고 주요 최종산출물과 GAD 목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연결시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1) 추진체계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GAD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전체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교 대학, 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 지방정부(LGUs-Local government units)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 계약, 재무, 계획 등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필리핀 재정부가 GAD 계획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출한 GAD 예산서에 대해 필리핀여성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GAD 예산서를 환수하여 해당 부처나 기관이 다시 GAD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정부조직의 성과지표구조(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ramework) 내에서 주요 최종산출물 및 성과목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필리핀 재정부는 또한 필리핀여성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GAD관련 평가도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7-20).

필리핀 국가경제발전위원회의 경우 GAD관련 이슈, 성평등 현안, 여성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국가사회경제보고서, 필리핀개발계획, 중기공공투자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예산부문별 산출지표에까지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에서 수혜 받은 공식적 개발원조액 중 얼마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에 할당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관련기관이 성평등 이슈의 개선과 GAD 계획

과 예산편성에 공식적 개발 원조액의 5~3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국가경제발전위원회는 필리핀여성위원회와 함께 GAD 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을 개발하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7-20).

필리핀여성위원회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포함하여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신장(Women's empowerment)과 성평등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AD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GAD 예산서를 검토하며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정부와 협력하여 GAD 계획과 예산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부가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GAD 예산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할 때 함께 참여한다. 재정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학계 그리고 NGO와 협력하여 GAD 계획과 예산편성 검토 및 승인하고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성평등 개선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한다. GAD 계획과 예산편성의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의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GAD 연간통합성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7-20).

2) 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필리핀에서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이 근거법과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GAD 계획과 예산편성은 매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GAD관련 사업, 프로그램, 활동, 프로젝트 등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반예산요구안 및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뜻한다(NEDA-NCRFW-ODAGDN, 2007;1-4).

GAD 계획 및 예산편성은 이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

인한 예산의 일부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원래 의도하였던 결과 및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전체세출예산의 5%를 GAD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계획, 사업, 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위함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 GAD 지침(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과 같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이와 같이 공식적 GAD 지침을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정책수요가 프로그램, 사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형평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며 GAD 계획과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업, 프로그램, 활동, 프로젝트 등의 성주류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성인지적 분석도구의 활용을 포함한 젠더 역량(Gender Capacity)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NEDA-NCRFW-ODAGDN, 2007;1-6).

필리핀 재정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내무부, 공무원위원회, 감사원(DBM, NEDA, DILG, CSC, COA) 등과 같은 조직에서는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성주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처의 GAD 계획과 예산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필리핀여성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경제개발위원회(PCW, DBM, NEDA)는 연도별 GAD 계획과 예산편성 및 GAD 성과보고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 ① GAD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개발,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용(필리핀 국가경제발전위원회, 필리핀여성위원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ender and Development Network에서 작성 및 배포)

□ 개요

1993년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정부부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처 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초의 GAD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이 개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부부처가 여성과 개발에 관련된 Republic Act (RA) No. 7192와 시행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경제개발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프로젝트 시행과정의 단계별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경제개발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NEDA-NCRFW-ODAGDN, 2007;1-6).

다양한 국제원조기구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에서 경제개발과 젠더를 통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체적으로 GAD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이를 국제원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 및 각 지역의 파트너들이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중복적인 GAD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정부는 2003년부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화된 GAD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중반 국가경제발전위원회와 ODA-GAD Network에서는 프로젝트 계획,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GAD 요건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다(NEDA-NCRFW-ODAGDN, 2007;1-6).

기존에 중복하여 존재하였던 GAD 가이드라인을 추려서 하나의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내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였고, 새롭게 통합된 GAD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개발과 여성(Women in Development) 체계에서 진화하여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한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국제원조국이 제시하는 GAD 체크리스트와 필리핀 정부가 제시하는 GAD 관련지침과 호환될 수 있으며 국제원조를 받아 진행되는 모든 개발관련 프로젝트가 반영해야 하는 최소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원조국 또는 국제원조기구에서 지정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통합 GAD 가이드라인에 추가 요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NEDA-NCRFW-ODAGDN, 2007;1-6).

□ 가이드라인 목표 및 내용

필리핀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women's empowerment)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위원회, 국제원조기구, 각 정부부처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양성평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성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이드라인의 목표가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Republic Act No. 7192(RA 7192)는 경제개발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필리핀 정부가 여성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문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사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가적인 준수사항은 다른 개발목표와 더불어 인권, 양성평등 및 여성권의 신장을 촉진하는 Philippines Plan for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PPGD)에서 비롯되었다. RA 7192의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 더 적합하고 보다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권장되며 이렇게 확장된 체크리스트는 통합 GAD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NEDA-NCRFW-ODAGDN, 2007;1-6).

필리핀에서 개발을 위한 원조는 PPGD 및 '원조정책과 전략'에 따라 관리되며 '원조정책과 전략'은 원조를 제공한 국가가 지정한 우선순위, 국제원조기구의 운영결정 및 국제협약에 의해 조정 된다³⁷⁾. 통합 GAD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건은 전체 개발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적용되나 그 적용은 자금지원의 1차적 목적과 기부자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소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 GAD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지적 관점 혹은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개발의 전체 영역(각 정부부처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에 침투 및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7) 1995년 제4차 유엔여성회의에 따라 베이징 행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8년 성평등과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등이 연속적으로 제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제시한 성평등과 여성권리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필리핀의 GAD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국제원조국, 국제원조기구에서는 여성인권과 젠더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에 성주류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추진하며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필리핀과 국제원조국, 국제원조기구의 GAD 체계의 통합을 이루어냈다(NEDA-NCRFW-ODAGDN, 2007;1-6).

□ 가이드라인 구성 및 원칙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질문 및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GAD의 필수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프로젝트가 속한 분야나 개발프로젝트의 속성 및 유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특정 개발프로젝트 혹은 특정분야 내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GAD 지침을 제공한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개발프로젝트의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GAD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NEDA-NCRFW-ODAGDN, 2007;7-20).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개발은 개인의 자유증진과 역량강화를 수반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들을 함께 고려한다. 첫째, 양성평등은 여성인권의 핵심이며, 둘째, 개발에 대한 참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한부여를 의미하고, 셋째, 양성평등은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넷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현재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NEDA-NCRFW-ODAGDN, 2007;1-6). 통합 GAD 가이드라인은 필리핀에서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담당자를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자금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평가를 지원한다.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원조국과 관련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를 계획, 관리, 모니터링, 평가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권리 신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복지, 접근가능성, 의식화, 참여,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NEDA-NCRFW-ODAGDN, 2007;1-6).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과 시행을 위해 통합 GAD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담당자 및 평가자는 다음의 핵심요소 10가지(개발 프로젝트 계획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개발 프로젝트의 평가 시 성별 구분통계의 수집 및 활용,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젠더분석 시행, 젠더분석 결과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 목적, 예상결과 및 산출물 도출, 여성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계획된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대비, 여성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성별 구분통계 구축을 포함한 개발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여성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의 책정, 정부부처의 GAD 계획 또는 필리핀국가여성위원회와의 협업)를 고려해야 한다(NEDA-NCRFW-ODAGDN, 2007;7).

② 필리핀국가여성위원회, 국가경제발전위원회, 재정부 합동회람(2012년 배포)

본 합동회람의 수신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공서, 지방정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 및 대학, 정부부처 산하기관, 의회 및 사법기관 등을 포함하였다. 합동회람에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 및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합동회람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GAD 계획과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필수요인이 제시되었다. GAD 초점체계(GAD Focal Point System: GFPS)의 개발 및 강화³⁸⁾, GAD 역량 강화³⁹⁾, 젠더분석 실행⁴⁰⁾, GAD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38) 여성권리장전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이, 필리핀 여성위원회 회람 2012(성평등과 발전 초점 체계의 창조, 강화,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기관들은 제도화되고 기능적인 성평등과 발전 초점 체계를 가져야 한다.

39) GPBs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발전을 명백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기관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성평등과 발전 관련법과 의무를 포함한 부분에서 성평등과 발전의 역량 개발해야 한다. 훈련은 성주류화, 성평등성 분석법 그리고 성 인지적 기획과 예산편성을 포함해야 한다.

40) 기관의 성주류화 단계 혹은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내 성인지도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성 인지도와 조직의 능숙도의 정도 그리고 성 주류화를 지지하는 보완 기전의 유무를 검사함. 감사 결과는 기관의 PAPs(정책과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인지도를 강화하고 시행되어야만 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성별 구분통계의 제도화⁴¹⁾가 포함된다(PCW-NEDA-DBM, 2012;1-3).

그리고 GAD 계획과 예산의 생성단계에서는 GAD 의제를 설정하거나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젠더사안을 확인⁴²⁾하고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은 젠더이슈를 다루기 위해 부적합한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를 확인해야 한다.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통합 GAD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AD 성과보고서를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PCW-NEDA-DBM, 2012;4-10).

일반세출예산법에 의해 인정받은 총예산의 최소 5%는 GAD 계획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에 배분되어야 하며 즉 GAD 예산은 기관의 총 할당 예산 외의 추가적인 예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님⁴³⁾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체예산을 GAD 예산으로 잡는 것은 정부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성을 점차적으로

41) 기관들은 현존하는 성평등과 발전 데이터베이스 정보 안에서 발전하고 통합되어 성별 통계 자료와 성 분할된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기획, 예산편성, 프로그래밍 그리고 정책 공식화를 위해 단순한 자료나 혹은 기반으로서 체계적으로 생성되고 수집된다.

42) 우대(priority) 성별 문제 혹은 성평등과 발전 의제는 지방청, 관료, 부속 기관과 협의하여 중앙 사무국에 의해 일년 혹은 삼년의 기간 동안 다루어질 것이며, 성평등과 발전 의제는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의 연례 공식화를 위한 기반이 되어 부서와 부속기관, 관료, 지방청 등의 성평등과 발전 계획과 예산에 포함될 것이다. 우대(priority) 성별 문제 혹은 성평등과 발전 의제는 (1) 가이드라인의 2.1 항과 3.1 항에서 언급된 국가의 성평등과 발전-연관 정책과 계획 검토, (2) 성 분할 자료나 기관내 고객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별을 분석한 결과와 여성과 남성 직원이 직면한 성별 격차나 문제, (3) 수익자들을 목표로 하는 이익이란 면에서 프로그램, 연구 그리고 평가 결과들, 그리고 (4) 초반의 성평등과 발전 계획과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잔여 문제를 대면하기 위한 기관 성평등과 발전 자금 감사 결과와 작년 성평등과 발전 계획과 예산과 성평등과 발전 성과보고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43) MCW-시행 규칙(MCW-IRR)과 규정의 37A.1c 항에 따르면, 성평등과 발전 예산은 다음 내용 중 하나 혹은 조합을 사용하여 할당될 수 있다. (1) 성평등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개별적인 성평등과 발전 기금 (2) 주요 프로그램과 연구(성 주류화) 내의 성인지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금 (3) 성인지적 공적 개발 원조 기금 연구를 지원하는 자금

증가시키는 방법이다(PCW-NEDA-DBM, 2012;1-3).

③ GAD 편성일정과 절차

연간 GAD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필리핀여성위원회가 부처와 공공기관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는 2년 전(9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각 부속기관, 관청과 지방정부 등에 해당서류 제출기간을 공지하며 부속기관, 관청, 지방정부는 GAD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해당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이를 검토하며 검토의견을 재송부하게 된다(PCW-NEDA-DBM, 2012;4-10).

GAD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제출마감 1년 전의 시점에서 수정된 서류는 필리핀여성위원회에게 제출되며,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다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송부한다. 필리핀여성위원회로부터의 검토의견과 권고 개선사항은 6주 내에 해당 부속기관, 관청, 지방정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여성위원회는 GAD 계획서를 통합하기 시작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수정된 서류를 다시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제출하고,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수정된 GAD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제출시기에 맞추어 재정부(DBM)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재송부한다. 재정부는 정부부처와 담당 중앙관서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GAD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최종예산을 준비한다. 재정부는 연방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체 국가예산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의회는 정부의 승인예산을 포함하는 일반예산을 의결하게 된다(PCW-NEDA-DBM, 2012;4-10).

④ GAD 계획서의 제출, 검토 및 승인

GAD 계획과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는 모든 기관은 GAD 계획서를 작성하여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모든 정부기관, 관청, 정부 산하기관 등은 연간 GAD 계획서를 그들의 권한 내에서 작성하며⁴⁴⁾ 기관의 GFPS에서는 제출된 모든 GAD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의견과 권고사항

44) MCW-IRR 37A.1항

을 제시한다. GFPS는 최종적인 GAD 계획과 예산에 부합하는 GAD 성과보고서를 재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기 전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제출⁴⁵⁾한다. 연간 GAD 계획서를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의 서류는 검토를 위해서 중앙부처로 보내지며 중앙부처는 부속 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의 GAD 계획과 예산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연간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고, 연간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의견을 전달하며, 연간 GAD 계획과 예산편성의 수정 후 재제출 등을 요구한다. 수정된 GAD 계획서를 수령하고 승인한 뒤 필리핀여성위원회는 모든 수정된 GAD 계획서를 다시 재송부함으로써 GAD 계획서와 함께 일반예산요구안이 재정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여성위원회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특정 조건 하에 승인하게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받은 경우와 제시된 수정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의해 수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PCW-NEDA-DBM, 2012;4-10)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예산요청을 위하여 필리핀여성위원회에서 승인한 GAD 계획서과 일반예산요구안을 작년 GAD 성과보고서과 함께 재정부에 제출한다. 일반세출예산이 승인되고 기관의 최종예산을 바탕으로 예산과 프로그램 조정이 이루어질 때 각 기관은 조정된 GAD 계획서를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정된 GAD 계획서는 추후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의 기반으로 활용된다(PCW-NEDA-DBM, 2012;4-10).

⑤ GAD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필리핀여성위원회의 승인서와 조정된 GAD 계획서를 수령한 즉시 기관의 장은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한 후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집

45) 서류가 PCW(필리핀 여성위원회)에 제출될 때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다. (1) 기관장에 의한 서명을 포함한 기관의 GFPS가 GAD 계획과 예산 및 GAD 성과보고서를 검토하였다는 것을 필리핀 여성위원회에 알리는 공식문건 (2) 개별적인 GAD 계획과 예산과 부속 기관, 관료 그리고 지방청의 GAD 성과보고서와 함께 중앙관서의 GAD 계획과 예산과 GAD 성과보고서 (3) 진술서에 GAD 계획과 예산과 GAD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 관청의 목록 그리고 기관장의 이름, 각 GFPS 의장의 연락처이다.

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공표한다⁴⁶⁾. 필리핀여성위원회가 승인한 GAD 계획과 예산을 수정했다면 기관은 필리핀여성위원회에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령했다는 사실과 그 수정사항이 다시 승인되었는지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GAD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결과와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기관들은 필리핀여성위원회, 기타 감사기관, NGO, 성평등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은 GAD 관련 지표를 현재 존재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통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PCW-NEDA-DBM, 2012;4-10).

⑥ GAD 성과보고서 준비 및 제출

필리핀의 공공기관, 청, 정부 산하기관 등은 GAD 성과보고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의 GFPS는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GAD 계획서 혹은 최종 승인된 일반세출예산에 맞추어 조정된 GAD 계획서를 토대로 연차 GAD 성과보고서를 준비하게 된다. 기관이 주요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나 전체를 GAD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합 GAD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여 GAD 예산으로서의 실제 지출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결과는 필리핀여성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간 GAD 성과보고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보고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간단한 개요, 보고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설명자료 사본, 통합 GAD 가이드라인 대비 검토결과, 기관이 감사결과와 권고사항에 따라 시행한 조치 등이 해당된다. 필리핀여성위원회는 기관이 GAD 계획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며 재정부와 감사위원회에도 사본을 제출한다(PCW-NEDA-DBM, 2012;4-10).

46) 책임자는 기관의 성평등과 발전 초점체계를 지시할 것이며 이는 (1) GPBs 성평등 발전 계획과 예산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부속 기관, 관료 그리고 지방청에 기술적인 지원 제공, (2) 시행방법을 추적 관찰, (3) 성평등과 발전 성과보고서를 준비·제출하는 것을 보장, 그리고 (4) GPBs 성평등 발전 계획과 예산 시행 보고서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⑦ GAD 감사

필리핀 감사원은 GAD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시행하며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GAD에 대한 국가의 약속, 정부의 계획 및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필리핀 감사원은 모든 정부기관, 청, 정부 산하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와 전문학교, 정부 소속/관리법인, 지방정부 등의 GAD 예산사용에 대해 연례 감사를 실시한다(PCW-NEDA-DBM, 2012;4-10).

3)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필리핀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⁴⁷⁾.

이에 필리핀 Malaybalay시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필리핀 국가경제발전위원회, 필리핀여성위원회, 재정부의 공동 회람(joint circular)은 GAD 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추경예산에까지 GAD가 적용되며 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서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GAD 예산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되 GAD 계획과 예산편성은 GAD TWG(technical working group)에서 담당한다. 즉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일반예산안을 바탕으로 GAD 계획서에 적합한 사업을 선별하고 GAD 예산편성을 하는 작업은 GAD Council이 담당하는 것이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GAD에 포함되는 사업의 구성은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에 포함되

47) 2004~2005년 UNIFEM은 두 개의 지방정부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여성단체인 Women's Action Network for Development(WAND)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WAND는 Sorsogon시의 경우 보건분야, Hilongos시의 경우에는 농업분야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계자의 역량강화,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공동개입 등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UNIFEM & WAND, 2006).

는 예산액은 매년 달라지며 지역마다 GAD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업을 GAD에 포함시킬 것인지, GAD 예산은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방정부의 GAD TWG에서 결정하며 Malaybalay시의 GAD TWG는 다섯 명의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GAD TWG는 다양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GAD에 대한 기본훈련을 제공받은 후 GAD Focal Person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필리핀의 GAD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된다. 예를 들어 엄밀한 의미에서 GAD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경우에 따라 GAD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지방정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자주도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정부마다 GAD 예산을 포함한 일반예산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책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Malaybalay시의 경우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모두 통합하여 시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provincial government)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Commission on Audit)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필리핀의 감사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Malaybalay시에도 독자적인 감사원이 있으며 감사결과는 매년 시정부에 제공된다. 광역자치단체도 시정부 예산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송부하는데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 시정부의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Malaybaly시 예산의 5%는 GAD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잡히고 있으나 나머지 95%의 예산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시공무원의 언급이 면담동안 있었다. 예를 들어 Baranguay에서 물의 공급이 여성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시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특히 여성주민의 정책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즉, Malaybalay시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필리핀 정부는 국민에게 배분되는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Community-Based Monitoring System (CBMS)라는 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에 Malaybalay의 시정부에서도 CBMS 도입을 고려했으나 지방정부체계에 더 잘 맞고 지방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대상 수요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CBMS에 Malaybalay시에 적합한 설문조사 문항들을 추가한 Malaybalay Integrated Survey System(MISS)가 도입되었다. CBMS에는 13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초기 MISS는 2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6번의 시도 끝에 MISS 문항은 92개로 감소하였다(MISS Office, 면담).

이처럼 필리핀 Malaybalay시에서는 지역사회대상 수요조사 시스템인 MISS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MISS는 시정부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 설문조사에서 단순히 숫자적인 정보를 파악하던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MISS에 지역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이며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MISS 조사결과는 분석을 통해 시정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정부 활동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MISS Office, 면담).

MISS는 지역주민이 정책수요조사에 응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측면 외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Barangay Health Workers(지역보건소의 인력-BHW)들이 직접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더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시정부와 시에 속한 Barangay들은 BHW들이 더 원활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방법 및 데이터 코딩을 위한 컴퓨터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비용은 시정부 및 Barangay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MISS는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장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MISS Office, 면담).

MISS를 활용한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의 임신부를 파악하여 임신부가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신부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집에서 출산하기보다는 병원에서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한부모 가정을 파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혼여성, 실업여성, 빈곤층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MISS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MISS에 수록되어 있는 설문문항이 지나치게 많으며, 더 이상 중요하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문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설문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정리하며, Barangay들에게는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검토를 거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즉 Barangay들은 직접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MISS를 매년 시행하여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Malaybaly City Office 면담, 2014).

다. 소결

2004년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한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에서는 2013년도 다시 여성가족부와 재정부의 주도 하에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요청하여 일반 예산과정에서 ‘성과주의’와 ‘성주류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12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예산시스템을 MBS(Modified Budgeting System)에서 OB(Outcome Based Budgeting) 로 전환하면서 다시금 성인지예산

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집행의 결과를 관리하고 참여, 효율성, 투명성 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 예산제도의 변화와 성인지예산의 접목은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3;10-18).

말레이시아에서는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다음을 꼽고 있다. 성인지예산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자문을 통한 자발적 참여 증대, 성인지예산을 투명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공무원 역량강화, 성별 구분통계의 구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간의 협의, 성별 구분통계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강화 등이 요구되며 각 정부부처가 참고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체크리스트와 같은 명확한 방법론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3;48-49).

즉 성평등과 관계된 투입(inputs), 산출(outputs), 성과(outcomes)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의 성과지표의 유형을 확대하여 ‘형평성’(equity)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적 비용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로 환산되기 힘든 투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효과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성과주의 예산에서 간과하기 쉬운 돌봄 경제(care economy)나 무급 돌봄노동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을 통해 젠더와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중요한 정책결정에 이와 같은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3;19-38).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과와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운영의 첫 출발은 연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제도가 전부처 또는 모든 지방정부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적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페낭시의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등에서의 공식적 제도운영이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남

녀주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한적 접근에서 한층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V-7〉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및 제도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도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련법, 규약, 시행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 - 제 8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Eighth Malaysia Plan)내 여성과 개발에 대한 목표 (Women and Development Objectives) -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에 삽입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조항 (the Gender Equality Commitments) - 199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성주류화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의 성주류화 전략은 5개년 개발계획과 10년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2001년 여성가족부(Ministry of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MWFD)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증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다른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주류화를 지원하고 조정하도록 함 - 2003년 경제계획유닛(Economic Planning Unit, EPU)에서 여성가족부와 UNDP(재정, 기술 지원)의 파트너십에 의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승인. 이에 따라 2003년~2005년에 UNDP와 여성가족부간의 협력을 통한 성인지예산 분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함 - 2005년 성인지예산 매뉴얼(Manual on Gender Budgeting in Malaysia)을 발간함 - 2006년 성인지예산관련 교육훈련 매뉴얼(training manual)을 제작하고, 의회 의장은 시범사업 참가 부처 이외의 부처에서도 젠더이슈를 예산서 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UNDP - 재정부 - 경제계획유닛,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재정부로 구성된 워킹그룹(워킹그룹에는 국제 성주류화 전문가와 국내 컨설턴트 포함)

구분	내용
<p>제도 및 운영방법 및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시범사업 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국가수준 혹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재실시하고자 방안을 모색 중임 ➢ 다른 국제원조 수여국에 비하여 자국의 예산운용에 있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녀와 소년 및 기타 다른 유형의 다른 또는 불이익 등도 포함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보건부, 인적자원부, 농촌개발부에서 프로그램을 선별한 후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실시함 - 파일럿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훈련으로 재정부와 국립행정원소속 공무원들과 기타 부처 및 기관 내 성인지담당관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시킴 ➢ 시범사업에 사용한 성인지예산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산접근법(The three categories of expenditure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1) 여성을 위한 예산, 2) 정부고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3) 나머지 일반예산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성주류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기에 적합함 ② 5단계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수요조사, 2) 정책, 프로그램, 3) 투입, 4) 결과, 5) 영향/성과의 단계를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 수혜자의 젠더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함 ➢ 예산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이미 결과중심의 예산서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성과주의 일반예산서(ABM-2)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켜 성인지예산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 - 네 개 부처에서 대상사업 선정 시 운영예산(operating budget)과 개발예산(development budget)에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산유형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각각 다른 예산양식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M-2 양식을 사용함. 젠더이슈를 포함시킬 때 추가 항목이 거의 필요하지 않음 ② 개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답형 작성항목이 많으며, 몇몇 항목에서 젠더나 기타 형평성 이슈를 포함
<p>지방 성인지예산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페낭의 성인지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PWDC(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이 창설됨.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페낭주정부의 정책의 성주류화 도모와 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됨 - 참여예산과 함께 운영됨으로써 두 가지 예산모델이 결합한 형태를 가짐 - 페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2)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FGI 실시, 3) 지역주민의 투표, 4) 사업/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행

한편 필리핀의 GAD에 대해서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⁴⁸⁾. 필리핀 재정부에서 1997년부터 회람시키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GAD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는 2001년부터 지방정부에게까지 확대되었다. GAD 실시 이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의 남녀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감소되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과정에 시민사회가 더 참여하게 되었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GAD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와 민간섹터,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GAD를 통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뇌물수수나 부패 등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PCW, 2014;www.pcw.gov.ph).

필리핀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과와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의 5% 이상을 GA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GAD 예산편성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성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예산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실시해보면 결과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GAD 예산 편성 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과 같이 5% 이상의 예산을 GAD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도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8) <http://www.pcw.gov.ph/focus-areas/gender-responsive-governance/initiatives> 참조

〈표 V-8〉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및 제도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권리장전(MCW) - RA 9710 - 일반세출예산법(GAA)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73, #43 - 국제협약인 유엔협약(CEDAW), 북경행동강령(BPfA),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등도 성인지예산제도를 뒷받침함 ➢ 예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구조(The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 바탕을 두고 각 예산부문별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부처 내 조직의 업무성과 지표구조(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ramework)를 포함함.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의 주요 최종산물(Main Final Outputs)을 작성하고 주요 최종산물과 GAD 목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연결시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성주류화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공화국법(Republic Ac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 예산을 규정하고, 공식적 개발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여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1995년 일반세출예산법(General Appropriations Acts, GAA)을 개정하여 GAD 조항을 삽입함. 모든 정부부처가 총세출예산의 최소 5%를 성불평등 또는 젠더이슈를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할당할 것을 규정함 - 1998년 GAD 계획 및 예산편성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과 대학 및 공기업으로 확산하여 실시 - 2001년 필리핀 내무부(DILG), 필리핀여성위원회(NCRFW) 및 재정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람을 GAD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전문대학 및 대학, 지방정부 등에 송부함 - 2004년 필리핀 재정부, 국가경제발전위원회(NEDA) 및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연간 GAD 계획과 예산편성 준비방법,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배포함 - 2009년 필리핀 감사원(Commission on Audit, COA)에서 GAD 예산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식적 회람을 전달하고 재정부 등 총 5개 기관의 GAD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재정부 - 국가경제발전위원회 - 필리핀여성위원회

구분	내용
제도 및 운영 방법 및 절차	<p>➢ GAD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에서는 GAD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GAD 계획과 예산편성은 매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일부분으로 관련 사업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반예산요구안 및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GAD 계획 및 예산편성은 이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예산의 일부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아님. 또한 전체세출예산의 5%를 GAD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필리핀은 공식적인 GAD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성인지적 분석, GAD 계획과 예산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업, 프로그램, 활동, 프로젝트 등의 성주류화를 도모하도록 함 - 재정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내무부, 공무원위원회, 감사원 등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GAD 계획과 예산을 모니터링하며 필리핀여성위원회, 재정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연도별 GAD 계획과 예산편성, 성과보고서 안내 지침을 공동 개발함 <p>➢ GAD 가이드라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필리핀여성위원회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처 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GAD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2003년 단일화된 GAD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춤 ② 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추구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도구를 제공함. 또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에 성주류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 ③ 구성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질문 및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GAD의 필수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함 2)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GAD 지침을 제공함 3) 개발프로젝트의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GAD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p>➢ 신규 개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GAD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발프로젝트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담당자와 평가자는 젠더현안과 여성의 특별한 요구를 식별하고 프로젝트가 각 GAD 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충족시켰는지 점검하여 GAD 점수를 계산함 ② 개발프로젝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분석에서 식별된 성불평등 사안과 프로젝트 시행, 관리, 결과 등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 ③ 개발프로젝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GAD 요건에 대한 평가와 기대결과를 기술해야 하며, 개발프로젝트의 식별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에서 계산한 GAD 점수에 따라 프로젝트가 GAD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프로젝트의 분야별 GAD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담당자와 평가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각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에 Philippines Plan for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PPGD) 중기계획의 우선순위 반영여부, 젠더분석 및 영향 예상과 이를 위한 자원배분,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의 사항이 잘 포함되도록 함 ➢ 개발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GAD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기관 또는 관리팀(PMO)이 프로젝트의 성평등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개발프로젝트의 진행과 성과는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공식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이루어짐 ➢ 필리핀국가여성위원회, 국가경제발전위원회, 재정부 합동회람(2012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회람의 수신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공서, 지방정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 및 대학, 정부부처 산하기관, 의회 및 사법기관 등을 포함하며, GAD 계획과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GAD 계획과 예산의 생성단계에서의 확인사항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됨 - GAD 예산은 기관의 총 할당예산 외의 추가적인 예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GAD 편성일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전(9월), 필리핀여성위원회가 부처와 공공기관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공지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각 부속기관, 관청과 지방정부들로부터 제출된 GAD 계획서와 결과보서를 검토하며 검토의견을 재송부 → 제출 마감 1년 전의 시점에서 수정된 서류는 필리핀여성위원회에게 제출,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송부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수정된 서류를 다시 필리핀여성위원회에 제출, 필리핀여성위원회는 수정된 GAD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해당기관에 재송부 → 재정부는 정부부처와 담당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GAD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최종예산을 준비 → 재정부는 전체 국가예산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의회는 정부의 승인예산을 포함하는 일반예산 의결 ➢ GAD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여성위원회의 승인서와 조정된 GAD 계획서를 수령한 즉시 기관장은 GAD 계획과 예산편성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공표 ➢ GAD 성과보고서 준비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공공기관, 청, 정부 산하기관 등은 GAD 성과보고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함. 기관의 GAD 초점체계(GAD Focal Point System, GFPS)는 조정된 GAD 계획서를 토대로 연차 GAD 성과보고서를 준비함. 통합 GAD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여 GAD 예산으로서의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는 필리핀여성위원회에 보고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여성위원회는 기관이 GAD 계획과 예산을 통히 실질적으로 달성한 성과 평가 보고서를 의회 등에 제출함 > GAD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감사원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성의 역량강화, GAD에 대한 국가의 약속, 정부의 계획 및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예산 사용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시행함
지방 성인지 예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Malaybalay시의 성인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GAD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음. 지방정부마다 GAD 예산을 포함한 일반예산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책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임. 또한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자주도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에서의 GAD 예산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되 GAD 계획과 예산편성은 GAD TWG(Technical Working Group)에서 담당함 - Malaybalay시의 경우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모두 통합하여 시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함. 예산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Malaybalay시의 독자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됨 - Malaybalay시는 1990년대 초 필리핀 정부의 설문조사 시스템인 CBMS에 Malaybalay시에 적합한 설문조사 문항들을 추가한 MISS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활용하고 있음

3. 정책 시사점

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측면

상기에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가 KSP의 일환으로 소개될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현재 2014년도 KSP 중 모듈화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채택되어 모듈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 상기에서 밝힌 것과 같이 KSP 모듈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해외에 소개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에 따라 모듈화 작업이 진행된다. 모듈의 세부내용은 모듈화가 이루어지는 특정 정책의 목표와 성과,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추진전략과 체계,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성공요인 및 향후 개선 과제, 다른 나라와의 공유를 위한 시사점 등을 포함한다.

특정정책에 대한 모듈은 집약적으로 특정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모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다수일 수 있고 국가마다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본 보고서에서 이미 다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성인지예산 운영경험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의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페낭)에서 자생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의 접목이 이루어진 성인지예산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대학 등에까지 전체 예산의 5%를 ‘젠더와 개발’의 이름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어떻게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시행의 동력과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이다. 한편 필리핀으로서는 기존의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을 5% GAD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나머지 95%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특정정책에 대한 모듈은 모든 나라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에 현실을 인정하고 각 국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파트너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종교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한 숙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중동지방의 산유국에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할 때 해당국의 여성의 지위가 종교 및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정에 있어 다른 방식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만도 큰 성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모듈화 사업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이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특수성(cross-cutting issue) 때문에 하나의 단일모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너국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주로 조세재정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요청하는 경우 성주류화의 도구이면서 재정제도가기도 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이중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자문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주류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재정제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서 조세재정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때 한 부분으로 함께 소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이 아직까지는 경제정책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재정제도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즉 파트너국의 현실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인지, 재정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development)와 젠더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파트너국에서 경제성장과 성불평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당면한 성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경제성장(development)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경우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증대와 여성정책사업을 위주로 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점차적으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예산 재배분 또는 사업운영방향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분야, 우선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성평등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평등지수 측면

국제 성평등지수(GGI, GII, GDI, SIGI)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수가 존재하며 성평등과 관련된 지수를 인간개발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문화 및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적절한 성평등지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3년에 발표된 WEF의 성격차지수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은 5위, 우리나라는 111위를 차지하였다(WEF, 2013). 우리나라 여성이 처하여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절대적인 수준은 필리핀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높지만 필리핀 안에서 남녀 간의 격차와 우리나라 안에서 남녀 간의 격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성격차지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 제도가 과연 필리핀에 모듈로 소개되거나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과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필리핀의 성격차지수가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KSP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격차지수 외에 필리핀의 순위가 낮게 나타난 성불평등지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의 생식건강, 교육, 노동시장참가율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초점은 필리핀 내에서 남녀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여성이 처해있는 열악한 조건의 절대적인 수준제고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 국가의 경우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가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때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성불평등 또는 성평등 수준은 파트너국의 상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제 성평등지수는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않

고 모듈로 파트너국에 소개될 때 그저 모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성평등수준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국제 성평등지수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파트너국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짧게라도 첨부한다면 파트너국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 단위의 국제 성평등지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인지예산제도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같이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파트너국이라면 우리나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거나 지역사회의 여성 혹은 성평등 관련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달성 또는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14년도 모듈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파트너국의 상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제도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1. 종합논의	263
2. 정책과제	268

1. 종합논의

본 연구는 201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 연구의 로드맵을 가지고 실시한 4차 연도 연구이면서, 종합연구의 마지막 연구이다.

1-3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실무지원 단기성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였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분석연구는 물론 주요국의 재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성인지예산서의 DB화 및 팩트를 분석하였다.

한편, 중점연구과제로 본 보고서의 1, 2, 3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로드맵은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좌표일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는 성인지예산의 효과를 측정하고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조사설계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 뿐 아니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으로 인해 작성담당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기회비용 등 비용 측정이 필요함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KSP 모듈화사업 및 국가정책자문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후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선택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 로드맵 수립의 타당성을 도출하고 단계별 목표와 전략수립을 수립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은 발전단계별 목표-전략-세부과제-구체적으로 실행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연구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전체 계획기간을 중기와 장기로 나누어, 해당기간에 필요한 발전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숙 단계(2014~2018)로 정의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정부책임성 강화의 목표를 위해 4개의 전략과 9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성숙단계의 4대 전략은 제도적 기반확충,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성인지예산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으로 설정하였다. 장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고도화단계(2019-)로 정의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정부책임성 강화 및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목표를 위해 2개의 전략과 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고도화단계의 2대 전략은 인적 기반 확대,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이다.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진단하여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하였다. 작성담당자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향후 패널자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으며, 성인지예산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성담당자의 인지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결산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행동변화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최초 작성자 보다,

2014년 이전 작성경험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까지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거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평등 관점을 사업운영 전반(예산 편성, 집행, 사업평가)에 고려하게 되기까지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들의 작성에 대한 화폐 단위 비용 혹은 WTP(willingness to pay)를 추정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의 추정치가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제적인 성격의 개선(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추가) 보다는 자발적 성격의 개선(교육강화/인센티브 도입 등)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였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 인식 변화, 의견 등을 파악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을 가진 공무원과 작성경험을 갖지 않은 공무원간에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정도, 수용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보다 비작성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정책 추진의 중요성 역시 작성 공무원 보다는 비작성 공무원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수용도에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가 제도운영 및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작성지침 숙지 및 교육경험은 광

역자치단체 소속과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광역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과 사업담당자를 비교한 결과 예산담당자의 평가가 사업담당자의 평가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들이 예산담당자들보다 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외부지원(작성지침, 교육, 컨설팅)을 이용한 경험은 예산담당자가 사업담당에 비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이후 경험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의 평가가 사업담당자의 평가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예산담당은 전체 과정을 총괄하게 되므로 성인지예산제도로 인한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현행 작성지침도 사업별 작성예시가 제시되어 있는 등 사업담당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또한 예산담당은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른 지방재정 관련 예산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부산, 광주, 제주, 대전, 전북지역의 공무원들의 제도운영 경험이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관련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해외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존에 경제개발경험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KSP의 다른 영역과 주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가 경제발전공유사업의 일환으로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2014년도 KSP 중 모듈화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채택되어 모듈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의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페낭)에서 자생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의 접목이 이루어진 성인지예산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어떻게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시행의 동력과 추진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지 등일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대학 등에까지 전체 예산의 5%를 ‘젠더와 개발’의 이름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나머지 95%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에 발표된 WEF의 성격차지수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은 5위, 우리나라는 11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격차지수 외에 필리핀의 순위가 낮게 나타난 성불평등지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의 생식건강, 교육, 노동시장 참가율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성인지예산제도의 초점은 필리핀 내에서 남녀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여성이 처해있는 열악한 조건의 절대적인 수준제고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제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가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때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 단위의 국제 성평등지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지방정부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거나 지역사회의 여성 혹은 성평등관련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달성 또는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정책과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09년 최초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래 성인지예산제도는 대상사업의 수와 예산규모 면에서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정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결산서 작성까지 이루어지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증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운영 및 점검 시스템 마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지예산제도 증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부과제 중 제도의 완성도가 낮은 과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협의(상설협의체)를 바탕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상설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⁴⁹⁾

우선, 성숙단계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성평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가적 성평등 목표,

49) 현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내에 성인지예산팀이 있으나(2014.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및 소속·관련 기관의 예산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지닌 상설협의체(2014.6. 신설)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성숙단계가 지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상황에 비해 많이 발전·정착될 것이다. 따라서 고도화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성숙단계의 과제들의 시행 정도를 평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마지막 단계인 고도화 단계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에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제도의 운용에 따른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공무원 패널 조사의 구속력 강화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이하 공무원 의견조사로 표기함)를 2011년부터 시행해왔다. 2011~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올해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으로 인해 작성담당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기회비용 등을 측정하기 위해 패널 자료구축을 염두해 두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 의견조사는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작성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와 비용(시간당 임금 단위로 추정된 작성 비용)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조사는 근거법령이나 정부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무원 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이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성인지예산 상설협의체⁵⁰⁾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0) '14.6.26. 상설협의체가 신설되었다(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상설협의체 관련 공문 발송).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대상사업 검토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 및 성인지예산서 정부안 최종 점검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참석대상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의장), 재정관리국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기타 안전별로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

지방 공무원의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취지에 대한 공감정도이나 수용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 보다 비작성한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작성 공무원이 경험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지속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과 제도의 긍정적 측면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은 공무원의 소속 및 담당업무에 따라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 시·군·구별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발간해야 하며, 예산담당은 사업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가 사업담당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제도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의 1차적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체계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의 특성상 자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한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과 컨설팅은 지역별로 실시한 편차가 컸다. 따라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성

인지예산 교육과 컨설팅이 보다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상기의 내용들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조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 컨설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파트너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모듈 개발

모듈화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적 소개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각 국가별 맞춤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KSP 모듈화사업은 일반적인 사례로 사업 특정국가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초기에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한 나라를 중심(특히 아시아권 국가)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예: 중동국가 및 이슬람 국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정책에 대한 모듈이 모든 나라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각 국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파트너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종교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한 숙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특수성(cross-cutting issue) 때문에 하나의 단일모듈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각 파트너국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모듈화 사업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이 KSP 국가정책 자문사업에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국가정책자문사업으로 요청하는 경우 성주류화의 도구이면서 재정제도이기도 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양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자문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이 아직까지는 경제정책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재정제도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2014), “사업체노동력조사”.
- 기획재정부(2013a),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2010-2013).
_____,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10-2014).
- 김영옥 외(2010a),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
- 박수범 외(2014), 『지방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_____(2013), 「성인지예산제도 5년 성과와 과제」 포럼자료.
_____(2014),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115-116.
- 윤영진(201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제2차 GB포럼 발표자료.
-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주영 외(2012),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3a),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3b),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조선주 외(2011a),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2a),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3a),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I):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3c),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 하연섭(2010),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내부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한눈에 보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한국개발연구원·여성가족부(2014), 내부회의자료.

(2) 해외문헌

Asian Development Bank(2013), Delivering Results and Gender: Promoting Women's Empowerment throug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Malaysia.

Haab and McConnell(2002), Valuing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The Econometrics of Non-market Valu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Malaysian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2005¹), Gender Budgeting in Malaysia

_____ (2005²), Manual on Gender Budgeting in Malaysi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ender and Development Network(2007), 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7), Performance Budgeting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2014), Asian Regional Conference Report.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2012), Joint Circular No. 2012-01.

Sharp, Rhonda(2003), Budgeting for Equity: Gender Budgeting Initiatives within a Framework of Performance Oriented Budgeting.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UNIFEM), United Nations, New York.

Sharp, Rhonda and Broomhill, Ray(2002), Budgeting for Equality: The Australian Experience". Feminist Economics 8(1): 25-47.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UNIFEM) & Women's Action Network for Development(WAND)(2006), The Local Level Gender Budget Initiative in the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Research Centre(KANITA)(2011),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hy we should adopt it and how.

World Economic Forum(2013), Gender Gap Index.

(3) 인터넷 자료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http://www.ksp.go.kr>
- <http://www.ksp.go.kr/kr/pillars/policysnap.jsp>
- <http://www.ksp.go.kr/kr/pillars/jointsnap.jsp>
- <http://www.ksp.go.kr/kr/pillars/modulsnap.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필리핀 GDA(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 <http://www.pcw.gov.ph/focus-areas/gender-responsive-governance/initiatives>

(4) 인터뷰 자료

PWDC 면담자료(2014.2.24.-25). Asian Regional Conferenc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Narratives: Transforming Institutions, Empowering Communities 주최측인 PWDC 담당자 면담.

Malaybaly City Office 면담자료(2014.5.19.-22). 시 행정부시장(City Administrator) 및 예산부서장(City Budget Officer) 면담.

Malaybalay Integrated Survey System Office 면담자료(2014.5.21). MISS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목록

(1) 국내문헌

- 기획재정부(2011a), 『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_____ (2011b),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_____ (2013b), 『2014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_____ (2013c),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_____ (2014),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김경희 외(2007),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를 통한 성인지예산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동식·황정임(201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2007a), 『성인지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7b),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8),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 성인지예산(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9),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I):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0b),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9),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0a), 『201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_____ (2010b),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1a), 『2010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_____ (2011b), 『2012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_____ (2011c),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2a), 『2011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_____ (2012b),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_____ (2012c),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3a), 『2012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_____ (2013b),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4a), 『2013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_____ (2014b),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 마경희·김효선(2009),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 외(2010),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심사와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범 외(2013),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윤영진 외(2007),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8),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용중(2007),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16호(2007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
- 조선주 외(2011b),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성별수혜격차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2b), 『성인지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3b), 『성인지결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조선주(2013),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성과와 과제”, 2013년 한국여성학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3), 2013년 성인지예산포럼 자료집.
- 한국개발연구원·여성가족부(2014), 내부회의자료.
- 황정임 외(201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 2012년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해외문헌

Briones and Valdez(2002), Institutionalizing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Philippines: the Beginning,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UNIFEM), United Nations, New York, 28-33.

(3) 인터넷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http://gb.kwdi.re.kr/>

Gender Responsive Budgeting

- <http://www.gender-budgets.org>

UNDP

- http://www.undp.org.my/index.php?act=oth&oth_id=261

- http://www.un.org.my/index.php?act=oth&oth_id=412

- http://www.undp.org.my/index.php?navi_id=191



부 록

[부록 1] 2015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83
[부록 2]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89
[부록 3] 2011~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296
[부록 4]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299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그룹, B그룹) 설문지	314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그룹) 설문지	330

[부록 1] 2015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0 0 부

1. 성평등 목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각 부처별 주요정책 등 고유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기술

○

-

(예)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여성 진출이 저조한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참여 활성화

2. 사업 총괄표

사업별 현황

* 예산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14년 (A)	'15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일반 회계	(‘14년도 사업명)*					
	- (내역사업명)					
	**	1,234**	(공란)	1,234	순감	*'15년부터 부로 이관 *'15년부터 기금으로 이관 *'15년부터 사업으로 통합 *'14년으로 사업 종료 등
	***	(공란)	5,678***	5,678	순증	*'14년 예산은 백만원
	1)					
특별 회계	2)					
	- (내역사업명)					
총 계						

-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2)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15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14년도 사업명을 표기

** '14년 성인지대상 사업이 '15년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4년> 칸에란 예산 규모를 적시하고 <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설명

*** '15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14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14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14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15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15년> 칸에란 정부안 규모를 적시

* 기금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14년 (A)	'15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14년도 사업명” - (내역사업명))					
기금	**	1,234**	(공란)	1,234	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부터 부로 이관 ▣'15년부터 기금으로 이관 ▣'15년부터 사업으로 통합 ▣'14년으로 사업 종료 등
	***	(공란)	5,678***	5,678	순증	▣'14년 예산은 백만원
	1)					
	2) - (내역사업명)					
총 계						

-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2)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15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14년도 사업명을 표기

** '14년 성인지대상 사업이 '15년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4년> 칸에란 예산 규모를 적시하고 <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설명

*** '15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14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14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14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15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15년> 칸에만 정부안 규모를 적시

3. 사업별 설명자료

0 0 0 0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인 경우 사업명 병기)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 재)

'15년 예산안 : **세부사업 예산액**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 예산 기재)

사업목적 : * **세부사업인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인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정책대상

○

사업내용 : * **세부사업인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인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 사업기간 :
- 지원형태 :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 : * 사업의 목적, 대상사업 선정 사유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의 정책과제를 활용하여 기술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 제시**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12년,'13년은 집행기준, '14년은 추정치

○ 사업수혜자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12년, '13년은 집행기준, '14년은 추정치

○ 예산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small>*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small>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5년 성과목표 *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 설정

성과목표(지표)	'13년 실적	'14년 추정치	'15년 목표치

○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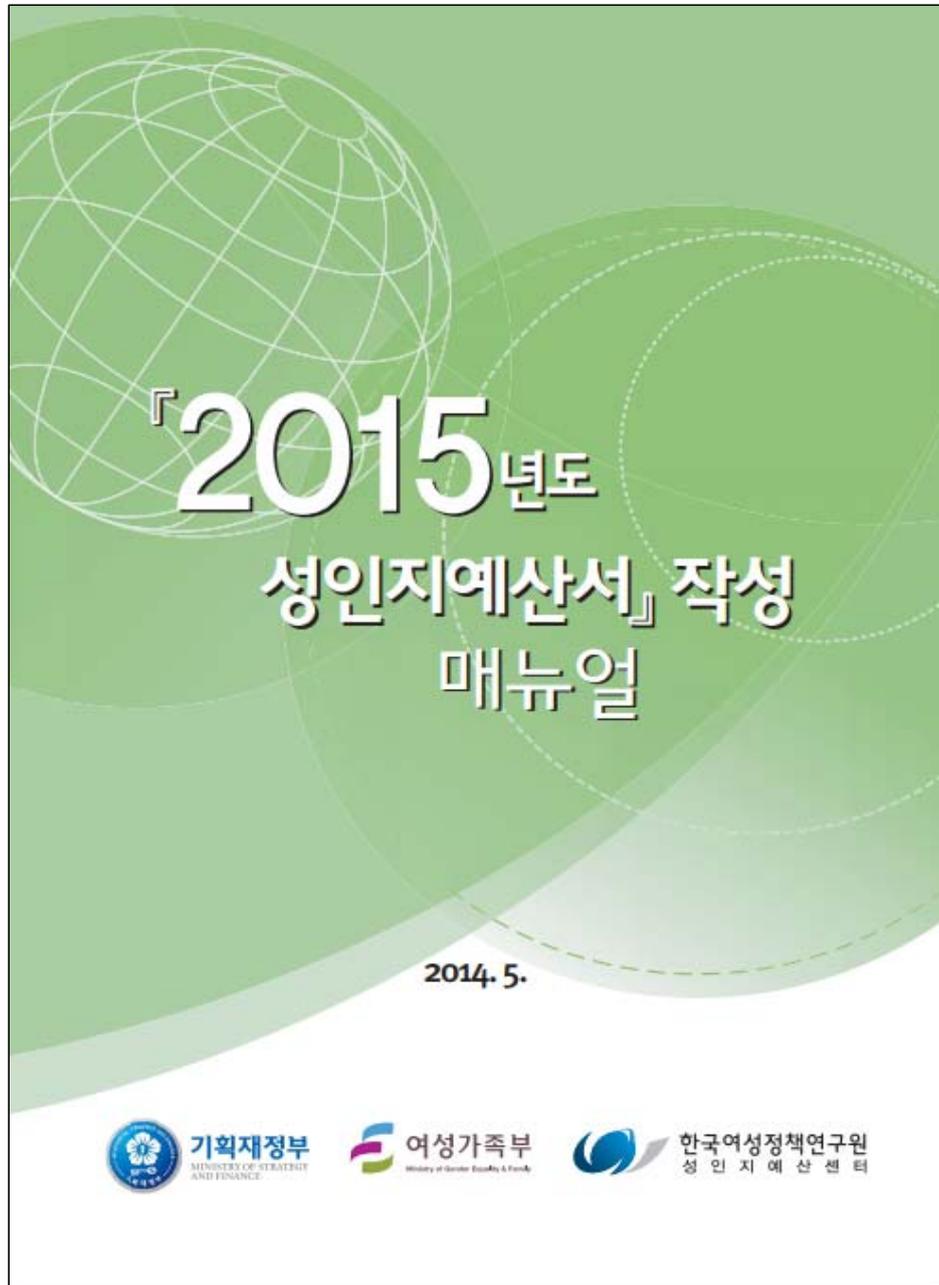
* 상기 성별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산출근거를 제시, 또한 '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평가 결과를 활용

(‘13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사항 등 '13년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를 활용

(기타)

* 상기 이외의 성과목표(지표)산출근거를 제시



*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전문은 별도의 책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 홈페이지(<http://gb.kwdi.re.kr/>)를 참조

[부록 2]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10) (HY중고덕, 11p, 진하게)

(1) (HY중고덕, 11p, 진하게 성인지결산 총괄 담당자 작성)

1. 성 평등 목표 (휴먼명조, 11p, 진하게)

□

○

-

- * '13년도 성인지 예산서 "1.성평등 목표"와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 (휴먼명조,11p)
- * '13년 예산서부터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
- * '□', '○', '-' 의 체계에 따라 작성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휴먼명조, 11p, 진하게)

□

○

-

- * 각 목표별 세부사업 수,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을 개조식으로 서술하고, 각 사업별 평가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휴먼명조,11p)
- * '□', '○', '-' 의 체계에 따라 작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휴먼명조, 11p, 진하게)

예산집행결과

(HY중고덕, 11p 작성) (단위: 백만원, %)

		' 13			' 12	(b - c)	(b/C)
		(a)	(b)	(b/a)	(c)		
(A)							
	0000	xxx	xxx				
	-	xxx	xxx				
	- 〇〇〇	xxx	xxx				
(B)							
〇〇							
〇〇							
(A+B)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총 xx 개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총 xx 개

- 세부사업의 결산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세부사업의 하위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내역사업도 기술)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내역사업의 집행결과를 합산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및 집행률(지출액/세출예산현액)을 함께 작성
- 회계별 소계(A, B) 및 전체 합계(A+B) 작성
- 세부사업 순서는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사업명 뒤에 1 표시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은 사업명 뒤에 2 표시
- 표안의 수치 옆에 단위(백만원)는 기재하지 않음

'13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HY중고덕, 11p)(단위: 개, %)

(A)	(B)		(B/A)

* 표안의 수치 옆에 단위(개)는 기재하지 않음

(2) (HY , 11p, ,)

○ ○ 사 업 (세부사업명)
- X X (내역사업명) -

* 세부사업명을 쓰되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도 기재
(휴먼명조, 11p, 진하게, 가운데 정렬)
* '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기재

사업명 : ** 사업(oo회계)

사업목적

정책대상

* 사업명, 사업목적, 정책대상의 내용은 '1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
(휴먼명조, 11p)
* 성인지 예산서와 달리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명칭과 변경사유를
"사업명" 부분에 명시
* '○', '-' 의 체계에 따라 작성

성 평등 목표

- * '13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기술하되, 성인지 예산서에서 둘 이상의 목표를 제시한 경우 가장 주된 목표를 하나만 선택하여 기술 (휴먼명조, 11p)
- * '○', '-' 의 체계에 따라 작성

집행 실적

(HY중고덕, 10p) (단위: 백만원)

(A)	(B)	(A+B)			

* (B) :

- * 세출예산액(A): 국회확정 예산액
- * 예산결정후 증감액(B) 내역: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등 내역 기재
- * 세출예산현액(A+B): 세출예산액에 예산결정 후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당해 연도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한도액(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의 합계와도 동일)
- * 지출액: 세출예산현액 중 실제 지출된 세출액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xx.x %

* 집행률 = (지출액/세출예산현액) x 100 (휴먼명조, 11p)

- 집행실적 분석:

* 다음연도 이월사유 및 불용사유 등 명시 (휴먼명조, 11p)

□ 성 평등 효과분석

(HY중고덕, 10p) (단위: 백만원,명(%))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11년	세출예산현액	100	80(80)	20(20)
	사업대상자	1,000	800(80)	200(20)
	지출액	90	80(89)	10(11)
	수혜자	900	800(89)	100(11)
12년	세출예산현액		(작성예시)	
	사업대상자			
	지출액			
	수혜자			
13년	세출예산현액			
	사업대상자			
	지출액			
	수혜자			

* 통계출처:

- * 최근 3개년 결산내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 (사업 실적자료 활용)
- * 표 하단에 통계출처를 반드시 명시
-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인 경우 “전체”란만 작성
- * ‘1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작성된 경우 성인지 결산서도 동일하게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작성
- * 사업대상자수 및 수혜자의 범위는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산출, 성인지 예산서의 범위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통계출처” 옆에 반드시 명시
-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표 하단의 “통계출처” 옆에 기재
- * 표안의 수치 옆에 단위(백만원, 명, %)는 기재하지 않음

'13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HY중고덕, 11p)

'13년 성과목표(지표)	'13년 목표치	'13년 실적치	달성여부
			달성 or 미달성

* 통계출처:

- * '13년 성과목표 및 목표치는 성인지 예산서 상의 "2013년 성과목표"와 동일하게 기재
- * 성과목표가 2개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각각 달성/미달성 여부를 명시
- * 표 하단에 실적치의 통계출처를 반드시 명시

자체평가

- * 사업의 집행실적과 성 평등 효과분석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휴먼명조 11p 작성)
- * '-', '.' 의 체계에 따라 작성

○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 성 불평등의 실태,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한 내용,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기재
(예시) 성과목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게 된 배경 및 기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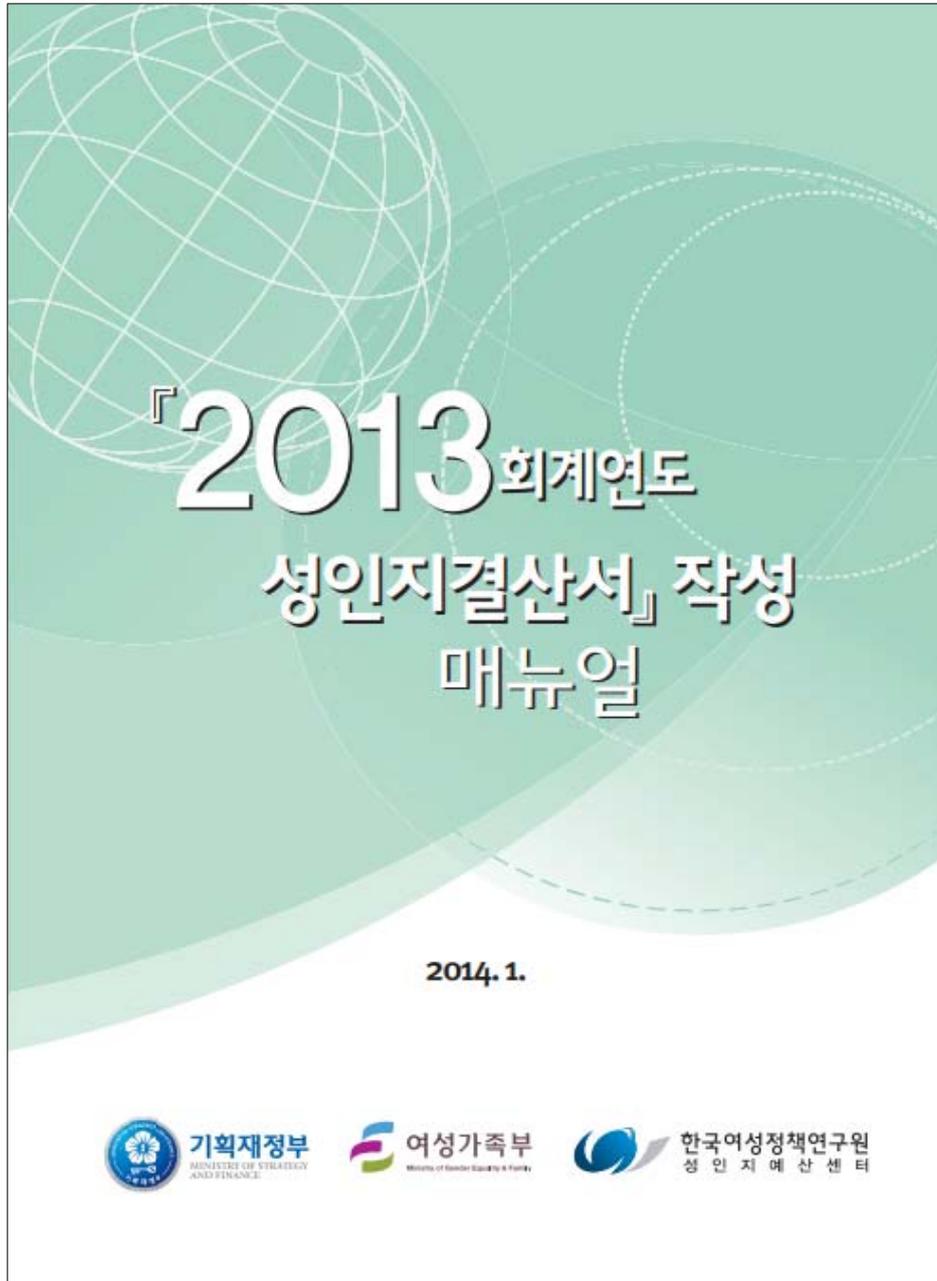
○ 결과에 대한 원인

- * 성별수혜 격차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이나 당해 사업의 성격 및 특성 등의 면에서 분석

○ 향후 개선사항

- * 향후 당해 사업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성인지결산서(기금사업) : 성인지결산서(예산사업)와 동일



*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전문은 별도의 책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홈페이지(<http://gb.kwdi.re.kr>)를 참조

[부록 3] 2011~2013년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부표 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분류	문항번호	하위 문항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평균(5점)	표준편차	평균(5점)	표준편차	평균(5점)	표준편차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문2.1	작성사업 선정기준	2.73	1.027	2.79	1.045	2.88	1.007
	문2.2	작성사업 통보절차	2.81	0.970	2.84	0.944	3.14	0.954
	문2.3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3.08	0.874	3.15	0.880	3.28	0.958
	문2.4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	3.28	0.802	3.34	0.811	3.39	0.785
	문2.5	성인지예산서 양식	3.18	0.833	3.37	0.790	3.27	0.806
작성사업 관련 내용	문3.1	작성사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04	0.876	2.96	0.999	3.06	1.015
	문3.2	네 가지 유형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3.05	0.905	3.02	0.980	3.10	0.999
	문3.3	내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3.11	0.994	3.06	1.030	3.12	1.112
작성지침 관련 내용	문8.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3.34	0.704	3.39	0.793	3.48	1.026
	문8.2	작성사업 선정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00	0.835	2.99	0.930	3.22	1.038
	문8.3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37	0.750	3.43	0.758	3.49	0.965
계	11개 문항	55점 만점		33.98		34.33		35.42
관측치(명)				209		232		213

주: 진하게 표기된 평균점수는 1차조사 평균에 비하여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경우임

출처: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p.95

〈부표 2〉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 분류	문항 번호	하위 문항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관측치 (명)	평균 (5점)	표준 편차	관측치 (명)	평균 (5점)	표준 편차	관측치 (명)	평균 (5점)	표준 편차
예산 편성 과의 연계	문31.1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9	2.91	1.115	232	2.96	1.108	213	3.20	1.121
	문31.2	예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와 예산편성을 직접 연계해야 한다	209	2.54	1.060	232	2.54	1.072	213	2.59	1.063
	문31.3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예산편성 이외의 용도 (제도개선, 인사고과 등)에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9	3.30	1.091	232	3.13	1.060	213	3.09	0.986
예산 규모 및 진행 과의 연계	문32.1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검토 시 양성평등적인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7	3.00	0.707	30	2.77	0.858	21	3.43	1.207
	문32.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17	2.59	0.870	30	2.47	0.629	21	3.10	1.179
	문32.3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의 증가를 위해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17	2.71	0.920	30	2.53	1.008	21	3.10	1.179
세 부	문33.1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189	3.11	0.967	211	3.11	1.039	196	3.38	0.961
	문33.2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189	2.88	0.923	211	3.00	1.053	196	3.21	0.990
	문33.3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 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189	2.90	0.971	211	2.96	1.041	196	3.15	0.979
계	9개 문항	45점 만점		25.93	25.46		28.24				

주: 1차 조사의 일반사업 담당자 192명 중 문33.1 ~문33.3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진하게 표기된 평균점수는 1차조사 평균에 비하여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경우임
 출처: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에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p.97

〈부표 3〉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분류	문항 번호	하위 문항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평균 (5점)	표준 편차	평균 (5점)	표준 편차	평균 (5점)	표준 편차
사업 설명자료 작성항목	문13.1	성 평등 목표분야	2.94	0.803	2.92	0.847	3.06	1.001
	문13.2	성 평등 기대효과	3.01	0.881	2.96	0.844	3.18	0.999
	문13.3	성별수혜분석	3.31	0.991	3.26	0.836	3.28	1.070
	문13.4	'14년 성과목표	3.14	0.883	3.27	0.888	3.21	0.969
성별 수혜분석	문14.1	사업대상자(모집단)관련 통계자료의 선정	3.26	0.890	3.22	0.927	3.28	1.011
	문14.2	사업대상자(모집단)관련 통계자료의 확보	3.29	0.896	3.36	0.922	3.33	1.041
	문14.3	사업수혜자 관련 통계자료의 선정	3.19	0.860	3.31	0.859	3.25	1.045
	문14.4	사업수혜자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	3.21	0.890	3.30	0.906	3.24	1.053
계	8개문항	40점 만점	25.35		25.60		25.83	
관측치(명)			189		211		196	

주: 1차 조사의 일반사업 담당자 192명 중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출처: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p.98

〈부표 4〉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분류	문항 번호	하위 문항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평균 (5점)	표준 편차	평균 (5점)	표준 편차	평균 (5점)	표준 편차
성인지 결산서 사업설명 자료	문25.1	성평등 목표	3.05	0.785	2.96	0.795	2.96	0.872
	문25.2	집행실적	2.91	0.764	2.79	0.803	2.73	0.848
	문25.3	성평등 효과분석	3.25	0.903	3.21	0.835	3.17	0.868
	문25.5	평가	3.25	0.807	3.11	0.784	3.04	0.838
성평등 효과분석 항목	문26.1	사업대상자(모집단)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	3.17	0.929	3.22	0.882	3.24	0.952
	문26.2	사업대상자 관련 통계자료의 선정	3.09	1.030	3.13	0.812	3.16	0.987
계	6개문항	30점 만점	18.72		18.41		18.30	
관측치(명)			148		140		139	

주: 진하게 표기된 평균점수는 1차조사 평균에 비하여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경우임
출처: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p.98

[부록 4]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성인지예·결산서를 담당하신 기획재정담당자 (총괄결산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담당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 연구책임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숙 연구위원 (02-3156-7123)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02-3156-7109)

■ 조사책임자 : (주)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02-3014-0168)

I.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여부

선문1. 귀하께서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하셨습니다가?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작성하셨던 시기와 작성하셨던 것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작성년도	작성당시 직급	작성 유형	
<input type="checkbox"/> 2009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2010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2011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2012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2013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2014년	_____급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성인지결산서

선문2. 그렇다면, ____년(선문2와 선문3에서 응답한 작성년도 보여주기) 에서 귀하께서는 작성당시 근무하셨던 부처는 어디입니까?

(선문2의 작성년도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인 응답자만)

<보기> 정부조직 개편 이전 기관명 (2013년 3월 이전)

(1) 국회	(2) 대법원	(3) 헌법재판소	(4) 중앙선거관리위원
(5) 기획재정부	(6) 교육과학기술부	(7) 외교통상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수산식품	(14) 지식경제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해양부	(20) 법제처
(21) 국가보훈처	(22) 국가인권위원회	(23) 공정거래위원회	(24) 금융위원회
(25) 국민권익위원회	(26) 국세청	(27) 관세청	(28) 조달청
(29) 통계청	(30) 검찰청	(31) 병무청	(32) 방위사업청
(33) 경찰청	(34) 소방방재청	(35) 문화재청	(36) 농촌진흥청
(37) 산림청	(38) 중소기업청	(39) 특허청	(40) 식품의약품안전
(41) 기상청	(42) 해양경찰청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선문2의 작성년도가 2013년, 2014년인 응답자만)
 <보기>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관명 (2013년 3월 이후)

(1) 국회	(2) 대법원	(3) 헌법재판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기획재정부	(6) 미래창조과학부	(7) 교육부	(8) 외교부
(9) 통일부	(10) 법무부	(11) 국방부	(12) 안전행정부
(13) 문화체육관광부	(14) 농림축산식품부	(15) 산업통상자원부	(16) 보건복지부
(17) 환경부	(18) 고용노동부	(19) 여성가족부	(20) 국토교통부
(21) 해양수산부	(22) 법제처	(21) 국가보훈처	(22) 식품의약품안전
(23) 공정거래위원회	(23) 국가인권위원회	(25) 금융위원회	(26) 국민권익위원회
(27) 원자력위원	(28) 국세청	(29) 관세청	(30) 조달청
(31) 통계청	(32) 검찰청	(33) 병무청	(34) 방위사업청
(35) 경찰청	(36) 소방방재청	(37) 문화재청	(38) 농촌진흥청
(39) 산림청	(40) 중소기업청	(41) 특허청	(42) 기상청
(43)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44) 해양경찰청	(45) 기타	

II.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

문1.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 귀하의 생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전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예산제도에 성별은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0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2.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생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후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나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3. 귀하는 201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십니까? 혹은 작성하실 예정입니까? (2013년 성인지결산서는 2014년 1, 2월에,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는 2014년도 7,8월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 ① 2014년에 처음으로 작성하거나 작성할 예정이다 ☞ 문 4로
- ② 2014년 이전에 작성한 경험이 있다 ☞ 문 12로

※ 다음은 201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4.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 귀하의 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신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전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5.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신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후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6.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편성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편성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7.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편성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이 없으시면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편성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이외 맡은 사업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8.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집행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 외 맡으신 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사업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집행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이 없으시면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 이외 맡은 사업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평가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10.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평가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평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0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13.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1년간 귀하께서 느끼신 점과 일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후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올해 들어 양성평등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올해 들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올해 들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소속기관의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14.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십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편성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편성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5.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 외 맡으신 사업의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십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편성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이 없으면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편성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이외 맡은 사업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16.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예산 집행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7.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 외 맡으신 사업의 예산집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 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사업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⑩ 예산집행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이 없으시면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이외 맡은 사업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과 그 외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의 평가 시 양성평등 고려 정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문18.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평가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⑨ 평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9.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 외 맡으신 사업의 평가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셨습니까?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면 ⑨ 평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이외 맡으신
 사업이 없으시면 ⑩ 이외 맡은 사업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이외 맡은 사업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성인지예(결)산제도 개선 과제

문20.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	보통	→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21. 다음은 귀하께서 작성하셨던 성인지예(결)산서의 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성인지예산서의 기입 항목
 - 기획재정담당자: 성평등 목표, 사업 총괄표
 - 사업담당자: 성평등 효과,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성과목표, 성과목표 산출근거 등
- ※ 성인지결산서의 기입 항목
 - 총괄결산담당자: 성평등 목표, 성평등 추진결과, 사업총괄표, 성과목표 달성현황
 - 사업담당자: 성평등목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달성 현황(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자체평가(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문22. 다음은 성인지예(결)산서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안된 사항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필요하다		보통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작성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소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우수 작성기관에 대한 포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작성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인사고과에 반영, 작성수당 지급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작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작성결과를 익년 예산편성에 반영 (예 :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의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보다 광범위한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의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국회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예산편성과정에 여성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23. 가장 최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시는데 걸린 총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총 _____시간

문24. 귀하께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하는데 귀하의 총 업무시간을 고려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업무시간을 할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 _____시간

Ⅳ.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

※ 다음은 통계분류를 위한 인구사회학적 내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배문3.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졸업
⑤ 대학원(박사) 졸업

배문4.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5. 귀하께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6.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십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배문7. 귀하의 직급과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_____ 급
- 현재 부처 근무기간 ___년 ___개월
- 현재 직급 재직기간 ___년 ___개월
- 공무원 재직기간 ___년 ___개월

배문8.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혼인 중 ☞ 배문 9로
- ② 별거/이혼/사별 ☞ 배문 10으로
- ③ 결혼한적 없음 ☞ 배문 11로

배문9. 현재 귀하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②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배문10.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동거 중인 자녀는 몇 명입니까? 자녀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수	동거 중인 자녀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
()명	()명	()명

배문11. 귀하께서 현재 동거하는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한 총 가구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혼자 살고 계신 경우는 1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동거하는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 중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동거 가구원 수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	경제활동 하는 가구원의 고용형태	
()명	()명	전일제 ()명	시간제 ()명

31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배문12. 귀하께서는 한달 평균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후 소득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달 평균 _____만 원

배문13.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 및 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 부터의 정기적인 금전 지원 포함)

- | | |
|------------------|-----------------|
| ① 150~250만 원 미만 | ② 250~350만 원 미만 |
| ③ 350~450만 원 미만 | ④ 450~550만 원 미만 |
| ⑤ 550~650만 원 미만 | ⑥ 650~750만 원 미만 |
| ⑦ 750~850만 원 미만 | ⑧ 850~950만 원 미만 |
| ⑨ 950~1000만 원 미만 | ⑩ 1000만 원 이상 |

배문14.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50~250만 원 미만 | ② 250~350만 원 미만 |
| ③ 350~450만 원 미만 | ④ 450~550만 원 미만 |
| ⑤ 550~650만 원 미만 | ⑥ 650~750만 원 미만 |
| ⑦ 750~850만 원 미만 | ⑧ 850~950만 원 미만 |
| ⑨ 950~1000만 원 미만 | ⑩ 1000만 원 이상 |

배문15.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상의 상 | ② 상의 하 | ③ 중의 상 |
| ④ 중의 하 | ⑤ 하의 상 | ⑥ 하의 하 |

배문16.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조금 만족한다
- ③ 조금 불만족한다
- ④ 매우 불만족

배문17. 귀하께서는 향후 본인의 경제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 ② 조금 좋아질 것이다
- ③ 이전과 같을 것이다
- ④ 조금 나빠질 것이다
-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A그룹, B그룹) 설문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관련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 연구책임자 : 황정임 연구위원, 정가원 연구위원

■ 조사책임자 :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31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선문4. 귀하께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년도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년도	작성 여부	작성 사업 수	작성한 사업명 (모두 작성하십시오)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__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경험

※ 다음 문항에 대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귀하께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
- ② 들어본 적 있다

문2.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__님께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각각의 기준 및 절차가 얼마나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 하였다	대체로 적절 하였다	보통 이다	별로 적절 하지 않았다	전혀 적절 하지 않았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	⑤	④	③	②	①
2)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⑤	④	③	②	①
3)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취합일정	⑤	④	③	②	①

문3. 2013년 8월에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의 일부분으로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읽어보셨습니까?

- ① 지침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 문 4로
- ② 지침을 받았으나 읽지 않았다 ☞ 선문 1의 ①은 문 6으로, 선문3의 ①은 문 13으로
- ③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 선문 1의 ①은 문 6으로, 선문3의 ①은 문 13으로

문4.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된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⑤	④	③	②	①

문5.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작성지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작성지침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의 정의가 명확했다	⑤	④	③	②	①
2)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작성예시가 이해하기 쉬웠다	⑤	④	③	②	①
3) 누구나 작성지침만 참고하여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18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총괄담당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6.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다음은 예산부서담당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입니다. ___님께서 각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느낀 작성항목별 난이도에 대해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쉬웠다	대체로 쉬웠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1) 성평등 목표	⑤	④	③	②	①
2)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⑤	④	③	②	①

문7.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을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 ②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③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④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
- ⑤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 ⑥ 다른 부서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⑦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컨설팅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⑧ 기타()

문8.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각 자치단체별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따른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 고
		◇ 그 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권장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 및 주력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대상사업을 위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④	③	②	①

문9.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귀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까? 가장 주된 절차 한 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였다
- ② 예산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담당부서로 전달하였다
- ③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예산부서 혹은 사업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
- ④ 별도의 위원회 혹은 TF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 ⑤ 예산부서와 사업담당부서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 ⑥ 여성정책 담당부서(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부서 혹은 사업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
- ⑦ 기타()

320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10.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안전행정부의 작성지침에 대상사업 선정방법(체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 ②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한 점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단위사업 기준이고, 성인지예산서는 세부사업 기준인 점
- ④ 국고보조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점
- 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점
- ⑥ 지자체 내에서 각 부서 간 협조 및 소통이 부족한 점
- ⑦ 지자체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점
- ⑧ 기타()

문11.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실시했다
- ② 실시하지 않았다

문12. (선문1의 ① 예산부서담당자만)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까?

- ① 실시했다
- ② 실시하지 않았다

☞ 응답 후 문 17로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작성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3. (선문3의 ① 세부사업 작성자만)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당시, 귀하가 작성하셨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합한 분야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산업·중소기업 ② 수송 및 교통 ③ 문화체육관광
- ④ 농림해양수산 ⑤ 일반공공행정 ⑥ 교육
- ⑦ 국토 및 지역개발 ⑧ 보건 ⑨ 사회복지
- ⑩ 환경보호 ⑪ 공공질서 및 안전 ⑫ 과학기술
- ⑬ 기타()

문14. (선문3의 ① 세부사업 작성자만) 귀하가 작성한 사업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얼마나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였다 ⇨ 문 16로
- ② 대체로 적절하였다 ⇨ 문 16로
- ③ 보통이다 ⇨ 문 16로
- ④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 문 15으로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 문 15으로

문15. (선문3의 ① 세부사업 작성자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 ②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③ 성별수혜분석 항목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 ④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 ⑤ 성평등 기대효과 항목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 ⑥ 성과목표 항목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 ⑦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
- ⑧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 ⑨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컨설팅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⑩ 기타()

322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16. (선문3의 ① 세부사업 작성자만) 다음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겪을 수 있는 변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후 경험하신 변화와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성평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⑤	④	③	②	①
3)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서 남녀 수혜율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간격이 크다면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 응답 후 문 17로

※ 다음 문항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담당자, 세부사업 작성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귀하께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참석했다 ☞ 문 18로
- ② 참석하지 못했다 ☞ 문 19로

문18.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19. 귀하께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 문 20으로
- ② 받지 않았다 ☞ 문 21로

문20.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컨설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21. 귀하께서는 앞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받을 의향이 있다
- ② 대체로 받을 의향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받을 의향이 없다
- ⑤ 전혀 받을 의향이 없다

문22.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본인이 경험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2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23.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담당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확대
- ②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 의지
- ③ 인센티브 도입(지자체 혹은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
- ④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
- ⑤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 ⑥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 ⑦ 대상사업 선정과정의 체계화(체계적 운영)
- ⑧ 전문가의 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
- ⑨ 지방자치단체 내 부서 간 효율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 ⑩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서 심의
- ⑪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 ⑫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⑬ 기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식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산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24. 위와 같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다음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 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⑨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⑨
3)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4)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다	⑤	④	③	②	①	⑨
5)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⑤	④	③	②	②	⑨

문25. 다음은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⑨
2) 내가 속한 부서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⑨
3)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⑨
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⑨

326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26. 귀하께서는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대체로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2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분야가 여성과 남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산업·중소기업 ② 수송 및 교통 ③ 문화체육관광
- ④ 농림해양수산 ⑤ 일반공공행정 ⑥ 교육
- ⑦ 국토 및 지역개발 ⑧ 보건 ⑨ 사회복지
- ⑩ 환경보호 ⑪ 공공질서 및 안전 ⑫ 과학기술
- ⑬ 기타()

문28.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대체로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관련 인식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 성인지결산제도

성인지결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29. 귀하께서는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
- ② 들어본 적 있다

문30. 위와 같은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1)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2)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3)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문31. 귀하께서는 2014년 상반기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알지 못한다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배문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만
- 세

배문3.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배문4. 귀하께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배문5. 귀하의 근무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광역자치단체(본청)
- ②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배문6. 귀하의 현재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직렬

- ① 일반직(행정직, 기능직 포함)
- ② 세무직
- ③ 전산직
- ④ 교육행정직
- ⑤ 사회복지직
- ⑥ 사서직
- ⑦ 기타

2) 직급 : _____ 급

배문7. 귀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부서 근무기간 년 개월
- 공무원 재직기간 년 개월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C그룹) 설문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관련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 연구책임자 : 황정임 연구위원, 정가원 연구위원

▣ 조사책임자 :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응답자 선정 (성인지예산서 비작성 공무원용)

선문1.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성인지예산서를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설문 종료
 ② 작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 선문 1-1로

선문1-1. 그렇다면,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선문1-2. 그렇다면,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광역자치단체(본청) ②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선문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3. 귀하의 현재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직렬

- ① 일반직(행정직, 기능직 포함)
 ② 세무직
 ③ 전산직
 ④ 교육행정직
 ⑤ 사회복지직
 ⑥ 사서직
 ⑦ 기타

2) 직급 : _____급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인지도

문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
- ② 들어본 적 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식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2. 위와 같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다음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 검토 시 양성평등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⑤	2. ④	3. ③	4. ②	5. ①	6. ⑨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7. ⑤	8. ④	9. ③	10. ②	11. ①	12. ⑨
3)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①	18. ⑨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4)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다	19. ⑤	20. ④	21. ③	22. ②	23. ①	24. ⑨
5)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한다	25. ⑤	26. ④	27. ③	28. ②	29. ②	30. ⑨

문3. 다음은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1) 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31. ⑤	32. ④	33. ③	34. ②	35. ①	36. ⑨
2) 내가 속한 부서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37. ⑤	38. ④	39. ③	40. ②	41. ①	42. ⑨
3)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43. ⑤	44. ④	45. ③	46. ②	47. ①	48. ⑨
4)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49. ⑤	50. ④	51. ③	52. ②	53. ①	54. ⑨

문4. 귀하께서는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대체로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334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문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분야가 여성과 남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3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① 산업·중소기업 | ② 수송 및 교통 | ③ 문화체육관광 |
| ④ 농림해양수산 | ⑤ 일반공공행정 | ⑥ 교육 |
| ⑦ 국토 및 지역개발 | ⑧ 보건 | ⑨ 사회복지 |
| ⑩ 환경보호 | ⑪ 공공질서 및 안전 | ⑫ 과학기술 |
| ⑬ 기타() | | |

문6.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대체로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관련 인식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 성인지결산제도

성인지결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7. 귀하께서는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
- ② 들어본 적 있다

문8. 위와 같은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55. 1) 성인지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6. ⑤	57. ④	58. ③	59. ②	60. ①	61. ⑨
62. 2) 성인지결산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63. ⑤	64. ④	65. ③	66. ②	67. ①	68. ⑨
69. 3) 성인지결산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70. ⑤	71. ④	72. ③	73. ②	74. ①	75. ⑨

문9. 귀하께서는 2014년 상반기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알지 못한다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

배문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배문2.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3. 귀하께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배문4. 귀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부서 근무기간 년 개월
- 공무원 재직기간 년 개월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un -Joo Cho, Young -Sook Kim, Ga -Won Chung,
Jung -Im Hwang, Dong -Sik Kim, Soo -Bum Park,
Hyo -Joo Kim, Youn -Sun Chang, Hui -Jeong Kwon,
Jung -Min Son, Byeong -Kwon Kim,
Hyo -Jin Kim, So -Jung Kim, Hae -Ram Kim

This research paper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gender budgeting as a whole. It is the fourth-year research in a series of research that started in 2011, based on the mid-to long-term roadmap, and it is also the final research paper in the comprehensive research project.

This research paper is made up of three parts, and Part 1 covers research on how to improve gender budgeting. We develop a mid-to long-term roadmap that seeks strategies to improve the system long-term (Chapter II). Not only is a mid-to long-term roadmap an important resource to evaluate gender budgeting in the future, but it also suggests research topics for each step that will help develop the system. ‘Analysis of Public Officials’ Opinion on Gender Budgeting’

measures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and also focuses on the need to measure costs such as fatigue felt by the officials in charge of drawing up the gender budget statement and the opportunity costs. At the same time, we design a research format that can develop into panel surveys in the future (Chapter III).

In Part 2, we discuss the first 'Survey of Officials on Drafting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Statement of Accou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onduct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hapter IV).

Part 3 is about gender budgeting in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Based on the results, we explore whether gender budgeting could be chosen as a project for KSP modularization and the national policy consultation project, and what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f it's chosen for the national policy consultation project (Chapter V).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we searched for strategies for gender budgeting to improve long-term, by developing a mid-to long-term roadmap. The roadmap consists of the following parts: objective for each development stage, detailed projects, and action plans. We concluded that this is an important tool to examine and evaluate the system in the future, and also are the research topics to be explor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mid-to long-term roadmap developed in this research paper to be put in action and to be evaluated, much has to be preceded. In advance, we need a system that will inspect how the roadmap is being put into action and being evaluated. In addition, from the detailed project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aware of projects that are lacking and aim to improve those parts through discussion. To be specific, they need to be discussed at a permanent

consultative group, which must have legal binding force.

Secondly, we conducted 'Survey of Public Officials' Opinions on Gender Budgeting'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It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budgeting after drafting a gender statement and statement of accounts and also in actions taking gender equality into consideration in the budgeting and settlement process. When we surveyed the cost per monetary unit and WTP (willingness to pay)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drafting budget statements and settlements of accounts, the estimation for 77% of all respondents was smaller than 0.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re being a high percentage of officials who feel that drafting a gender budget statement and settlement of accounts is an additional workload. The survey on how to tackle issues of improvement revealed that most preferred a more voluntary direction over a forced one. Policy tasks relating to surveys of public officials are strengthening the binding power of the surveys and notifying the permanent consultative group.

Thirdly, we analyzed local public officials' drafting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settlements of accounts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In general, it show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gender budgeting, agreement with the purpose, acceptability,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were higher among officials who had not prepared the statements. Additionally, those officials also thought gender equality policies were important, more so than the officials who had prepared the statement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difficulties from the additional workload having a negative influence on the understanding of, agreement with, acceptability of gender budgeting. This means that a more active and systematic support plan should be provided for drafting gender budge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Furthermore, more effort must be made to

promote the positive aspects of gender budgeting and provide education that will lead to a positive perception of gender budgeting.

Finall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gender budgeting becoming a part of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Philippines, a country that has had the experience of implementing government-led gender budgeting and is also a KSP partner with Malaysia, which is not a KSP partner. First of all, we need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on whether gender budgeting can become a part of the national policy consultation project through modulariza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gender budgeting, which has cross-cutting issues, to be compacted into a single module. Moreover, a strategic module that can provide consultation that is customized for the partner country'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ituation needs to be developed.

2014 연구보고서-5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Ⅳ)**

2014년 12월 29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633-3 94330

978-89-8491-632-6 94330 (세트)

<정가 14,000 원>